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1880년대 天津海關을 통해 본
朝淸 관계



2012年 2月

釜慶大學教大學院

史學科

李藝智

文學碩士 學位論文

1880년대 天津海關을 통해 본
朝淸 관계

指導教授 曹世鉉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12年 2月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李藝智

李藝智의 文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2年 2月 24日



主 審 文學博士 李 根 雨 印

委 員 文學博士 朴 花 珍 印

委 員 文學博士 曹 世 鉉 印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 연구의 검토	4
3. 연구자료 및 연구방향	8
II. 조선과 천진해관	12
1. 통상장정의 체결	12
2. 상주사절의 파견	23
3. 조청 간 公文의 전달체계	26
III. 외교 통상을 위한 외국인 고빙	34
1. 외국인 고빙 교섭	34
2. 뮐렌도르프의 고빙	42
3. 出洋學生의 파견	46
IV. 路引과 護照의 발급	51
1. 路引	52
2. 憑票와 執照	54
3. 護照	64
V. 借款	81
1. 천진조선공관 건축 차관	81
2. 기기 구매 차관	87

VI. 결론	93
參考文獻	97



1880년대 天津海關을 통해 본 朝淸 관계

이 예 지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요 약

天津海關은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天津을 개항하면서 1861년 3월 23일 설립된 이후 청과 조선 사이의 근대적인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한 기관이다. 1880년대 이후 천진해관과 조선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이유는 1880년대 청 정부가 전통적으로 禮部의 소관이었던 조선 관계 중 통상과 외교 업무를 이흥장에게 위임하면서 이흥장 산하에 있던 天津海關道가 조선과의 실질적인 교섭문제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진해관도 周馥은 1882년 9월 무역장정의 초안 작성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장정의 체결로 청과 조선은 근대적인 통상관계를 맺게 되면서 조선에서 파견된 駐津大員과 천진해관도는 근대적인 공문서를 통해 다양한 교섭문제로 교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선은 청의 예부를 통해 전통적인 사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과 청 사이의 이중적인 체제를 유길준은 兩截體制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는 이 용어를 근대적인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조선의 상황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양절체제로 불리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이야말로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조선이 전근대적인 사대교린체제로부터 근대적인 조약체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과 청의 이중적인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양절체제가 갖는 시대적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검토한 내용은 천진해관의 연혁, 통상장정 체결, 상주사절의 파견, 외국인 고빙, 出洋學生, 護照, 借款 등이다. 이들 내용을 통해서, 청이 조선에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

라, 전근대적인 사대관계와 근대적인 통상관계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조선이 근대적인 통상업무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측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차관의 경우에, 담보물이나 이자 없이 지원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청 쪽에서 자발적으로 조선이 필요한 자금을 변통해 주는 등, 국가 간의 근대적인 금전거래인 차관이 전근대적인 조청 관계 속에서 운영되기도 하였다. 호조 발급에 있어서도, 개항 초기 호조의 발급 절차를 어기고 조선의 증빙 문서만을 가지고 청국 내지를 여행하여 해관도의 지적을 받고 있었던 점은 개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의 관인들이 단시간에 호조라는 새로운 행정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이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하면서 조선이 근대적인 행정체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선의 상주사절이 북경에 주재하지 못하고 천진에 머물렀던 점, 주진대원이 예부와 동격이 아니라 천진해관도와 동격이었던 점 등, 다른 국가의 사절과 비교하여 차별받은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사대관계와 근대적인 조약관계를 양립시킴으로써 조선은 근대적인 질서에 적응하고 개항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The Relationships between Chosun and Qing Viewed from the Tianjin Customs in 1880's

Ye Ji Lee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ianjin Customs(天津海關) is an institution which was in charge of modern trade and negotiation between Qing and Chosun after it was established on Mar. 23, 1861 as Qing open the Tianjin port as a result of the second Opium War. Since the 1880s, the relationship between Tianjin Customs and Chosun became closer because the Qing government began to assign trade and diplomacy which had been subject to Libu(禮部) to Li Hung-Chang(李鴻章) in the 1880s. Then the head of Tianjin Customs which belonged to Li Hung-Chang began to be in charge of practical negotiation with Chosun. So Zhou Fu(周馥) also involved in writing the draft of the trade pa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September 1882. With signing the trade pact, the Chosun's consular residing in Tianjin(駐津大員) and the head of Tianjin Customs began to negotiate through modern official documents as the two countries started the treaty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Chosun was maintaining its traditional tributary system with Qing through Libu. You Gil-Jun(兪吉濬) named the situation

maintaining both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 dual system (兩截體制). He used the term to express Chosun's situation that it could not move to modern system. But the transitional status named as the dual system reflected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as it is, and Chosun was in the course of moving from the tributary system to the treaty system. So this article tried to reveal historical meaning of the dual system by examining more specifically the dual relationship between Chosun and Qing.

The contents is the history of Tianjin Customs, signing of trade pact, sending delegates residing in Qing, appointment of foreigners,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Hojo(護照) and loan. Through reviewing those contents, we can understand that at some aspects, Qing helped Chosun adapt to modern trade, not just forcing disadvantages to Chosun. For example, Qing provided loans to Chosun without collateral or interest, and it also used to volunteer financially supporting Chosun when there was necessity, which means loan, a modern financial deal between countries, used to operate between premodern relationships between Chosun and Qing. As for issuing Hojo, Chosun used to violate the issuance process of Hojo in early stage of opening the Tianjin port and was pointed out by the head of Tianjin Customs by travelling in Qing only with certification of Chosun. The case shows that Chosun's officials were not accustomed to the new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short-term. In this situation, Qing helped Chosun to understand and accept modern administrative system by actively advising in practical level.

Of course, the fact that Chosun's delegates stayed in Tianjin unable to reside in Beijing and the consular in Tianjin received the same treatment as the head of Tianjin Customs not Libu shows that Chosun's officials were discriminated contrary to delegates from other countries. But Chosun could adapt to modern paradigm and mitigate the shock from opening the country by maintaining the dual system of the tributary and the treaty system.

I. 서론

1. 문제제기

통상 사무와 출입국 사무 등을 담당하는 해관은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해관의 창설은 開化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 중국 해관은 다양해지는 무역의 분화와 각국과의 외교관계에 대응하여 대외 무역을 감독하고 관세를 징수하고 護照를 발급하였다. 그밖에도 등대의 건설과 관리, 선박 운항의 지원과 같은 海事 업무와 조약에 기인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이나 내·외채의 배상 및 우편 사업과 같은 洋務를 담당하였다. 바로 이러한 ‘業餘外交’의 활동 때문에 근대 중국 해관은 중국 근대사 연구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중국과 외국 학자들의 폭넓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그 연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관을 중심으로 한 대외통상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관이 근대적 외교관계의 출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조선과 청의 교섭과 통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인 ‘海關’이라는 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天津海關과의 대외통상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천진해관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

1856년 애로우호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프랑스와 연합하여 廣州를 점령함으로써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1858년 6월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북상하여 天津의 大沽口를 공격하고 北京의 관문인 天津까지 점령하자, 마침내 청 정부는 1858년 천진조약,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三口通商, 즉 天津·牛庄(營口)·登州(烟台)의 개항을 허용하였다.¹⁾ 그 결과 1861년 3월 23일 天津의 津海關(이하 천진해관)이 설립되었다.

천진해관은 설립된 이후, 北京·張家口, 남쪽으로는 京山鐵路 沿線, 북

1) 陳詩啓, 『中國近代海關史』, 人民出版社, 2002. p.36.

쪽으로는 長城의 광활한 지역에 이르는 지역을 관장하였다. 해관의 업무는 항구에 드나드는 화물과 인원을 감독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밀수 행위를 단속하는 일 외에도 국내 운수를 관리하는 常關의 업무를 인수하여 관리하였고, 항로 보호·등대 설치·항구 관리 등의 해항업무와 郵政·상표관리 등 다양한 업무도 처리했다. 동시에 천진해관은 북경의 외항이자 대외통상 항구로서 국가의 외교·정치 내지는 국방사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²⁾

천진해관 성립 초기에는, 三口通商大臣이 위임하여 파견한 세무감독이 해관의 최고 수뇌로서 전적으로 해관사무를 담당하였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청 정부는 天津·登州·牛莊 3지역을 개방하여 通商口岸으로 삼고 삼구통상대신이 천진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도록 했다. 천진에는 삼구통상대신과 함께 北洋大臣인 李鴻章이 주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1870년 天津教案이 발생한 후 삼구통상대신이 물러나고 이홍장의 奏請 하에 청 정부는 天津海關道³⁾를 정식으로 설치하였다.⁴⁾ 이후 천진해관도는 直隸省의 대외교섭사무를 담당하는 한편 천진해관도 관리하게 되었다.⁵⁾

直隸總督 이홍장은 北洋通商大臣을 겸하면서 조선관계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자, 실추된 중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홍장이 직예총독으로 재임한 기간(1870-1894년)에 천진해관도는 周馥·鄭藻如·黎兆棠·劉汝翼·盛宣懷 등이 맡았으며,⁶⁾ 그들은 모두 이홍장의 股肱之臣이었다.

2) 天津市檔案館·天津海關, 『津海關密檔解譯』, 中國海關出版社, 2006.

3) 道에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이 시기의 道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糧儲道, 鹽法道, 管河道와 같이 한 가지 업무를 전담하는 관직으로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海關道, 巡警道, 勸業道와 같이 근대적인 新政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光緒·宣統 연간에 새로 생긴 것이다. 道의 책임자를 정식으로 道員 혹은 道台라고 하지만, 문서에서는 道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朱東安, 「關於清代的道和道員」, 『近代史研究』 1982年第4期)

4) 龐志偉, 「清末天津海關道之探究」, 『蘭臺世界』 2010年 第17期, p.54.

5) 汪壽松, 「開埠后天津海關的建立」, 『天津經濟』 總第109期, 2003年 第6期, p.61.

6) 1880-1890년까지 천진의 직예총독, 해관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年代	直隸總督	海關道
1880(光緒 6년)	李鴻章	鄭藻如
1881(光緒 7년)	李鴻章	周馥

그러므로 천진해관도의 업무는 이홍장의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1880년 무렵부터 청 정부가 이홍장에게 禮部의 소관이었던 조선 관계 업무 중 외교·통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이홍장의 막료였던 천진해관도 또한 조선과의 다양한 교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특히 1881년부터 천진해관도를 맡고 있었던 周馥(1837~1921)은 安徽省 建德 출신으로 자는 玉山, 별호는 蘭溪이며, 일찍이 1860년대부터 이홍장의 막료로서 이홍장이 수행한 국내외 정치·외교·통상 등과 관련된 업무에 깊이 관여해왔다.⁷⁾ 특히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에 참여하며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문화하여 청의 정치적 우위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청국인의 조선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학계 모두 천진해관과 조선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과 조선 두 나라 사이에 대외통상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천진해관을 통한 교섭과 통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1880년대 외교문서를 살펴보면, 천진해관과 천진에 주재하는 조선측 관리인 駐津大員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실무자들이 종래의 전통적인 조공체제에서 벗어나 근대적 조약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칙개정이나 외국인 고빙·護照 발급·出洋學生⁸⁾ 파견·借款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1882(光緒 8년)	李鴻章	周馥
1883(光緒 9년)	李鴻章 張樹聲(署理)	周馥
1884(光緒 10년)	張樹聲 李鴻章	盛宣懷 周馥
1885(光緒 11년)	李鴻章	周馥
1886(光緒 12년)	李鴻章	劉汝翼
1887(光緒 13년)	李鴻章	劉汝翼
1888(光緒 14년)	李鴻章	周馥 劉含芳 劉汝翼
1889(光緒 15년)	李鴻章	劉汝翼
1890(光緒 16년)	李鴻章	劉汝翼

(참고문헌: 天津市檔案館·天津海關, 『津海關密檔解譯』, 中國海關出版社, 2006, p.371.)

7) 汪志國, 『周馥與晚清社會』, 合肥工業大學出版社, 2004. p.4; 周馥, 『秋浦周尙書(玉山)全集』, 文海出版社, 1967, pp. 5647~5812, 「年譜」

8) 청이 美國 등에 유학생으로 파견하였다가 귀국한 학생들을 말한다. 청은 이들 중 일부

직접적인 면담 내지 照會(照覆)와 信函(函覆)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이 근대적인 외교·통상관계를 수립해 가는 과도기였던 1880년대에 천진해관과 조선의 사신·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진대원과 주고받았던 대담이나 외교문서를 통해 청과 조선의 구체적인 교섭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중국학계에서 근대 중국 해관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민국 초년부터이다. 이 시기의 연구는 당시 관세자주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내용 또한 대부분 관세 문제에 편중되어 있었다. 1930년대 이후 관세운동이 수그러들면서 이러한 경향은 퇴조하였다.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근대 중국 해관은 제국주의가 중국 침략을 위해 만든 기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또한 이 시기 檔案 자료의 정리는 비교적 큰 성과가 있었다. 陳翰笙·范文瀾·千家駒 등의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中國近代經濟史資料叢刊編輯委員會와 海關總署研究室은 『帝國主義與中國海關』과 같은 해관 당안 자료 총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1980년에 들어서 중국 근대 해관사 연구는 큰 진전을 보았다. 중국 근대 해관사 연구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陳詩啓는 일련의 개척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사학계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⁹⁾ 1985년 8월에는 中國海關學會가 성립되었다. 중국 해관사 연구는 학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고 『中國海關歷史學術研究叢書』를 출판하였다. 1985년 11월 중국해관학회는 廈門大學과 합작하여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구인 中國海關史研究中心을 설립

학생을 조선에 뮐렌도르프와 함께 파견하였다.

9) 1980년대 陳詩啓의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다. 陳詩啓, 「中國半殖民地海關的創設和鞏固過程」, 『廈門大學學』 第1期, 1980; 陳詩啓, 「中國半殖民地海關的擴展時期」, 『廈門大學學』 第2期, 1980; 陳詩啓, 「論中國近代海關行政的几介特点」, 『歷史研究』 第5期, 1980.

하여 陳詩啓의 주도 하에 『中國海關史研究工具書』를 편찬하였다. 1986년 6월에 해관학회는 『海關研究』라는 학술 잡지를 창간하여 해관사 연구 전문 잡지의 단서를 열었다. 또 각지 해관에서 海關志를 발간하도록 조성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汕頭・福州・廈門・九龍・拱北・青島・蕪湖・天津・南京 등지에서 해관지가 출판되고 있다.

천진해관에서도 천진해관의 역사적 변화와 천진의 역사적 발전을 기술한 개설서와 천진해관 내 檔案 자료를 정리한 자료집을 출판하였다.¹⁰⁾ 그 외에 천진해관에 대한 연구는 천진해관의 설립 경위나¹¹⁾ 천진해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²⁾ 그 밖에 천진해관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천진해관도와 도원의 활동과 특징¹³⁾이나 천진도와 천진해관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나 혼재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

천진해관도 중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했던 주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¹⁴⁾ 그러나 천진해관도로서의 역할보다는 북양해군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이나 國防・治水, 洋務・사회문제 개혁 및 治理 등에서 이룬 업적을 부각시킨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국학계에도 중국 해관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¹⁵⁾, 중국 근

10) 天津海關譯編委員會, 『津海關史要覽』, 中國海關出版社, 2004; 天津市檔案館・天津海關, 『津海關密檔解譯』, 中國海關出版社, 2006.

11) 汪壽松, 「開埠后天津海關的建立」, 『天津經濟』 2003年 第6期

12) 楊智友, 「“津海關事件”紀實」, 『文史精華』 2006年 第8期

13) 梁元生, 「清末的天津道與津海關道」,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25期, 1996; 龐志偉, 「清末津海關道之探究」, 『蘭臺世界』 2010年 第17期

14) 汪志國, 『周馥與晚清社會』, 合肥工業大學出版社, 2004; 汪志國, 「周馥與北洋海軍」, 『衡陽師範學院學報』 2010年 第31卷 第2期가 있다. 또한 주북이 저술한 문집으로는 周馥, 『秋浦周尙書(玉山)全集』, 文海出版社, 1967이 있다.

15) 근대 중국 무역사적인 측면에서 박기수의 「근대 중국의 海關과 『中國舊海關史料(1859-1948)』」(『史林』 37, 2010)는 해관의 설립과정과 설치상황, 中國舊海關史料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박혁순의 「19세기 후반 중국 해관통계자료에 대한 재검토 -1888년 중국해관 통계자료 상의 지역권 교역수지문제를 중심으로-」(『대구사학』 99, 2010)는 1888년도 대내외교역의 규모와 성격, 지역권별 교역수지에 대해 연구했다. 최근 에 발표된 이윤희의 「淸前期 海關 設置와 그 意味」(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는 청 전기의 해관 설치 이전의 해외무역과 해관의 설치와 운용 및 의미를 고찰하

대 무역 통계자료에 근거한 경제사·무역사 방면의 연구에만 편중되어 있고, 그 외 교류사 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아직까지 천진해관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천진에서 주재하면서 천진해관도와 대등한 외교파트너로서 교섭하였던 조선의 駐津大員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철호와 김수암의 논문을 들 수 있다. 한철호는 주진대원의 파견 배경과 과정, 그리고 주진공서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한철호는 비록 派使駐京은 청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事大使行을 폐지하고 주진대원을 파견함으로써 조선이 근대 국제공법체제 하의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¹⁶⁾

김수암의 논문은 전파와 수용,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라는 관점에서의 근대 외교관서와 상주사절제도의 수용이 주된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수암은 주진대원의 파견이 이중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대외전략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¹⁷⁾

권혁수는 주진공관의 설립 및 기본제도, 역대 주진대원 및 기타 임직원, 초대 주진대원인 남정철의 주요활동을 고찰하고 이를 양절체제로 설명하고 있다. 주진대원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 대중국외교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중국주재 외교통상공관이며, 청일전쟁 직전까지 조선왕조의 대중국 외교는 사실상 양절체제의 이중적 국제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주진대원에 관한 연구는 주진대원의 파견 경위를 통해 전환 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칠 뿐, 파견된 주진대원이 천진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이 천진해관과 교섭했던 내용으로는 크게 조약 체결, 외교 통상을

였다.

16) 한철호, 「한국 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동학연구』 23, 2007.

17)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외교관서와 상주사절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0.

18) 권혁수, 「『兩截體制』와 19세기 말 조선왕조의 대중국외교」,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2007.

위한 외국인 고빙과 호조 발급, 차관 문제가 있다.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穆麟德)의 고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¹⁹⁾ 고빙과 파견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청이 서양인의 고용을 추천하고 조선청년들을 학습시켜 점차 조선해관은 조선청년들이 장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청으로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선의의 조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병익의 연구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여행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호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반면 청의 차관 연구는 비교적 성과가 있는데 김정기와 김영호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김정기는 청정부가 조선에 대한 차관 제공을 통해 군사·정치·경제·외교 등 각 방면에 그들의 세력을 어떻게 침투시켰나 하는 과정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²⁰⁾ 김영호 또한 조선에 대한 이권 획득 내지 경제침투의 방법으로 차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²¹⁾ 이렇게 청의 조선에 대한 차관 연구는 청의 조선의 재정에 대한 침략적인 성격과 조선이 받은 불리한 차관 등을 부각시키며 청이 조선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시각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천진해관과 조선의 관계나 호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진대원이나 차관에 대해서는 특정부분에 대해 단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천진해관과 조선이 어떠한 내용으로 교류를 하고 어떠한 성격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19) 고병익, 「穆麟德의 고빙과 그 배경」, 『진단학보』 25·26·27, 1964; 부정애, 「조선해관의 창설경위」, 『한국사론』 1, 1973; 노계현, 「Möllendorff가 한국외교에 끼친 영향」, 『비교문화연구』 1, 1982; 박일근, 「李鴻章과 穆麟德의 재한외교활동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4-1, 1985; 김태중, 「구한국시대 해관의 건설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15-3, 1998; 윤광운·김재승, 「구한말 개항기 조선해관에 관한 연구 -고빙 외국인 해관원의 임면과 근무상황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연구』 10-2, 2004.

20) 김정기, 「조선정부의 청차관도입(1882-1894)」, 『한국사론』 3, 1976.

21) 김영호, 「한말 차관 문제의 제국면」, 『현상과 인식』 2-1, 1978; 김영호, 「개항기의 부국강병정책과 차관문제」, 『慶商大學論集』 8, 1980.

또한 청이 개항 초기 근대적인 조약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에게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하면서 조선이 근대적인 행정체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측면이나 조선이 능동적으로 청의 보호 속에서 개항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측면을 밝혀보려는 시도는 부족했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천진해관과 조선의 실질적인 통교와 교섭 내용을 토대로 조청 관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자료 및 연구방향

먼저 연구의 기본자료로는 『舊韓國外交文書(淸案)』와 『淸季中日韓關係史料』과 같은 조선과 청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가 있다. 『淸案』은 조선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督辦과 청의 總理交涉通商事宜 간에 왕래한 문건, 『청계중일한관계사료』는 천진해관도와 총리고섭통상사의가 북양대신에게 보고한 문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統署日記』를 참고할 수 있는데, 1883년 8월 1일(陰)부터 1895년 윤5월 2일(陰)까지 약 12년간의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일기이다. 그밖에 『淸史稿』, 『陰晴史』, 『朝鮮王朝實錄』, 『高宗時代史』, 『各司謄錄』, 주복의 문집인 『秋浦周尙書(玉山)全集』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료들을 통해서 격변하는 대외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세우고 있었던 19세기 말, 천진해관과 조선의 주진대원 혹은 통리아문을 통해 양국 간의 외교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과 조선이 「통상장정」을 체결하고 근대 常住使節 제도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래의 청을 중심으로 한 사대적 동아시아의 질서가 도전을 받게 되면서²²⁾, 조공국에

22) 청이 조공국에 대한 지위를 상실한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의 유구 점령을 들 수 있다. 유구 문제는 청이 조선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김광옥, 『변혁기의 일본과 조선』, 인문사, 2011, pp.161~192)

대한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홍장과 천진해관도 주복의 의도 아래, 청은 1882년 5월 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을 중재하였다. 또 청과 조선 두 나라 사이에서도 1882년 8월에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이어 1883년 12월 中江通商章程, 1884년 4월 會寧通商章程을 의정하게 된다.

그 결과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상주사절을 파견하여 청국인의 조선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청 양국은 일본 및 구미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근대적 외교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화이론적 사대질서관계를 준수하는 상호 모순적·이중적인 국제질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외교체제(이른바 兩截體制 혹은 兩得體制)가 갖는 의미를 천진해관의 조선에 대한 외교 사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1880년대 청과 조선의 公文의 종류와 전달체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전근대 청과 조선의 외교관계는 사대라는 전통질서의 관념에 입각하여 禮部를 통한 조공과 책봉의 방식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종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청과 조선에서는 근대적인 외교관서와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은 조선과의 통상업무를 총리아문과 북양대신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朝貢典禮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예부를 통하여 咨文으로 알리고, 通商과 交際事務에 대해서는 총리아문과 북양대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통상장정에서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조선과 청 사이에 종래와는 다른 문서전달관계가 성립되었다. 양국의 관계 속에서 통리아문 및 주진대원과 천진해관도가 외교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외교문서의 내용은 물론이고 근대 공문서의 외교격식과 전달체계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셋째, 천진해관이 조선 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했던 곳인 만큼 1880년대 천진해관과 조선의 실질적인 교섭 상황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880년대 이후 천진해관과 조선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홍장 산하

에 있던 천진해관도와 조선과의 실질적인 교섭문제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진해관도 주북은 1882년 9월 무역장정의 체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²³⁾ 장정의 체결 후 조공관계에 있던 청과 조선은 근대적인 통상관계를 맺고 새로운 외교관계를 전개하게 되었다.

1880년대에 들어서 이제 막 근대에 눈을 뜨기 시작한 조선은 개국과 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재편을 위해 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 조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주진대원은 천진해관도인 周馥에게 정책적인 자문을 비롯하여, 조선의 외교와 통상을 위한 외국인 고빙문제와 청측 出洋學生의 파견, 청국인과 조선인의 통행을 위한 호조 발급, 천진의 조선 공관 건설과 기기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차관 및 주진대원 경비 지급과 반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회답에 근거하여 정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1880년대 청과 조선 사이에 교섭·통교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880년대는 조선이 근대적인 외교·통상관계를 수립해 가는 과도기였으므로 청과 조선 사이에는 종래 맺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대관계와 새롭게 맺게 되는 근대적 조약관계가 혼재하는 이중적인 외교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880년대 청과 조선 사이에 일본 및 구미 각국과 평등한 수호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종래의 화이적 사대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이중적 국제질서를 선구적인 개화지식인이자 정치가였던 兪吉濬은 19세기 말 당시에 이미 양절체제의 개념으로 풀이한 바 있다.²⁴⁾ 본문

23) 周馥, 『秋浦周尚書(玉山)全集』, 文海出版社, 1967, p.5687. 『年譜』 光緒8年 46세.

24) 유길준이 사용했던 양절체제라는 용어를 학계에 처음 소개한 이는 하라다 타마키(原田環)이다. 유길준의 양절체제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립된 관점을 보이고 있다. 하라다 등은 유길준이 당시의 조청관계를 양절체제라고 하여 비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조홍찬은 유길준이 독립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양절체제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고 풀이하고 있다. (김민규, 「개화기 兪吉濬의 국제질서관 연구 -『兩截體制』와 『條規體制』의 관련성에 대하여-」, 『한국인물사연구』 3, 2005; 조홍찬, 「유길준의 실용주의적 정치사상 -『서유견문』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3-2, 2003) 그러나 여기서는 양절체제에 관련된 상반된 두 논점에서 벗어나서 「兩截體制」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즉 조공체제와 조약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에서는 1880년대 조선과의 외교·통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진해관과 조선의 교섭내용을 살펴보면서 조청 양국 간의 이중적인 외교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섭의 실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과 천진해관

1. 통상장정의 체결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는 서구 열강과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불평등조약의 체결이라는 새로운 위기 국면에 놓여 있었다.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조선도 1875년 9월 20일 일본의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초지진대와 영종진에서 교전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다음해인 1876년 2월 강화도 연무당에서 교섭을 시작하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은 자국의 屏蔽로 인식하고 있던 청은 조선과 일본의 조약 체결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게 되었다. 또한伊犁 사건 때문에 일본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1879년 4월에 일본정부가 일방적인 무력행사를 통해 琉球를 병합하자,²⁵⁾ 청의 안전보장상 조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²⁶⁾.

이에 1880년부터 청 정부는 조선의 대외관계 중 통상과 같은 이른바 洋務는 관할권을 종래의 예부로부터 직예총독 겸 북양통상대신으로 있는 이홍장에게 위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홍장은 조선관계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자, 조선과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조선은 청의 藩屏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홍장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유구합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하였으므로 조선과 서양제국과의 통상교섭에서도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될까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 정부에 일본의 주선에 의한 서양제국과의 통상교섭을 경고하고, 직접 조선과 서구열강과의 조약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중주국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다.

25) 김광옥, 『변혁기의 일본과 조선』, 인문사, 2011, pp.161~192.

26) 유구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청에 조공을 하던 나라였고, 일본이 1879년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首里城을 봉쇄하고 유구왕을 동경으로 데려가는 등 무력으로 병합하였다.

그래서 마침 조선정부가 領選使 金允植을 통하여 미국과 조약체결을 주선해 줄 것을 청정부에 요청했을 때, 이홍장은 가장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을 기꺼이 주선하여²⁷⁾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영사 재판권에 의한 治外法權은 물론 최혜국 대우까지 규정되어 조선에 있어서는 불평등조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강화도 조약과 달리 비율은 낮지만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조항이 들어 있는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인정한 최초의 조약이었다.

그런데 이 교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홍장이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미국에 승인시키려 한 점이 주목된다. 이홍장은 회담을 앞두고 천진해관도이자 자신의 막료인 주복을 미 해군제독 슈펠트(Shufeldt, Robert W)에게 보내어 조약문에 반드시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지만 정치는 自主하여 왔다."고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구는 슈펠트의 완강한 거부로 수용되지 못했으나, 별도로 조선국왕이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조회문에는 "이 조약이 중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²⁸⁾

이후 청은 '속방'의 조관 삼입이 무산된 것에 매우 유감을 느끼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편 조선이 근대적인 조약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한 청이나 조선의 상품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양국인의 교역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청과 조선은 통상이라는 급선무 아래 통상장정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종래 청은 대외적으로 극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조공사행 이외의 방법으로는 청과의 교역이 사실상 어려웠다. 사대사행의 내왕 이외에 청과 조선의 합법적인 교역으로 국경지방에서 일반 민중들과 상인들이 직접 교역을 행하는 개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국경무역은 義州·會寧·慶源 등 세 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의주는 봄(2월)·가을(8월) 두 번이고, 회령은 1년에 한 번, 경원은 2년에 한 번 개시가 열렸는데, 한 번의 교역 기간은 20일이었다.²⁹⁾ 개시가 설치되면 청 寧古塔·烏刺의 상인은 회

27) 周馥, 『秋浦周尚書(玉山)全集』, 文海出版社, 1967 p.875, 「代擬李文忠公致朝鮮國王書」
“美國人向無佔據他國兵權之意性氣和平”

28) 김종원,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 해안, 1999, p.320.

령에, 瑯春 상인은 경원에 와서 상품을 교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무역은 양국 관리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官貿易이었고, 교역물품 시기 및 대상까지도 한정되었다. 이러한 무역은 일반 민중들이나 상인들의 경제적 요구를 채워 주지는 못하였고 결국 밀무역이 성행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³⁰⁾ 이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청과 조선은 각각 서양 각국과 통상관계를 맺게 되면서 격동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종래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882년 4월에 조선국왕은 問議官 魚允中과 李祖淵을 보내어 개방한 항구에서 상호 교역하여 외국인이 독점하던 이익을 나누고 또 사신을 파견하여 北京에 주재시킴으로써 사정[情款]을 이해하고 聲勢에 이바지하게 할 것을 咨請하게 했다. 이에 署理北洋大臣直隸總督 張樹聲은 황제의 지시를 받들어 전 직예총독 이홍장에게 문서를 보내 의논하겠다[函商]고 하였다.³¹⁾ 그런데 6월에 접어들어 조선에 군란이 일어나서 이 논의는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陳奏使 趙寧夏·副使 金弘集 등은 가서 사후처리를 상의하고 商務의 정돈을 청했으며, 잇따라 問議官 어윤중도 또한 이 문제로 入淸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천진에서 天津海關道 주복과 候選道³²⁾ 馬建忠에게 명하여 조영하·김홍집·어윤중과 논의하게 하였다.³³⁾

장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윤중과 주복·마건충은 治外法權, 漢城 開

29) 앞의 책, p.291.

30) 앞의 책, p.292.

31) 이때 이홍장은 고향인 安徽省 合肥에서 복상(母喪) 중이었기에 兩廣總督 張樹聲이 직예총독과 북양대신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32) 한편 道는 관사·관직의 이름인 동시에 道員의 등급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주복의 직함인 遇缺卽補道나 마건충의 候選道를 들 수 있다. 道員은 定員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식 道員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원의 후보가 되었다가, 도원에 결원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메꾸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도원 후보의 첫 단계가 바로 候選道이며 候補道 實缺道 등을 거쳐 점차 정식 道員이 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갔다. 遇缺卽補道란 정식 道員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 도원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候選道는 구체적인 관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道員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신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朱東安, 「關於清代的道和道員」, 『近代史研究』 1982年第4期. pp.188~190. 및 『淸史稿』 志87. 捐納.)

33) 『高宗時代史』 2집, 高宗19年(1882) 8월 22일자 및 『秋浦周尙書(玉山)全集』 「周馥年譜」 光緒 八年 八月.

棧(화물을 쌓아두고 객상이 유숙하며 장사하는 곳) 및 內地采辦(내륙지방의 시장에 상품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상행위), 양국 연안에서의 漁採, 紅蔘稅則 등 4개 문제를 둘러싸고 신랄하게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주복과 마건충은 ‘치외법권’ 및 ‘어선왕래’의 규정을 고집하여 끝내 뜻을 이루었지만, 청상의 ‘내지채판’을 금지하자는 어윤중의 주장에는 동의하였다.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던 홍삼세에 대해서는 주복과 마건충은 100분의 30을 요구하였으나 어윤중이 세칙 인하를 요구하여 결국 100분의 15로 결정되었다.

결국 ‘내지채판’과 ‘홍삼세칙’은 조선 측의 요구에 따라 금지 내지는 수정을 보았으나 ‘치외법권’과 ‘어선왕래’에 대한 규정은 청측은 끝내 양보하지 않고 원래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뿐만 아니라 청은 혹시 제3국이 採例·要挾할 것을 고려하여 이 장정이 조청 간의 특수관계, 곧 종속관계라는 위치에서 체결된 것임을 서두에서 밝혀 두었다.³⁴⁾ 이렇게 하여 1882년 8월 23일 陳奏使 조영하·副使 김홍집·問議官 어윤중 등은 천진에서 天津海關道 주복·候選道 마건충 등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하 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의정한 장정은 全文 8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⁵⁾

1. 이후로부터 北洋大臣의 書札을 가지고 파견된 商務委員은 앞으로 조선에 駐紮하며, 이미 개항된 곳에서 청국 상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무위원과 조선 관원은 왕래에 있어서 균등 무차별로 禮대로 우대한다. 조선국왕도 역시 大員을 파견하여 천진에 駐紮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까지 파견할 것이며 이미 청국의 개항장에 있어서는 앞서 충당된 상무위원 즉 청국 관원과 道·府·州·縣 등 지방관의 왕래에 있어서도 또한 균등 무차별로 우대한다.(第1條).
2. 조선 商民으로서 북경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중국상인과 더불어 依例대로 조선의 楊花津과 漢城에서 行棧을 설치하는 것을 準許한다. 그 외에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은 不許한다. 만약 양국 상민이

34) 김종원,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 해안, 1999, pp.335~338.

35) 『高宗時代史』 2집, 高宗19年(1882) 8월 22일자.

내지에 들어가 土貨를 採辦코자 할 때는 피차 商務委員과 지방관에게 稟請하면 會銜하여 執照를 주고, 採辦場所·車馬·船隻을 詳記한다. 해당 상인은 스스로 沿道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피차의 내지에 들어가 游歷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商務委員과 지방관에 품청하면 회합하여 執照를 준다. 그런 후에 그 沿途地方을 갈 수 있다.(第4條).

3. 압록강 건너편의 柵門과 義州 두 곳 또 圖們江 건너편의 琿春과 會寧 두 곳에는 邊民들이 수시로 왕래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차의 開市處에는 關卡를 설립하여 匪類를 查察하고 세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한 세금은 出入口貨를 막론하고 糴穀을 제외하고 보통 100분의 5를 받고 종전의 객사[館宇]·식량[鎡廩]·꿀[芻糧]·영송[迎送] 등의 비용은 모두 폐지한다.(第5條).
4. 양국 상민은 어느 해안이나 국경지방을 막론하고 洋藥과 土藥 또 軍器를 만들어 운반·판매를 불허한다. 糴穀에 대해서는 예대로 조선상민이 중국 국경에 가지고 들어가면 납세는 100분의 15를 추징한다.(第6條).
5. 양국의 驛道는 종래 柵門 육로로만 왕래하여 공급이 매우 번거로웠으나 현재는 海禁이 열려 각자가 편리한 곳을 취하여 해도로 내왕하는 것을 허락하되 오직 조선에는 현재 兵船·輪船같은 것이 없으니 조선국왕으로부터 北洋大臣에게 청하여 잠시 동안이라도 상국의 輪船을 파견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왕래케 하는 것이 좋다.(第7條).

이렇게 청과 조선은 장정 체결을 통해 조공관계에서 벗어나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조약관계를 수립했다. 19세기에 들어 서양 각국과 통상관계를 맺고 격동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종래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경을 넘을 때의 서류 발급 절차나 거래할 때의 세금 규정 등에 관한 조관을 삽입한 통상관계를 규정하고 명문화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사대관계와는 달리 양국 간에 경제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상관계가 전개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제4조에서는 북경과 한성, 양화진에서의 開棧貿易을 허용하되 양국 상인의 內地採辦을 금하고, 내지채판 및 여행이 필요할 경우 피차 상무위원과 지방관에게 품청하면, 두 기관이 회합하여 발급하는 執照를 소지하도록 하여 여행증명서 휴대의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특히 양국에서는 각국에서의 상무 진흥을 위해 상주사절을 파견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조에서 북양대신은 상무위원을 파견하여 조선의 개항된 곳

에 주재시키고, 조선국왕도 역시 大員을 파견하여 天津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까지 파견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을 대등한 위치로 설정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장정 내에는 여행증명서나 상주사절 등 근대의 새로운 제도를 규정해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을 동격으로 설정해두고 있는 점은 근대적인 조약관계와 전통적인 사대관계가 혼재하고 있는 조청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근대적인 경제행위인 통상 문제를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대관계가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고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속장정인 陸路通商章程의 체결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육로통상에 관한 규정은 무역장정 제5조에 “柵門・義州의 두 곳과 瑯春・會寧의 두 곳에 開市場을 열고 양국 변경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왕래・무역케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세한 장정은 양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실지로 변경을 답사한 후 상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 측에서 파견한 어윤중은 9월 19일 이홍장을 방문하여 통상・개시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들은 먼저 육로통상장정을 논의할 전제로서 변경지방을 답사할 시기는 내년 봄, 곧 고종 20년(1883)으로 합의를 보았고 홍삼세액의 징수방법도 국경지방을 답사한 다음 육로통상장정에서 아울러 규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³⁶⁾

이와 같이 어윤중과 이홍장 간에 장정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침으로써 시행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청조 내의 강경파 측에서는 장정 체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강경파측은 조선이 근래 내란이 잦아 그 여세가 만주로 파급될 것을 걱정하고 군비를 강화하여 이에 대비하는 한편, 종속관계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견지해야만 격동하는 조선정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 국민이 상호 왕래하며 무역케 하는 새로운 통상장정은 청의 체통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그들은 무역관계와 事大之典을 종전의 舊制대로 엄격하게 준수시

36) 김종원,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 해안, 1999, p.339.

켜 조선이 청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⁷⁾

그러나 임오군란을 겪은 다음 청·일 양국은 조선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고, 또 조선이 서양 각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체면유지를 위한 강경책만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화책을 써서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보다 큰 권익을 확보하고, 조선과 제휴함으로써 타국의 경제적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였다.³⁸⁾ 이에 이홍장은 육로통상장정의 체결을 서둘렀고 이에 中江通商章程과 會寧通商章程의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종 20년 12월 1일(2/10) 西北經略使 어윤중은 의주부에 도착하여 개시에 관한 일로 청 奉天東邊道 陳木植에게 문서를 보냈다. 이어서 通化縣知縣 張錫鑾, 安東縣知縣 耆齡, 委用通利 汪栗 등과 함께 개시할 장소를 정하기 위하여 三江 및 義州 西湖洞을 답사하고 26일에 中江通商章程(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을 의정하였다. 이어서 盛京將軍 崇綺와 奉川府尹 松林, 북양대신 이홍장의 상의를 거쳐 10월 20일 총리각국사무아문 및 호부, 예부가 회의하여 재결한 이후 조선에 통고하였다. 조선도 승문원의 啓에 따라 합의의 통고를 청에 보냈다. 24개조로 이루어진 이 장정은 종래의 조청 관계 및 상민·어민의 활동과 그 지역 및 운수, 경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조약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1. 변경의 육로 교역은 奉天省과 조선 변경 商民에 한하며 기타 각국은 예외이다.(제1조)
2. 봉천성의 상민들은 義州에서 무역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관이 발급한 執照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각 지방을 몰래 游歷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 상민들은 이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봉천성의 각 지방을 몰래 游歷할 수 없으며, 더욱이 외국 사람을 데리고 변경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제2조)
3. 그 해 조선에서 北京에 들어가는 貢物은 국가 의전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일

37) 앞의 책, p.340.

38) 앞의 책, p.341.

39) 『高宗時代史』 2집, 高宗20年(1883) 12월 1일자.

체 규례에 따라야 한다. 공물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따로 가지고 가는 짐들이 확실히 병풍 장막이거나 도중에서 먹을 음식물일 때에는 다시 참작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밖에 상자에 넣어 묶은 짐들을 조사해서 화물일 때에는 정확히 보고하고 세금을 바쳐야 한다. 다른 공물로 파견되어 드나드는 관리들이 執照를 가지고 화물을 휴대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면제해 주지 않는다.(제8조)

4. 柵門에서 철따라 진행하던 무역을 中江으로 옮겨 수시로 하는 무역으로 고쳤으니, 종래에 봄과 가을에 기일을 정해 철따라 진행하던 무역을 일체 중지한다. 중강으로부터 책문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貢物 길로 공물을 든 사신이 오가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통행증을 가지지 못한 상민이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엄격히 단속하여 부당행위를 방지한다.(제11조)
5. 奉天省 상민으로서 조선에 가서 교역할 때는 義州, 조선 상민으로서 奉天에 가서 교역할 때는 中江의 設卡處에 한한다.(제14조)
6. 조선 사신이 北京으로 행차함에 있어 변경에 들어설 때에는 전례에 따라 봉황성의 城守尉가 미리 盛京將軍에게 보고하고 각 관청에서 禮部에 통보한다. 한편 城守尉는 직접 邊門에 나아가 감시하고 沿路에 관리를 파견하여 잘 호송한다. 파견관과 통역원들을 맞이하고 진송하는 일은 모두 공물에 관계된 일이고 예법에 관계된 일이므로 기존 제도에 따라 天津에서 원래 협의한 조약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제19조)
7. 지방 관리가 교섭할 일이 있어 문건을 교환하는 경우에 격식을 지켜야 한다. 조선은 반드시 ‘天朝’ 혹은 ‘上國’이라는 글자로 존대해서 써야 한다. 보통 공문에 속하는 것도 규례에 따라야 하고, ‘中東’ 등의 글자를 써 일정한 규례를 어기지 못한다. 奉天省의 변방 관리들은, ‘朝鮮國’ 혹은 ‘貴國’이라는 글자를 써 우대하는 뜻을 보인다.(제23조)

여기서 2조와 11조에서는 執照라는 새로운 제도를 규정하고 각지를 유력할 때 그 발급과 휴대를 의무화하였다. 봉천성의 상인들은 의주에서 무역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관이 발급한 執照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각 지방을 몰래 유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선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執照가 없이는 봉천성의 각 지방을 몰래 유력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중강에서 책문에 이르는 공물 길로 공물을 든 사신이 오가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執照를 가지지 못한 상인이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

다 파는 것을 금지하여 執照를 소지하지 않은 상인들에 대해 엄격히 단속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8조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대사행의 의례에 대해서도 명시해놓고 있다. 조선에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사신 및 파견관, 수행원은 모두 예부에 보고한 명단과 실제 인원수에 따라 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가는 휴대품목의 정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물이거나 사행길에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그 외에 이득을 보려고 가지고 가는 품목은 정량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반면 사대사행 이외에 다른 공무로 파견되어 드나드는 관리들은 執照를 가지고 화물을 휴대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면제해주지 않도록 했다.

그 외에도 19조에서는 조선 사신이 북경으로 행차함에 있어 변경에 들어설 때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해 두었다. 그 절차를 보면, 먼저 전례에 따라 봉황성의 城守尉가 미리 盛京將軍에게 보고하고 각 관청에서 예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한편 城守尉는 직접 邊門에 나아가 감시하고 沿路에 관리를 파견하여 잘 호송하게 하였다. 이렇게 파견관과 통역원들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 등은 모두 공물에 관계된 일로 예법에 관계된 일을 명시해두고 있다.

뒤이어 서북경략사 어윤중은 청 위원 前刑部郎中 彭光譽와 회동하여 圖們江岸의 양국 상민이 개시할 장소를 직접 확인하고 會寧通商章程(吉林與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16조를 의정하였다. 그 후 북양대신 직예총독 이홍장과 吉林將軍 希元 등의 논의·수정을 거쳐서 청 예부로 보고되었다. 체결된 조약의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⁰⁾

1. 양국의 변경은 土門으로 경계를 삼는다.(제1조)
2. 만약 商民이 내지에 들어가 土貨를 採辦하고자 하여 游歷하는 자는 天津에서 정한 장정 제4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서쪽 奉天省으로 들어갈 때 祖宗陵寢에 가까운 중요한 곳과 동쪽 러시아 변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모두 執照의 발급[填給]을 不許한다.(제2조)

40) 『高宗時代史』 2집, 高宗21年(1884) 4월 3일자.

3. 종전의 寧古塔·會寧 互市와 庫爾喀·慶源 互市の 일체 舊例는 모두 폐지한다.(제3조)
4. 琿春 西步江에 설치한 分局은 吉林將軍이 위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게 하고(제4조), 吉林에서는 이미 土門江邊의 和龍峪, 西步江 두 곳에 稅局分局을 설치하였으므로 조선 鍾城 건너편도 종전의 互市에 啓하므로 상민의 통행로에 分卡를 설치, 總局에서 派員하여 匪類 및 화물 등을 몰래 내가는[偷漏] 弊를 살펴보게 한다.(제5조)
5. 세금의 징수는 홍삼을 제외하고 모두 100분의 5로 하고(제7조), 홍삼은 100분의 15로 劃一케 한다.(제12조)
7. 朝鮮·吉林 邊民 무역은 奉天의 실정과 비슷하므로 조선 商民이 길림성에 들어가 土貨를 採辦하고자 할 때는 먼저 지방관이 執照를 발급하고 상무를 督理하는 관원이 按照하여 關防印을 蓋印한 뒤 다시 護照를 발급[填給]한다. 길림 상민이 조선에 들어가 土質을 採辦하고자 할 때도 이 예로 하되 執照 내에 먼저 어느 곳 어떤 화물인가를 성명하며 만약 어떤 물건인지를 예정할 수 없으면 採辦을 마친 뒤 關卡 지방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실재 화물을 報明한 뒤 원래 받았던 執照를 제출하여[繳置] 화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換給한 稅單은 出關·入關할 때 單을 제출하면 조사하고 戳記에 蓋用하되 만약 출입할 때 報明을 거치지 않은 개인 화물을 휴대하면 몰래 내가는 것[偷漏]으로 간주하여 화물을 조사하여 관에서 몰수한다. 보통으로 수시 왕래하여 開市處에 이르러 무역하는 것은 지방관이나 혹은 稅局에서 상민의 성명·화물·가축의 수목을 寄明한 關防印이 찍힌 照를 발급하되 執照가 없으면 放行을 不許한다.(제10조)
9. 교섭하는 일로 오가는 문서는 奉天의 의정에 따라 마땅히 體例를 준수해야 한다. 조선은 반드시 天朝로 존칭하거나 혹은 上國이라고 칭해야 한다. 용어[字樣]는 普通的 文移에 속하더라도 또한 中東·中朝 등의 文字를 쓸 수 없다. 『大清會典』에 비추어 中外的 표현을 써서 簡易케 하며 吉林省 변경의 관원은 조선국이라고 칭하거나 혹은 귀국이라고 칭하여 우대하는 뜻을 보인다. 公牘의 왕래는 마땅히 照會格式을 사용하되 모두 天津에서 의정한 장정에 따라야 하며 양국의 직무가 없는 職員이 스스로 상민이 되어 錢財細故로 인하여 양국 지방관 아문에 대하여 投詞·結訟하는 자는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稟·문과 같은 용어를 쓴다.(15조)⁴¹⁾

41) 제15조의 이 부분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에서는 존칭을 써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를 쓰며, 보통공문에서도 ‘중동(中東)’·‘중조(中朝)’ 등 글자와 『대청회전(大清會典)』에 따라 ‘중외(中外)’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번역하였다. 이에 대해서 『고종시대사』에서는 “朝鮮은 반드시 天朝로 尊稱하

회령통상장정도 봉천성 근처인 祖宗 陸寢과 러시아 변경 근처로 여행함을 금한다는 것(2조)과 庫爾喀·慶源 互市를 폐지한다는 것(3조) 외에는 중강통상장정의 내용과 비슷하다. 또한 여기에도 근대적인 통상관계와 전통적인 사대관계를 함께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제 10조에는 호조의 발급절차에 대해서 규정해두고 있는데, 조선 상민이 吉林省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방관이 執照를 발급하고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執照를 검열한 다음 關防印을 蓋印한 뒤 다시 護照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길림 상민들이 조선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執照 안에는 먼저 어느 곳 어떤 화물인가를 밝혀야 하고, 어떤 화물인지 예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 구매하고 돌아오다가 세관이 있는 지역에 이르러 실제의 화물을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執照를 바치면 화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했다. 수시로 왕래하면서 무역시장에 와서 무역하는 자도 지방관이나 稅局에서 關防印을 찍은 照를 발급해주는 데 상민의 성명과 화물, 가축의 수량을 정확히 적어 넣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執照가 없으면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한편 제15조 내에는 교섭하는 일로 오가는 문서의 체제와 격식을 표기해 놓았다. 공문을 교환할 때 조선측에서는 존칭을 써서 ‘天朝’ 혹은 ‘上國’이라는 글자를 쓰고, 보통 공문에서도 ‘中東’·‘中朝’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吉林省 변경의 관리들은 ‘朝鮮國’ 혹은 ‘貴國’이라는 글자를 쓰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여전히 종래의 조공체제에서 사용하였던 ‘天朝’ 혹은 ‘上國’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규정한 것은 근대적인 통상장정이지만 그 내용은 전통적인 사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거나 혹은 上國이라고 칭해야 하며 字樣은 普通の 文移에 屬하더라도 또한 中東·中朝 등의 文字를 쓸 수 없으며 照會는 中外的 字를 典用하여 簡易케 한다.”고 번역하였다. 즉 中外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照會에만 中外를 써야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中東이나 中朝는 청과 조선이 대등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이에 비해서 中外는 중국과 그 주변의 나라라는 차별성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그래서 일반 문서에서도 中東·中朝 대신에 中外는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청 양국은 일련의 조약을 통해서 종래와는 다른 근대적인 통상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양국 사이의 공문서의 형식과 통상을 목적으로 왕래하는 양 국민에게 집조를 발급하도록 한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상주사절의 파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청 정부는 북양통상 대신의 명의로 商務委員을 조선의 각 개항장으로 파견, 상주시켜 조선에 있는 중국 상민들을 보호하고 조선왕조 측에서도 국왕의 명의로 天津에 大員을 파견하고 아울러 중국 내 여러 개항장으로 상무위원을 상주시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조청 간의 종속관계를 반영하듯이, 일본이나 서구 열강이 공사를 北京에 파견·주재시키고 청의 총판상무위원이 서울에 주재하는 것과는 달리 개항 후 최초의 상주사절인 駐津大員은 天津에 주재하면서 청국의 개항장에 파견된 상무위원을 관리하는 체제였다. 또한 외교문서상 상무위원과 주진대원이라는 명칭의 차이는 결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장정의 체결 후 양국 상인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통상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청측에서는 1883년 8월 5일 總辦朝鮮各口交涉商務委員으로 陳樹棠을 임명하여 조선에 파견하였고, 나아가서 인천, 부산, 원산 등 개항장에도 상무위원을 파견하였다. 조선측에서도 동년 10월 3일 통리군국사무아문이 10월 3일에 공조참판 金善根을 주진대원으로 천거한 데 이어⁴²⁾ 10월 6일에는 영선사의 규례를 참작하여 節目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⁴³⁾

42) 『高宗實錄』 高宗 20年(1883) 10월 3일자.

43) 『高宗實錄』 高宗 20年(1883) 10월 6일자.

그리하여 1883년 주진독리공서는 駐津督理公署章程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⁴⁴⁾ 이 장정은 천진주재 조선상무위원의 제반 공무집행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해제에 따르면 이 장정은 연대는 미상이나, ‘前日에 統理軍國事務衙門의 啓下事目이 있었으나 草創期여서 詳細한 章程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본문 서두의 내용이나 癸未 10월 3일에 工曹參判 김선근이 駐津督理로 임명된 것을 볼 때 癸未(1883年) 9·10월 사이에 마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884년 3월 7일 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과 淸總辦朝鮮商務 陳樹棠이 議定한 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는 제9조에 ‘駐理仁川商務官公署는 租界內 山에 가까운 下等址地에 建造하며 該地價年稅는 天津 朝鮮商務公署章程에 비추어 辦理한다’⁴⁵⁾고 하여 본 장정의 내용을 참고한다고 명시해놓기도 하였다. 본 장정의 내용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⁴⁶⁾

- 一. 중국조선무역장정을 보면, 그 안에 조선은 大員을 파견하여 天津에 주재시키는 동시에 다른 관리들은 이미 개방한 중국의 항구들에 따로 파견하여 商務委員로 삼는다. [상무위원들이] 만약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맞게 되면 그것을 주진대원이 北洋大臣과 南洋大臣과 자세히 아뢰어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장정 내에 상무위원들의 道·府·州·縣 등 지방관들과 내왕할 때에도 평등한 예의로 상대한다고 되어 있다. <제1조> 살펴건대, 조선이 파견한 주진대원은 각국의 영사인테, 명목은 비록 다르지만 체제는 서로 같다. 본국에 왕래하는 문건은 의정부·내무부·통리교섭아문에 낱낱이(概用) 呈報하고,

44) 한철호는 통리군국사무아문이 朝鮮駐津商務公署章程을 마련하였으나, 이 장정의 조항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1886년 2월 21일(3/26) 통리군국사무아문의 후신인 내무부는 주진대원의 명칭을 駐津督理通商事務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각국의 통례를 참작해서 좀 더 체계를 갖춘 15개 항목의 朝鮮駐津督理公署章程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1886년에 만들어진 朝鮮駐津督理公署章程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3546 <天津駐在 朝鮮商務委員의 公務執行에 관한 諸規定>을 인용하고 있다. (한철호, 『한국 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동학연구』 23, 2007, p.53)

45) 『高宗時代史』 2집, 高宗21年(1884) 3월 7일자.

46)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3546 <天津駐在 朝鮮商務委員의 公務執行에 관한 諸規定>을 참고하였으나, 번역은 한철호, 『한국 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동학연구』 23, 2007을 참고하였다.

이상 각 아문을 제외하고는 날날이 關移한다. 긴급 사건이 있는 경우 合用하여 임시로 편리하게(權宜) 직행 狀聞한다.

- 一. 독리 1인, 종사관 1인은 총리대신을 거쳐 奏保 파견한다. 독리의 책임은 비교적 중요하므로 논의를 거쳐 상[왕]께 開例한다. 종사관은 상무가 있으면 수시로 옮겨다니며 처리(襄辦)하는 것 외에 公署 내의 司庫 등을 兼理한다. 서양의 예를 살펴보면, 실제 임무는 부영사이며, 그가 司庫의 업무를 겸한다. 종사관은 독리의 副(보좌/다음 직책)이며, 각국의 부영사와 체제가 서로 같다.
- 一. 각원의 隨從 人役으로 독리는 伴僮 1인과 跟役 1인, 從事官은 跟役 1인을 각각 거느린다. 본서에는 중국인 聽差・廚房役 약간을 雇用한다.
- 一. 독리가 처음 도착하면 신・구 임무를 교대하고 接印日期를 각각 갖춰 南・北洋大臣에게 申모하며, 牛莊・天津・烟台의 海關道에게도 照會한다. 이어 날짜를 잡아 北洋大臣을 배알하고, 津海關道 및 地方司道・府・縣의 各官을 拜會하며, 본국과 立約한 各國의 駐津領事에게도 [接印事實을] 函告하고 도입하자마자 배회한다.
- 一. 본국에서 北洋大臣에게 公文 혹은 咨文을 발송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본서에서 關道에 函送하여 그 代投(轉遞)를 요청한다. 또한 北京禮部 및 總理衙門에 공문 혹은 자문을 발송할 경우에도 本署員이 이를 지니고 역시 관도에 函送하여 북양대신에게 보고를 전달[轉詳]하여 代投를 요청한다.
- 一. 본국 상민은 종전에 사사로이 중국 내지에 들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유력하였으며 새로운 장정이 있는지를 모른다. 이후 만약 내지에 들어가려는 자는 장정에 비추어 海關道와 會銜하여 執照를 발급한다. 賫咨・奏官이 천진을 경유해서 북경으로 갈 때에는 장정에 비추어 關道에 조회하고 북양대신에게 轉詳하여 路引을 발급하고 파원을 伴送한다.
- 一. 公例를 보면, 공사・영사는 모두 임기가 3년이고 본서 각원이 중요한 일이나 병으로 말미암아 해임・회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 귀국해서 중직을 맡을 수 없다. 독리가 휴가로 회국하면 잠시 종사관이 署理하여 委署하고 회국의 이유를 남・북양대신에게 알려주며 分行 知照한다. 반당이 업무로 중국 각처로 갈 경우에 일행 공사를 代析・代行하며 역시 관도에 函知한다. 독리와 종사관이 모두 뉘에 부재 시에는 잠시 번역관이 護理한다.

한편 통리군국사무아문은 장차 천진에 주재할 대원이 길을 떠나므로 1883년 10월 23일 예조 참의 南廷哲을 천진에 주재할 參贊官으로 差下하고, 參議交涉通商事務 卞元圭를 協議官에, 主事 朴齊純을 從事官에 차하하

여 함께 천진에 부임하게 하도록 하였다.⁴⁷⁾ 그러나 김선근이 병으로 인해 천진에 부임하기가 어렵게 되자, 1884년 1월 27일 남정철을 주진대원으로 대신 차하하였다.⁴⁸⁾ 이렇게 해서 초대 주진대원 남정철을 비롯해서 종사관 박제순, 서기관 성기운, 반당 朴昌奎·李在煥, 통사 朴英祚, 隨從 萬興·鳳仁 등으로 주진대원 일행이 구성되었다.⁴⁹⁾ 이들은 1884년 3월 17일 고종에게 사폐하고,⁵⁰⁾ 3월 19일 마건충일행과 함께 천진으로 떠났다.

이후 남정철은 청과 조선 두 나라의 외교통상현안문제에 관한 교섭을 담당하고 아울러 근대적 외교관계의 관례에 따라 천진공관에 국기를 게양하고 천진주재 각국 외교관들과 직접 교제하면서 실제로 천진에 나아가 청에 주재하는 최고의 외교통상대표로 활약해왔다. 또 전통적 조공관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근대적 조약관계의 원칙과 관계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외교 통상 관련 현안 문제에서 나름대로 조선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였다.⁵¹⁾

3. 조청 간 公文의 전달체계

조선시대 전통적인 외교문서는 외교국가를 기준으로 사대문서와 교린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사대문서는 발급주체를 기준으로 조선문서와 중국문서로, 조선문서는 접수대상을 기준으로 對皇帝文書와 對官衙文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황제문서는 表文, 箋文, 祭文, 奏文으로 구성되고, 대관아문서는 咨文, 申文, 呈文, 單子 등이 있다.⁵²⁾

이후 서구와 근대적인 국제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외교문서 왕래의 격

47) 『高宗實錄』, 高宗 20年(1883) 10월 23일자.

48) 『高宗時代史』 2집, 高宗21年(1884) 1월 27일자.

49) 한철호, 「한국 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동학연구』 23, pp.60~61.

50) 『高宗時代史』 2집, 高宗21年(1884) 3월 17일자.

51) 권혁수, 「『兩截體制』와 19세기 말 조선왕조의 대중국외교」,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2007, pp.332~333.

52) 김경록, 「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6, 2005, pp.185~192.

식이 바뀌게 되었다. 근대적인 외교문서의 양식은 照會(照覆)文과 信函(函覆)文으로 대별된다. 조회가 격식을 갖춘 공적 문서라면 신함은 약식문서이다. 조회문의 서식은 중국의 서식과 일치하며 중국에서 照會(communiation)가 공적 대외문서의 호칭이 된 것은 아편전쟁의 결과로 1842년에 체결된 난징조약에서 明文으로 규정된 이후의 일이다.⁵³⁾

그런데 청과 조선이 근대적인 외교·통상문제를 맺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사대·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외교문서에 있어서도 근대적인 외교문서인 照會, 信函과 함께 전통적인 외교문서인 咨文, 奏文을 주고받고 있었다.

특히 근대적인 외교문서인 照會의 형식은 서두에는 발신자의 정식 직명과 성명을 기록하고 본문은 ‘爲照會事’ 또는 ‘爲照覆事’로 시작하여 본문의 말미에는 ‘須至照會(照覆)者 右照會(覆)’으로 끝나며 受信者의 정식 직명과 성명, 그리고 일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문서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1> 機器學習人 李圭元 등의 上海行文憑發給의 件 (『淸案』 1책)⁵⁴⁾
 [發] 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 고종 20년 12월 4일
 [受] 淸總辦朝鮮商務 陳樹堂 서기 1884년 1월 2일

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閔, 爲照會事, 茲有本國人李圭元·金完植·金學升, 爲學習機器事前赴上海, 須由貴總辦發給文憑, 遞付上海海關道衙門, 以便憑信, 請煩貴總辦查照施行, 須至照會者,
 右照會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卽補道 陳
 光緒九年十二月初四日 照會

표 1 照會文의 사례

53)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외교관서와 상주사절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0, pp.145~146.

5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舊韓國外交文書』(이하 『구한국의교문서』) 제8권, 1970, p15. <機器學習人 李圭元 등의 上海行文憑發給의 件>(1884. 1. 1)

<사료1> 기기학습인 이규원 등이 상해로 가는 문병 발급에 관한 건

信函의 경우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형식이 규격화되고 획일화되어 있는 조회와 달리 인사말이나 개인적인 내용이 많다. ‘敬啓者’ 또는 ‘敬覆者’로 시작한 본문의 말미에 대개 간략한 寒暄文이 있고 일자, 발신자의 성명, 그리고 ‘頓’ 등 약식의 결어로 끝나며 수신자의 성명은 皮封에만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⁵⁵⁾

<사료 2> 各國通商章程 및 稅則訂定에 관한 札函 (『淸案』1책)⁵⁶⁾

[發] 淸衡津海關道 周馥

고종 20년 9월 16일

[受] 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

서기 1883년 10월 16일

敬啓者, 久仰德音, 時深企慕, 忽披華翰, 備荷注存, 祇認政績高騫, 仁聲遠播, 翹瞻左右, 無任抃欣, 弟承乏津關, 毫無建樹, 居諸虛擲, 深愧素餐. 承以貴邦與各國通商章程及稅則見示, 并囑轉呈傳相察閱, 已遵指代呈, 蒙諭, 章程稅則均屬周妥, 惟船鈔收數較少, 及土貨准由此口運彼口兩款, 與原訂條約稍有未符, 幸皆參活筆, 將來建立燈塔・浮樁, 及自有船隻數用之時, 尚可隨時更定, 命傳語台端, 卽行奏知貴國王, 具文咨明總理衙門・禮部及北洋衙門, 以便轉行各關, 曉諭華商遵照, 近來貴邦風氣漸開, 閣下綜理外交, 猷爲宏遠, 定能統籌全局, 操縱得宜, 振敝起衰, 實基於此, 海天矯首, 企望探之, 馬相伯仲書, 已於前日東渡, 想不日可到, 穆麟德亦弟素交, 當此商務初興, 相助爲理, 必能益臻美善也, 肅覆, 敬請政安, 諸惟垂照, 不具

九月十六日

愚弟 周馥 頓首

표 2 札函의 사례

(발)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

고종 20년 12월 4일

(수) 청총관조선상무 진수당

서기 1884년 1월 2일

조선독판교섭통상사무 민이 조회하는 일. 이제 본국인 이규원 김완식 김학승 등이 있어, 機器의 일을 학습하기 위하여 상해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귀총관의 문빙 발급을 거쳐야 하므로, 상해해관도 아문에 체부하여 빙신으로 편의로 삼고자 합니다. 청건데 귀총관께서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조회해야 마땅하므로 앞과 같이 조회합니다.

흠명총관조선상무이품함분성우결즉보도 진

광서 9년 12월 4일 조회

55) 전해중, 『한국근세 대외관계문헌비요』,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66, pp.45~46.

56) 『구한국의외문서』 제8권, 1970, p3. <各國通商章程 및 稅則訂定에 관한 札函>(1883. 10.

조청 간에 이 시기에 주고받은 문서는 두 가지 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사대와 관련한 문서와 새롭게 통상관계와 관련한 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사대 · 조공	외교 · 통상
종류	奏文 · 咨文 ⁵⁷⁾	照會 · 信函
내용	誕辰, 元旦, 冬至 등의 節日 기념, 세자 책봉 등의 일	호조 발급, 유학생 파견, 차관 요청, 세척 개정 등의 일

표 3 문서의 종류

- 16)
 <사료2> 각국통상장정 및 세척정정에 관한 札函
 (발) 청형진해관도 주북 고종 20년 9월 16일
 (수)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 서기 1883년 10월 16일

삼가 계합니다. 오래전부터 덕음을 우러러 때로 깊이 사모하였습니다. 문득 보내신 서한을 읽게 되니 많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업적이 높아지고 어진 명성이 널리 퍼지고 좌우에서 우러러 보는 것을 생각하니 즐거운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우께서 진관에 오셨을 때, 터럭만큼 공을 세운 것이 없고 허름한 곳에 머물고 음식도 변변치 않았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삼가 귀국과 각국의 통상장정 및 세척에 대한 답신과 轉呈(대신 아뢰)하라고 부탁하신 것을 傳相(이홍장)께서 살펴보셨고, 이미 지시대로 대신 아뢰어 (황제의) 가르침을 입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정세척이 모두 두두 타당합니다만, 단지 선초의 수수료가 비교적 적고 토화를 이곳에서 그곳으로 운반하는 두 조항은 원래 정한 조약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 참작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장래 등탑과 잔교를 건립하고 선척이 자주 이용될 때 수시로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상에게 명하여 台端(민영목)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귀국왕에게 아뢰어 알리고 문서를 갖추어 총리아문 예부 및 북양아문에 咨明하고, 각 關에 곧 轉行하여 華商들에게 준수하도록 잘 알리겠습니다. 근래 귀방의 기풍이 점차 열리고, 각하의 통리외교는 그 뜻이 크고 머니 능히 모든 일을 통괄할 수 있습니다. 요령 있게 처리하여 폐단을 떨쳐버리고 쇠퇴한 것을 일으키는 것이 실로 이에 바탕을 둘 것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머리를 바로잡고 바라보며 찾습니다. 馬相伯 仲書(마건충)이 이미 전일에 동쪽으로 건너갔으니, 아마도 곧 도착할 것입니다. 목인덕이 또한 아우와 평소에 교분이 있으니, 상무에 관한 일이 처음인 때를 당하여, 서로 도우는 것이 이치일 것입니다. 반드시 능히 아름답고 좋은 일을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대답드리며, 정무가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조회에 답합니다. 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9월 16일 어리석은 동생 주북 머리를 조아립니다.

- 57) 咨文은 사대문서로서 조선의 주요한 외교적 사안을 처리하던 일반적 문서형태였고, 발급주체는 조선국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외교문서로 사용될 경우 2품 이상의 高位衙門 사이에 行移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문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원적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국제질서 하에서 중국과 이웃한 나라들 간의 대외관계는 사대와 교린의 예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격변하는 대외관계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과 조선에서도 각각 근대 외교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에서는 총리아문, 북양아문을 설립했고, 조선에서는 1881년 1월에 창설되는 통리기무아문을 거쳐 1883년 1월에 창설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설치하게 되면서 외교통상기능을 전담하는 외무부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에 청 정부는 1881년에 조선의 대외관계 중 통상과 같은 이른바 洋務는 관할권을 종래의 예부로부터 북양아문으로 옮겨 결국 직예총독 겸 북양 통상대신으로 있던 이홍장이 관할권을 위임하게 하였다. 원래 조선은 청의 외교상대 즉 外國이 아니라는 중화주의적 관념에 의해 조청관계는 청의 예부에서 관장하였고, 서방제국과 교섭하기 위해 1860년에 총리각국사무아문이 설치된 뒤에도 조선 문제만은 여전히 예부에서 책임을 맡았다. 조선도 예조에서 事大와 交隣 등의 사무를 관장하다가 1881년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어 그 산하의 事大·交隣·通商 등 3司가 對淸 등 외국과의 업무를 관장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예부의 소관이었던 조선 관계 업무를 북양대신의 소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조청관계가 이미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군사와 같은 실질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청에서 조선과의 관계를 전통적인 속방관계가 아닌 근대적인 성격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는 제도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청 간의 사대적인 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었다. 청 황제에게 직접 예를 표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예부를 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처럼 양절체제는 여러 국면에서 이중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58) 이완재, 「개화기의 청·조 종속문제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12, 1987. pp.155~156.

59)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외교관서와 상주사절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0, pp.50~51

예를 들어 새로 창설된 조선의 통리기무아문에서는 전통적인 사대문서와 근대적인 외교문서를 관장한다는 직무에 따라 朝貢典禮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청 禮部를 통하여 보고하고 通商과 交際事務에 대해서는 총리아문과 북양대신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근대적인 성격의 사안의 경우 상인의 호조 발급, 기기학습을 위한 학도들의 파견, 차관 지급 등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회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과의 조약이 체결되자 그 상세한 내용도 청에 咨報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문서의 전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관원의 관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양대신은 1품, 천진해관도는 2품에 해당한다. 또한 조선 국왕은 통상장정에서 북양대신과 대등하다고 규정되었으므로, 청의 관품으로 보면 1품에 해당한다. 한편 천진해관도와 통리아문이 평행하게 문서를 주고받고 있으므로, 통리아문은 청의 2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청은 1품 북양대신 아래 2품 천진해관도가 있으며, 조선은 국왕 1품 아래 2품 통리아문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사안에 따라서 1품 간에 문서를 주고받기도 하고 2품 간에 주고받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2품 아문에 문서를 보내어 1품에게 보고해주기를 청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천진해관과 통리기무아문 간의 수평적인 문서 수수라는 원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천진해관의 책임자인 천진해관도와 통리아문의 책임자인 독관은 신함을 주고받으며 형과 아우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한편 청이 조선에 파견한 商務委員의 경우는 2품에 해당한다. 조선의 駐津大員도 영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체로 청의 2품 정도로 간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품에 따른 청과 조선의 외교파트너와 그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淸官品	朝鮮	문서	淸
一品	國王	咨文・函	李鴻章 禮部 總理衙門
二品	統理衙門 駐津商務大員	照會・函・咨會	津海關道 商務委員

표 4 청과 조선 간의 왕래 문서형식

조선 국왕이 영국 독일 등과 통상에 관한 일을 논의한 다음 북양대신과 예부에 자문을 보내고 있다.⁶⁰⁾ 또한 이홍장 등이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낸 경우도 여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⁶¹⁾ 이를 통해서 자문은 원래 사대관계에서 조선국왕과 청의 6부가 교환하는 문서형식이었지만, 통상사무를 맡은 북양아문에서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낸 것으로 미루어, 근대적인 통상관계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격식을 갖추지 않을 때는 이홍장도 조선국왕에게 函이라는 서신의 형식으로도 문서를 보냈다.⁶²⁾ 그러나 반드시 咨文과 照會의 구별은 엄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移咨라고 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⁶³⁾, 咨는 2품 이상의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통리아문과 천진해관도 사이에서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품 아문 사이에도 咨文과 照會를 합성한 咨會라는 용어도 보인다.⁶⁴⁾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도 대부분 『청안』과 『청계중일한사료』에

60) 『高宗實錄』 高宗 19年(1882) 4월 22일자. 統理機務衙門啓: “英使商辦, 今既告竣矣. 此不容不具由咨報, 令文任措辭撰出, 入送于北京禮部、北洋大臣衙門何如?” 允之.

61) 『高宗實錄』 高宗 20年(1883) 4월 1일자. 承文院啓: “卽見咨文, 則一是馬中書權任之贊議, 應作罷論. 若令會辦通商事宜, 則亦無干涉之嫌, 札飭馬中書遵照事, 北洋大臣衙門咨也. 一是朝鮮購買違禁等物, 照例, 俟北洋大臣代奏候旨, 永遠遵行, 竝嗣後該國使臣, 到京如有咨行各處文件, 由本部轉行, 不得徑行事也. 一是副使請歷探天津、烟台關港稅務及由海道回國之處, 礙難準行事, 都京禮部咨也. 竝以承領之意, 撰出回咨. 一是吳提督一軍, 卽着暫留朝鮮, 俾資保設, 仍隨時察看情形事, 總督部堂咨及都京禮部咨也. 竝以感謝之意, 各撰回咨何如?” 允之.

62) 『高宗實錄』 高宗 22年(1885) 3월 20일자. 中國北洋大臣李鴻章以巨文島事有來函(하략)

63) 『高宗實錄』 高宗 8年(1871) 4월 17일자 등 다수를 확인할 수 있다.

64) 『구한국의외문서』 제8권. pp.8~9.

보이는 이상의 문서형식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때 조선과 청의 관품과 아문을 옆두에 두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살펴본 결과 외교문서가 전통적인 사대문서와 근대적인 외교문서로 구분되는 것에 따라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방식도 2가지로 나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적인 외교문서의 경우는 주진대원이 파견되면서 천진해관도를 거쳐 북양대신에 자문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통상장정에서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국왕이 북양대신에게 곧바로 공문 혹은 자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천진해관도에게 函送하여 代投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진대원이 천진해관도를 통해서 북양대신에게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⁶⁵⁾



65) 奏文을 지참한 賣客行이 예부에 주문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에 청국 내를 통과하는데 路引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때는 천진에서 주진대원이 천진해관도를 거쳐 북양대신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대문서 자체는 주진대원을 경유하지 않고 재자행 등이 직접 북경에 가서 전달하였다. 이 경우에도 사대적인 관계와 근대적 통상관계가 서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외교 통상을 위한 외국인 고빙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과의 통상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제대로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사실상 조선과 독점적인 무관세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선이 근대식 관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강압도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양국 간에는 조약(조일수호조규 부록)을 통해 일본에 대해 수년간 수입상품에 대해서 면세하도록 합의되어 있었는데, 이 수년간이 5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채 독점적인 무관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양각국과의 조약체결이 논의되고 대일 관계에서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해관을 설립하고 관세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하였다.⁶⁶⁾

특히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 후 조약 내 규정되어 있는 관세 수세업무를 관장하는 해관을 운영하기 위해 해관 업무와 외교에 능한 인재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조선은 이미 해관을 운영하고 있던 청에 해관 업무를 담당할 인물을 雇聘할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제 해관 창설 및 해관 업무 담당자 고빙을 둘러싼 조선과 청의 구체적인 협의과정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조선 해관 창설 과정에 천진해관의 역할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외국인 고빙 교섭

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점차 근대해관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1882년

66) 1883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 및 해관세칙을 통해서 일본물품에 대한 관세가 설정된다. 그전인 1878년에 조선이 두모진해관을 설치하고 관세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일본의 무력시위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청국해관은 영국출신 해관총수 Robert Hart를 비롯하여 고위직은 대부분 서양출신 해관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⁶⁷⁾ 천진해관의 경우도 해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稅務司는 서양인 Ed. Fargo였다. 관세율에 있어서도 청은 영국에 대하여 5%의 협정관세를 거둘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의 무역을 통한 수탈을 경험한 나라였고, 나름대로 개항에 따른 통상 업무와 관련된 적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⁶⁸⁾ 그러므로 조선이 개항 초기에 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1878년에 부산 두모포에 辨察所를 두고 조선인이 일본상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상품에 한해서 세금을 거두다가 일본의 무력 시위로 중단되었으나, 조선은 세관의 설치 및 관세액의 설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청의 경험을 살리고자 하였다. 1881년 정월에 동지사로 파견된 李容肅은 이홍장을 천진에서 만나 청이 각국과 맺은 수호조약, 통상장정, 稅則稅額條款, 稅關設官凡例와 관련하여 인쇄된 내용이 있으면 한 부씩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이홍장은 조선이 각국과 통상을 하고 있으나, 일본이 조선이 아직 서양의 언어 문자와 세무에 관한 일에 밝지 않은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 세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일본이) 스스로 천거하여 충원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잠정적으로 세무에 밝은 서양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⁶⁹⁾

해관 설치와 관세 징수 문제가 다시 부상한 것은 조미수호조약 체결(1882년) 이후였다. 이 조약에서 관세자주권과 10%의 기준관세율을 규정하게 되면서, 해관업무에 정통한 인물을 물색할 필요가 생겼다. 조미수호조약 체결 직후인 1882년 4월 12일(양력 5/28) 천진에 간 영선사 김윤식은 천진해관도 주북을 찾아가서 담론하던 중 주북이 洋情에 통하는 사람을 빨리 구할 것을 종용하여 말하길, “馬眉叔(마건충)이 계속 貴國에 있을 수 없고, 貴國이 조약을 의정할 일이 앞으로 적지 않을 것이니, 서양언어를 아는 자

67) 윤광운·김재승, 『근대조선해관연구』, 부경대학교출판부, 2007, p.63.

68) 孫修福, 『中國近代海關史大事記』, 中國海關出版社, 2005, pp.1~67.

69) 고병익, 「穆麟德의 고빙과 그 배경」, 『진단학보』25·26·27, 1964, p.228.

를 고용하지 않으면 서양언어를 해독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 또한 반드시 漢文을 먼저 알아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을 중국에서 초빙해서 간다면 아마도 한 달에 300~500금이 아니면 초빙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의 교섭과 학도를 교습하는 일, 세무와 해관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일은 모두 이 사람에게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⁷⁰⁾

그 후 1882년 4월 21일(6/6), 김윤식은 청국 해관도대 주북의 권고에 따라 南局會辦 徐健寅에게 청국인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줄 것을 부탁했다.⁷¹⁾ 서건인은 서양을 유력한 바가 있어서 時務에 밝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술도 있어서 명성이 있었던 인물이다. 서건인은 “청국인으로 서양에서 견문을 읽힌 사람이 많기는 하나 수준이 서양인만 못하고 또 어릴 때부터 서양에 가서 배운 사람은 도리어 서양을 추종하고 중국을 업신여기며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 못하여 공정한 서양인만 못하니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羅豐錄 한 사람은 추천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윤식은 羅豐錄이 청나라 조정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조선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없느냐고 하였다. 이에 서건인은 羅豐錄 이외에는 없으니 공정한 서양인을 고빙하는 것이 좋겠으며 서양인에게 교제통상을 사무를 맡기면 羅豐錄보다도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양인은 월급을 100냥만 줘도 응할 것이고 고용이 되고 나면 남의 나라일도 자국 일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써서 처리하며, 현재 청에서도 양인에 의지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속임이 없고 각국 사람들이 항구에서 하는 일도 속일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건인이 서양인을 고빙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이야기하였으

70) 김윤식, 『陰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1960, p.138, 高宗 19年(1882) 4월 12일자. 議約事, 將來不少, 非雇解洋語者, 不足勤助解洋語, 尤必先識漢文, 此人若由中國聘請而去, 恐非一月三五百金, 不肯應聘, 凡一切交涉及教習學徒, 議定稅則關章, 皆於此人是賴耳.

71) 김윤식과 주북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 『秋浦周尙書(玉山)全集』 『答朝鮮金雲養』이라는 글에서 주북은 김윤식을 “博學能文한 老成人”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북의 시문 중에서도 “懷朝鮮金判書允植雲養”이라는 제목으로 김윤식을 회상하는 글이 있다. 김윤식이 주북보다 불과 2살 연상이었기 때문에 函과 같은 문서에서는 호형호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 김윤식은 서양인을 고빙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弊邦(조선)이 서양과 통교하는 것은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고, 大同之民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서양인을 뽑아서 (서양과 통교하는) 상황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는 없다. 華人(청국인)을 뽑아서 초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에 서건인은 “비록 서양인을 고빙하더라도 항구에서 일을 볼 뿐이고 도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자기 직책 이외의 일에 대해서 간섭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김윤식은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양인을 보기 때문에 오직 그 바깥만 보고 그 속을 알지 못한다. 화인이 비록 서양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하므로, 화인을 초빙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김윤식이 청국인을 고빙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서건인은 “이것이 가장 긴요한 일인데, 참으로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고 하고 말문을 닫았다.⁷²⁾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해관 사무를 담당한 사람을 고빙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선측은 처음에는 청국인을 고빙하려는 의사가 확고하였다. 김윤식은 이미 청국에는 서양에 가서 서양의 물정과 언어를 익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조선이 부득이하게 서양과 통교를 하기는 했지만 서양인까지 고빙하는 것은 서양인과의 교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나라 사람들도 서양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서, 서양인보다 못

72) 김윤식, 『陰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1960, pp.141~142, 高宗 19年(1882) 4월 21일자. (전략) 徐曰, 中國之人, 雖多游歷, 學習終不如洋人, 且自幼入西學者, 習其心, 反附洋侮華, 心術不正, 反不如公正洋人, 不可用也. (중략) 幼無根基, 但學洋文, 所學者不過一二淺技, 便生侮華之心, 且不識事體, 斷不可用, 故此等人最難保舉, 以弟所見, 惟羅豐錄一人而已. ○余曰, 羅公, 現在中朝器使, 豈可屈處僻陋, 更思其次. ○徐曰, 羅刺史, 誠難延往, 此外恐無其人, 不如聘得一公正洋人, 凡係交際通商, 倚以辦事, 必得其益, 遠勝於羅豐錄, 且月銀不過百兩, 亦可應募, 此人等, 每應聘看他國事, 其用心與己國, 毫無異同, 現今中國, 亦倚洋人辦事, 未嘗受欺, 各國人於港口事, 亦不能欺, 所以不咆虧也. ○余曰, 雖知如此, 敝邦通洋, 出於不得已, 非大同之民情也, 斷不可據募洋人, 易致滋事, 惟擇聘華人爲宜. ○徐曰, 雖聘洋人, 但在港口辦事, 不必入城, 且此人, 於職掌之外, 毫無干涉, 必無滋事之慮. ○余曰, 我民初見洋人, 但見其外, 不知其中, 華人雖不及洋人, 我民之所稔熟, 故不如延致華人. ○徐曰, 此最緊要之務, 甚難甚難. ○談竟, 辭還東局

하더라도 청국인을 고빙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주복을 비롯하여 서양사정에 밝은 서건인조차도 청국인보다는 서양인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서양인은 일단 고용이 되면 고용된 나라의 일을 자기 나라 일처럼 처리하며 결코 속이는 일이 없고, 자기 맡은 일 이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이 우려하고 있는 낮은 서양인이 도성을 확보하면 조선인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항구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서양에서 언어를 배운 청국인들이 附洋侮華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양인을 추천하고 있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이때 부양모화라는 단순히 서양의 문화를 추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관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자신이 유학한 나라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서양인들은 자신을 고빙한 나라의 일을 자신의 나라처럼 마음을 써준다고 하면서, 청국인보다 서양인이 더 공정하게 통상·해관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1882년 6월 22일에 김윤식은 다시 주복과의 회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무에 익숙하지 않아 손해를 입는 바가 많다. 다음에 兵船이 나갈 때 이런 일에 정통한 사람을 맞아들여 조정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양인이라도 무방하다”이라고 하여, 서양인을 받아들여서는 입장을 보였다.⁷³⁾

그러나 이러한 입장 변화는 1882년 6월 초에 발생한 임오군란과 무관하지 않다. 임오군란에 일어나면서 일본 공관이 軍民의 공격을 받아 일본 공관원들이 모두 탈출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 사후처리를 위해서는 보상 문제 등을 일본과 논의해야 할 상황이었다. 실제로 서양인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김윤식과 주복이 임오군란의 원인과 청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6월 20일이라는 시점에 김윤식은 주복과 일본에

73) 김윤식, 『陰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1960, p.182, 高宗 19年(1882) 6월 22일자. “敝邦人不慣外務, 必多吃虧, 嗣後兵船出去時, 邀一箇解識此等事之人, 辦理調停爲好, 此則雖洋人, 亦無妨.”

대한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김윤식은 死傷者의 助恤, 往來하는 경비, 기물의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나머지 요구는 단호히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外務에 밝지 않기 때문에 대등하는 일이 심히 어렵다고 하였다.⁷⁴⁾ 결국 서양인도 무방하다고 한 것은, 임오군란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일본의 배상요구에 대응하면서 적당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면 청국인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다고 한 것이다. 아마도 임오군란이라는 직접적인 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서양인을 고빙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조선에서 서양인을 고빙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북양아문에서는 미리 어느 정도의 인물선정을 하고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상해해관에서 5년간 근무했고 천진주재독일영사관 부영사를 지내 외교와 해관업무에 능한 뮐렌도르프였다. 뮐렌도르프는 1882년 7월 6일 상해를 출발해 10일에 천진에 도착했으며,⁷⁵⁾ 7월 12일에는 주북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주북은 이홍장이 조선으로 보낼 의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신은 처음에 뮐렌도르프를 자신의 자문으로 삼고자 희망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환영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후 이홍장이 직접 조선 고빙건이 진행되게 될 것을 뮐렌도르프에게 통고하면서 그의 지위는 총독의 비서인 羅豐祿 및 馬建常의 위치와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⁷⁶⁾ 이에 따라 뮐렌도르프는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고 세관설치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와 서적을 연구해야만 되었다고 그의 일기에 쓰고 있으며,⁷⁷⁾ 조선으로 간다는 전망이 생긴 이래로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⁷⁸⁾

이로 보아 이홍장은 이미 조선이 정식으로 해관업무를 맡은 사람을 요청

74) 위와 같음. “余曰, 想像敵邦事, 內憂甚於外患, 若只有日本船, 來加嘖言, 則我既有失矣, 死傷者之助恤, 往來之糜費, 什物之傷失, 自應照例賠給, 此外有他要挾之端, 斷不可從, 但不爛此等外務, 接應甚難.”

75) 뮐렌도르프 부인 편, 고병익 역, 「穆麟德의 수기」, 『진단학보』 24, 1963, p.564.

76) 앞의 글, p.565.

77) 앞의 글, p.566.

78) 앞의 글, p.568.

하기 전에 뮐렌도르프를 조선으로 보내어 해관창설을 맡기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뮐렌도르프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주북이 처음에 뮐렌도르프를 자신의 자문으로 두고자 하여 이홍장의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뮐렌도르프가 꽤 유능한 인물이었으며 청에게도 洋務나 외교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북 스스로도 뮐렌도르프를 평가하기를, 사람됨이 공평하고 바르며, 각국의 법률과 公法에 밝으며, 중국과 영국 프랑스의 각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도 모두 잘 알고 있고, 지난해부터 천진의 영사로 있으면서 자주 왕래하여 아주 친숙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7월에는 천진으로 온 뮐렌도르프와 진해관에 고용한다는 계약까지 체결할 정도였다. 이홍장 역시 김윤식을 면담한 자리에서 뮐렌도르프가 공평정직하고 교섭에 관한 일에 밝고 각국의 언어에 정통하므로 자신이 특별히 추천한 것이라고 하였다.⁷⁹⁾

그런데 청이 자국민이 아닌 독일인 뮐렌도르프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우선 독일 공사 브란트(Max von Brandt)의 반대가 문제였다. 독일외무부에서 일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였던 브란트는 뮐렌도르프의 독일 정부와의 계약 기간을 빌미로 그의 추천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뮐렌도르프 자신이 독일 정부로부터 해약문서를 받아냄으로써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해관 총감독인 영국인 하트(Robert Hart)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독일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자기 사람을 조선에 파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마건충이 강력하게 뮐렌도르프를 지원함으로써 일단락될 수 있었다. 또 북경의 미국 공사 영(Russel Young)의 반대도 문제였다. 이 자리에 미국인을 보내기를 원하여 뮐렌도르프를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⁸⁰⁾ 이홍장은 이런 반대와 압력을 물리치고 자신의 결정을 고수

79) 『陰晴史』 1882년 10월 14일(양력 11월 24일) (전략) ○李曰, 公平正直, 諳交涉等事, 通各國言語文字, 吾特薦之. ○余曰, 見其面, 已知其人之淳實, 協妥敝邦交涉事務, 誠爲萬幸. ○李曰, 到貴邦, 卽奏賜一官銜, 無論二三四品, 皆可, 但做貴國之官, 辦貴國事無礙, 各國人, 不得以局外干涉爲言, 向來李裕元·金宏集, 與日人議約時, 若有如穆麟德者代辦, 日人不敢要挾過當.

80) 이영석, 「Paul Georg von Möllendorff와 한국」, 『독어교육』 24, 2002, pp.431~432.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선의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대원군의 조속환국을 위해서 청국으로 간 謝恩兼陳奏使 조영하는 8월초 천진에서 주북을 다시 만나 조선해관창설을 맡아줄 책임자 추천을 정식으로 의뢰했다.⁸¹⁾ 다시 9월에 고종은 임오군란 당시 淸兵의 도움에 사의를 표하기 위해 진주사 조영하를 통해서 이홍장에게 자문을 보내어 각국과 換約을 앞두고 일체의 交涉商辦事件을 처리할 賢明練達之士를 代聘해 주도록 정식으로 요청했다.⁸²⁾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이홍장은 조선이 일본과 통상한 지 7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해관을 두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앞으로 있을 미·영·독 각국과의 조약개정 교섭을 담당할 인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해관창설 및 외교담당 고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담당할 사람으로 상해해관에서 5년간 근무했고 천진주재독일영사관 부영사를 지내 외교와 해관업무에 능하고 漢文·漢語를 잘 아는 뮐렌도르프를 정식으로 천거한 것이다.⁸³⁾

또 한편으로 조선청년들을 학습시켜서 점차로 서양인에 대체시켜서 조선해관은 조선인관리들이 장악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서양인의 고용이나 조선청년들의 학습에 관한 일들은 중국으로서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선의의 조언이었다. 중국인을 보내어서 조선해관을 幫助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청 자신의 해관이 서양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청과 조선 간에 아직 근대적 관계에 입각한 조약이 없어 관원을 주재시킬 명분이 없고, 그리고 여러 외국의 의심과 반발을 살 우려가 많았던 것이다. 또 종래까지의 종속관계 속에서도 常駐하는 관리를 파견한 예는 없었던 것

81) 고병익, 「穆麟德의 고빙과 그 배경」, 『진단학보』25·26·27, 1964, p.228.

82) 『各司謄錄』 근대편. 光緒八年九月十八日. 朝鮮國王爲咨會事 照得小邦締修外交 敕定內難 寔賴我中朝綏靖至恩暨貴大臣經畫遠謨 前後襄辦 靡不用極 欽頌銜結 舉國同情 竊小邦 向不諳外務 而各國換約在前 一切交涉商辦事件 茫然不知下手 煩請貴大臣 酌量小邦應行時宜 代聘賢明練達之士 迨茲東來 隨事指導 俾得籍手 隔迷 克徼終始之惠 千萬幸甚 爲此合行移咨 請照驗施行 須至咨者.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83) 부정애, 「조선해관의 창설경위」, 『한국사론』 1, 1973, pp.312~313.

이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 해관 창설이나 운영에 간여하는 일을 막는 最善策은 서양인을 고용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⁸⁴⁾

중국에서는 해관의 서양인고용을 이미 1854년 이래로 거의 30년간을 경험해 왔던 터이고 당시에는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Robert Hart) 아래의 거대한 청국해관이 조약을 맺은 각국의 외국인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다.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비록 서구의 침투이자 자립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바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종전에 없던 사무의 능률화 공정처리 및 해관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본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조선 해관의 경우도 이를 참작해서 서양인을 고빙을 하되 서양인이 파견하는 해관관리관과 더불어 隨同해서 수세를 관리하도록 주의시켰으며 덧붙여서 조선인 자제들로써 수세 업무를 학습시켜 중국적으로는 모두 대체시켜 서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끔 하자는 것이었다.⁸⁵⁾

2. 뮐렌도르프의 고빙

뮐렌도르프는 1869년 중국에 건너간 이후 漢口와 九江 등지의 세관에서 1874년까지 5년간 근무하다 곧 자신이 희망한 駐北京獨逸公館에서 통역으로 고용되었다가 3년만인 1876년 정식 통역관으로 발령받아 天津領事館을 거쳐 上海獨逸領事館에서 3년을 지내다, 1879년 천진영사관의 副領事로 있었으나 그의 상사인 駐北京獨逸公使 브란트(Max von Brandt)와의 불화관계로 1881년 사직한 뒤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에 부임하게 되었다.⁸⁶⁾

그리하여 11월 18일 천진해관도 주북 입회하에 正使 조영하와 뮐렌도르프 간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⁸⁷⁾

84) 고병익, 「穆麟德의 고빙과 그 배경」, 『진단학보』 25·26·27, 1964, p.228.

85) 앞의 논문, pp.226~227.

86) 박일근, 「李鴻章과 穆麟德의 재한외교활동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4-1, 1985, p.27.

87) 앞의 논문, pp.24~25.

1. 뮐렌도르프는 조선정부의 고용요청에 따라 조선과 각국 교섭사건을 처리하되 반드시 성의를 다해 처리하며 조선 관리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조선정부가 국정을 자문한다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 개혁을 요하는 곳은 뮐렌도르프가 반드시 각국의 해당사실을 참고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이의 장단점을 밝혀 준비하며 상세히 利弊를 보고하되 그 이외의 일은 간여해서는 안된다.
2. 조선국통상이 개시함에 세관을 설치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정박선의 각종 장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어 뮐렌도르프는 중국세관에 근무한 지 수년이 되었기에 반드시 외국 각 세관장정에 밝아 수시로 이를 참고하여 잘 처리하며 조선정부에 稟議해서 시행한다. 만약 조선정부나 혹은 중국위원이 함께 조선 정부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도우려면 뮐렌도르프를 개항지에 출장시켜 상무를 상세히 보도록 하되 각항의 사무를 위임하면 마땅히 하나하나 처리하되 구실을 붙여서 이를 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뮐렌도르프가 조선정부의 명령을 받는다면 세관업무를 총괄하거나 혹은 일개항구를 전담관리든가 혹은 타항구를 겸임하면서 처리하되 반드시 조선인을 보조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초창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도 이미 고용된 외국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부에 상의 요청하며 고용연한을 명확히 약정하여 연한 내 반드시 조선인으로 하여금 세관업무를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기간이 차면 고용·계약된 외국인을 사퇴한다. 각 세관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조선인 및 창고를 보조하는 諸般事는 반드시 세관수입에서 지출하나 단지 처음에는 稅收가 많지 않을 것이니 임시로 다른 자금을 조달한다. 세관을 운영한지 2년 뒤 다시 월 지출공비 항목을 정하여 시행하되 세수한 은납은 임시로 조선관리에 의해 정부에 보내도록 양해하며 뮐렌도르프는 오직 세관업무만을 잘 審査하여 결정한 뒤 보고한다. 만약 조선정부가 委派하거나 타항의 직무를 겸해 처리한다면 반드시 본 협정서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해야 된다.
4. 조선정부는 비록 뮐렌도르프를 고용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한 이상 반드시 예우해야 한다. 만약 직무로서 파견한다면 반드시 일할 권한을 직책에 상응하도록 주어야 하며 봉급은 조선정부가 임시로 매월 세관의 평은 3백 냥과 그의 주거지와 여비 등 일체를 조선정부에 의해 공비 내에서 부담한다.
5. 조선정부가 뮐렌도르프를 초청한 것은 연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申明하

여 만약 그가 이상의 각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급료는 물론 수시로 사퇴하며 피차 사정이 있어 사퇴를 원한다면 반드시 3개월 전에 서로 통고하여 다른 사람이 代置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연후에 봉급을 약간 참작하며 사퇴시킬 수 있다.

6. 상기 고용계약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만들어 조영하 정사와 이홍장이 각 1부씩을 갖기로 합의하고 1통은 갖고 가서 조선국왕에 공손히 아뢰어 비준을 받는다.

계약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약을 주선한 중국 측에서 뮐렌도르프의 전횡 가능성을 제약하기 위해 신중하게 배려하였다는 점이다. 외교교섭과 해관운영이라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수를 지키고 성심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선 측에 부여해 놓고 있다. 이처럼 고빙 연한을 정하지 않고 조선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청의 의중대로 조선 해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뮐렌도르프를 파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고빙 연한을 정하여 그가 청에 유리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을 것이다.

또한 계약서 속에서 뮐렌도르프가 어떤 직책을 맡을 것인지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청의 이해나 종주권 강화를 위해서 그를 파견하였다면 조선 정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요직을 주도록 규정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월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⁸⁸⁾ 다만 이홍장이나 주복 등이 뮐렌도르프를 파견한 것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뮐렌도르프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조선을 위한 자세를 견지했으며, 전적으로 조선의 관리로서 자신의 식견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뮐렌도르프는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했던 청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일본과 조일

88) 고병익, 「穆麟德의 고빙과 그 배경」, 『진단학보』 25·26·27, 1964, pp.238~239.

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상당한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차관도입 대가로 관세 징수권을 부여한 것도 바로 일본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청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국과 일본 양측으로 전개되는 대립구도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국 러시아를 끌어 들여 청과 일본 사이에 하나의 완충 지대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청·러·일 삼국이 상호견제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그들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지켜나가하고자 했다.⁸⁹⁾

뮐렌도르프는 부임 초부터 자신을 낳아준 모국이나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선했던 청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조선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나긴 회의를 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⁹⁰⁾ 통리아문참의·외아문협판·호조참판·해관총세무사·전환국총판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조선해관을 설치하였고, 상해·제물포간의 정기선로개척, 상해와 서울간의 해저전선과 블라디보스톡과 서울간의 지상전선 연결, 지질과 광물자원의 조사, 외국어 학교 개교, 유리공장을 설립하고 주전기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도 새로운 화폐의 주조를 건의하여 관철시켰으며 유리공장 설립, 양잠·농업·성냥공업 등도 시작하였다. 외교적으로도 영국과의 거문도 문제로 일본을 다녀오는 등 활약하였으며 서양 각국과의 외교교섭과 해관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였다.

뮐렌도르프가 짧은 재임기간 중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많은 사업에 착수한 점이나 청·러·일 삼국을 통한 다변적인 외교를 지향하고 청의 간섭이나 청국해관의 의지를 벗어나 조선해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등 조선의 자주를 위해 노력했던 점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세설정 협상에서 조선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한말 개화기 자강부국의 중요한 기반을 잃게 하였고, 이홍장이 추천한 親淸적인 인물이라는 한계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등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89) 김현숙, 「뮐렌도르프의 외교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의 성격」, 『역사와 담론』 34, 2005, pp.92~93.

90) 뮐렌도르프 부인 편, 고병익 역, 「穆麟德의 수기」, 『진단학보』 24, 1963, p.572.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청이 조선의 해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뮐렌도르프를 파견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조선이 간절히 원하는 청국인을 파견할 수도 있었다.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청국인을 파견해서 얼마든지 조선의 해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굳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양인을 파견한 것은 그를 통해서 청의 이해를 반영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오로지 통상 해관 사무의 전문가로 추천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조선이 서양문화를 익히고 해관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뮐렌도르프와 함께 파견된 청국 유학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3. 出洋學生의 파견

조선파견이 결정된 후 뮐렌도르프는 이홍장을 방문해서 장차 조선해관에서 같이 일할 미국유학 출신 중국청년을 천거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홍장은 미국유학생 6명을 소개했다. 11월 19일 이들 6명이 뮐렌도르프에게 왔는데 그 중 3명은 겨울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고, 나머지 3명이 함께 조선으로 가게 되었다.⁹¹⁾ 뮐렌도르프는 김윤식에게 서양에 나갔던 학도들이 먼저 귀국 학생들을 가르쳐서 서학과 서문을 익혀서 개항한 3곳에 나누어 보내서 1곳에 각 2명씩 있으면 교섭 상무 등의 일에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유학생들을 살펴보면 1차 출양학생 蔡紹基는 水師營務處에, 1차 출양학생 梁敦彥은 電報學堂에 있었고, 2차 출양학생 吳仲賢은 機器東局에 있었다. 3차 출양학생 林沛泉은 津海新關에, 3차 출양학생 周長齡은 津海新關에, 3차 출양학생 梁如浩는 南局에 있었다.⁹²⁾ 이들은 장차 조선학생에게 서양어문을 가르치고 개항장에 2명씩 배치되어 통상무역사무를 가르치는 일

91) 앞의 논문, p.568.

92) 김윤식, 『陰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1960, p.210, 高宗 19年(1882) 10월 14일자

을 맡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뮐렌도르프 일행은 1882년 10월 28일(12/8) 조선을 향해 출항, 11월 3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에 도착했다.⁹³⁾ 그 일행 가운데는 뮐렌도르프를 비롯해서 진주사 조영하 김윤식과 마건상, 진수당, 招商 및 開平 礦務局總辦 馬挺樞 그리고 중국인 청년들이 동행하였다. 이 때 뮐렌도르프의 수기에는 3명의 학생들과 조선에 함께 갈 것이라고 하였으나 『음청사』에는 뮐렌도르프와 동행한 청국 유학생으로 오중현과 당소의를 기록해놓고 있다. 현재 이들 유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당시의 정황은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후 주북이 통리아문에 조선에 파견된 유학생들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조선에 간 미국유학생은 모두 6명으로 초기 뮐렌도르프가 언급한 梁敦彦을 제외한 蔡紹基·梁如灝·林沛泉·周長齡·吳仲賢·唐紹儀 등이었다.

1884년 4월 27일 천진해관도 주북은 미국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각 곳에 파견하여 當差한 일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일찍이 북양대신 이홍장은 이들 학생들이 사고가 있어 휴가를 얻어 본적지로 돌아가기(回籍)를 청하면, 기한을 정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고 보증인을 세운 뒤에야, 바야흐로 휴가를 허락하도록 諭飭한 바 있었다. 그런데 휴가가 끝났는데도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보증인이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하였다. 이에 전에 조선에 파견한 학생 6명의 행방을 조사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조선에 파견한 유학생 중 1명인 蔡紹基는 작년 8월에 병으로 인해 상해로 돌아왔는데, 일찍이 招商局 徐의 편지에 의하면 蔡紹基는 서학(西學, 영어)이 심히 정통하지 못하다고 하므로, 이미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상헌(商憲)의 허락(允准)을 받아서 이에 出洋(미국으로 감)하여 학습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밖의 梁如灝·林沛泉·周長齡·吳仲賢·唐紹儀 5명이 현재 조선에 있는지 없는지의 행방이 묘연하자 진수당에게 이들에 대

93) 김윤식, 『陰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1960, pp.219~220, 高宗 19年(1882) 10월 28일자; 11월 3일자

穆麟德의 일기에는 12월 4일 천진을 떠나서 10일 인천에 상륙, 13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다.

해 조사해서 알려주고, 만약 휴가를 청하여 다른 곳에 간 자가 있다면 청컨대 재촉하여 빨리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주복은 만약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마땅히 있으면 안 될 곳에 있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귀도가 내용을 물어서 밝혀서(詢明), 조선 통리아문에 知照하고, 귀도에서 집조를 발급하여 천진에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청하며 회답을 달라고 통리아문 독판 김윤식에게 조회하였다.⁹⁴⁾

이에 조선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은 해당 학생 6명을 조사해보니, 현재 해관에서 辦事한 자는 唐紹儀·吳仲賢·周長齡 3명이며, 蔡紹基가 병으로 인해 휴가를 청한 것 외에 梁如灝⁹⁵⁾·林沛泉 2명은 작년 인천에 가서 며칠 있다가 곧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하였다. 통리아문의 征權司 뮐렌도르프[穆麟德] 협판에게 자세히 조사하게 했는데 그에 의거해서 말하면 梁如灝·林沛泉 두 학생은 동쪽에 왔는데(東來, 중국에서 조선에 왔다는 뜻) 모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들은 돌아다니다 곧 돌아갔으니 해관 또한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며, 이미 그 일은 작년에 이미 진수당에게 函覆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러한 사정을 천진해관도에게 전하여 달라고 진수당에게 조복하였다.⁹⁶⁾

94)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96. <中國學生 梁如灝 等 回送의 件>(1884. 5. 25)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即補道陳, 爲照會事, 照得, 本年四月二十七日, 准天津海關道周[馥]咨開, 案查美國撤回學生派赴各處當差, 會奉北洋大臣李[鴻章]諭飭, 此項學生, 過有事故, 請假回籍, 立定期限, 仍取切實妥保, 方准給假, 假滿不回, 惟保人是問等因, 歷經遵辦在案, 茲查前派往朝鮮學生六名, 除蔡紹基一名, 於上年八月, 因病回滬, 會准招商滬局徐函稱, 蔡紹基, 西學未甚精通, 已稟蒙商憲允准, 仍令出洋補行學習外, 其梁如灝·林沛泉, 周長齡·吳仲賢·唐紹儀五名, 現在是否仍在朝鮮, 應由貴道查詢見覆備案, 如有請假他往者, 應由貴道催令速回, 倘該學生等在彼有不相宜之處, 或該學生等有所不願, 應請貴道詢明, 知照朝鮮統理衙門, 由貴道發給執照, 回津當差, 不得任聽自便, 亦不可稍加勉強, 以符章程, 而昭公允, 相應咨會貴道, 請煩查照, 核辦見覆等因, 准此, 相應照會貴督辦, 請煩查照, 見覆施行, 須至照會者.

95) 『음청사』에서는 梁如浩라고 표기했다.

96)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p.97~98. <中國學生 梁如灝 等 回去에 關한 回答>(1884. 5. 28)

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金, 爲照覆事, 接准本月初一日貴總辦照會內開, 云云等因, 查該學生六名, 現在海關辦事者, 唐紹儀·吳仲賢·周長齡三名, 除蔡紹基因病請假外, 尚有梁如灝·林沛泉二名, 上年到仁川, 數日即便回中, 細詢於本衙門征權司穆[麟德]協辦, 據云, 梁林二學生東來, 並不一見, 旋即回去, 茲海關亦不須其人幫辦, 業將其事, 上年已函覆貴總辦, 請轉致

즉 청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유학생 6명 중 蔡紹基가 병으로 인해 휴가를 청해 갔으며 梁如灝와 林沛泉은 인천에 도착한 지 며칠 후 곧 중국으로 되돌아갔으므로 뮐렌도르프의 조선 해관업무를 끝까지 보좌한 이는 오중현·당소의·주장령 3명이었다. 오중현은 조선해관 본부(서울 정동 영국공사관과 미국공사관 사이에 위치함)에, 당소의는 부산해관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다. 주장령은 처음에는 원산해관에 발령받았으나 인천해관에 옮겨 근무하였고, 이후에 1888년 7월 영국인 영국인 Johnathon H. Hunt가 3대 부산해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동행하여 부산에 와서 근무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유학하고 서학에 능숙했던 오중현과 당소의는 외아문 산하의 신식학교인 同文學이 설립되었던 초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⁹⁷⁾

그리고 당소의는 갑신정변 이후에는 원세개의 신임을 얻어 그의 휘하에서 한성공서의 영문번역 겸 보좌관으로 있었고, 1886년 원세개가 천진으로 잠시 귀국할 때에는 그를 대신하여 漢城公署佐理兼繙譯事宜에 임명되기도 하였다.⁹⁸⁾ 1889년에는 용산상무위원을 위임하였다. 또한 1891년 8월 원세개는 母病으로 인하여 회적하기를 청하였을 때 북양대신 이홍장은 조선의 정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대리토록 지시하는데, 이때 원세개는 가장 신임하는 당소의를 추천하여 용산상무위원 겸 대리주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직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당소의를 1882년~1898년 사이 16년간 조선에 머물렀다.⁹⁹⁾

당소 의와 주장령(周壽臣), 오중현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일본이 조선에 출병하는 최후의 일각까지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다. 주장령은 처음의 번역원에서 최종적으로 서리인천영사로 승진할 때까지 15년간 조선에 있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 주장령은 天津輪船招商局 副幫辦을 맡았고 1903년 關內外鐵路總辦, 1909년 奉錦山海關兵備道兼山海關監督을 위임

於津海關道矣，合將前情，相應備文照覆貴總辦，相應備文照覆貴總辦，請煩查照施行，須至照會者。

97) 김윤식, 『陰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1960, p.223, 高宗19年(1882) 11월 21일자

98) 『高宗時代史』 2집, 高宗23年(1886) 3월 14일자.

99) 이구용, 「조선에서의 唐紹儀의 활동과 그 역할 -청일전쟁 전·후기를 중심으로-」, 『藍史鄭在覺박사고회기념 동양학논총』, 1984.

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파견된 이후 통역관으로서 조선인에게 영어를 교습하도록 했고 조선해관 창설 초기에 해관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조선과 청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IV. 路引과 護照의 발급

조선시대에는 路引이라는 일종의 여행 허가증이 있었다. 관인이나 백성이 100리 이상 여행하거나 군사가 휴가를 얻어 귀향할 경우에 兵曹에서 신분·연령·籍貫, 휴대품의 物目과 수량 등을 기재한 路引을 발급했다. 또 倭使가 조선에 와서 상경할 때도 上京路線을 기재한 路引을 필요로 하였다. 조선 태종 연간에는 서북 지방에서 路引法을 규정하여 商賈가 매매를 행할 때, 소재지 官司에서 물화를 모두 기록한 路引을 발급하고, 매매하는 고을의 관사에 이를 제출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背書에 印을 눌러 매매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¹⁰⁰⁾ 그래서 商賈 가운데 路引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재화를 몰수하도록 하였다.¹⁰¹⁾

이 路引은 1880년대 이후에도 전통적인 사대관계에서 기초해서 奏文이나 咨文을 가지고 청 내지에 가는 관인들에게 여전히 통행증과 같은 명목으로 발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무역장정의 체결로 양국의 내지를 游歷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護照라는 새로운 여행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즉 1880년대 근대로 이행하고 있던 시기에 조선에서 청 내지에 들어가는 합법적인 방식은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조선국왕의 奏文이나 咨文을 가지고 가는 관인들이 路引을 발급받는 방식, 또 하나는 재자관이나 재주관을 제외한 관인, 상민, 학생 등이 護照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들이 발급받는 路引과 護照에는 성명, 신분 등이 명기되어 있었고, 해당국 지방관의 會銜이 갖추어져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었다. 이러한 路引과 護照의 두 방식은 조청 간의 양절체제를 문서 발급 방식의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0) 『太宗實錄』 太宗 12年(1412) 4월 3일자.

101) 『太宗實錄』 太宗 11年(1411) 2월 1일자.

1. 路引

路引은 조선국왕의 奏文이나 咨文을 가지고 북경으로 가는 이들에게 발급한 통행증이다. 특히 재주관 일행이 海道를 통해 天津을 거쳐 북경에 가야 하는 경우 천진해관에서 路引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재주관 일행은 사대문서 전달 및 접수를 목적으로 한 사행이었기 때문에 예부에서 이들의 절차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예부에서 보낸 자문에 따르면 ‘사후 조선 각원이 만일 海道로 天津에 와서 주문이나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 와야 하는 경우, 먼저 본부에 알리고 아울러 북경에 오는 路引을 발급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딸려 보내라’¹⁰²⁾고 하였다.

이에 따라 주진대원이 재주관 일행의 이름과 수, 짐의 수 등을 천진해관에 보고하면, 천진해관도가 伴送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한편, 路引을 함께 첨부하여 이홍장에게 보냈다. 이에 이홍장이 路引에 도장을 찍어 천진해관도에게 보내면, 천진해관도가 재주관 일행에게 전해주었다. 즉 천진해관은 근대적인 기구이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사대관계와 관련해서 路引에 관한 업무도 접수하여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884년 5월 16일 주진상무대원 남정철은 천진해관도 주복에게 총리아문에 자문하는 국왕의 奏文 1摺이 있음을 알리는 한편 이를 바치기 위해 북경으로 파견하는 賫奏官 이용준(李用浚)과 書記, 通事, 從人을 포함하는 일행의 이름과 짐의 수를 기록한 執照 1紙를 첨부하면서 도장을 찍어 발급해줄 것을 요청한 일이 있다.¹⁰³⁾ 여기서도 執照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

102)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이하 『청계사료』로 약칭) 제3권, 1972, 臺北, p.1476.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賫奏官李鶴圭等前往北京發給路引並派員伴送> (1884. 9. 9)

准禮部咨開. 嗣後朝鮮各員. 如由海道赴津. 齎有奏咨文件來京. 務即遵照定例暨奏准章程. 先期知照本部. 併給與來京路引. 派員伴送等因.

103) 『청계사료』 제3권, 1972, p.1398.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國王派員齎奏摺咨文及行李執照蓋印事> (1884. 6. 17)

五月二十四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署津海關道盛宣懷呈. 五月十七日. 准朝鮮國商務大員南廷哲函稱. 現有國王奏文一摺. 呈總理衙門咨文一件. 派齎奏官李用浚. 書記金載善. 通事李魯洙. 從人金道喆. 徐吉孫赴都呈納. 攜帶行李十件. 附執照一紙. 請會印前來. 除印發

로는 路引이며 路引과 執照의 뚜렷한 구분 없이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후 예부에서 路引 발급의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路引 발급을 요청하는 문서의 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명확하게 路引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문서 내용 또한 형식적으로 정비되었다.

예부에서는 路引 발급 절차에 대해 사후 조선 각원이 만일 海道로 天津에 와서 주문이나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 와야 하는 경우는, 사무는 곧 定例에 따르고, 아뢰는 일(奏)은 장정에 따라야 하며, 먼저 본부에 알리고 아울러 북경에 오는 路引을 발급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딸려 보내도록 했다. 이에 1884년 7월 17일 남정철은 “이번 달 14일 賣奏官 李鶴圭, 통사 李基初, 하인 李仁用이 짐은 6包를 가지고 해도로 천진에 와서 북경에 갈 것인데 마땅히 員役의 이름과 수, 짐의 수를 알려 이로써 북양대신에게 보고드리니 路引을 발급해주시고 아울러 예부에 알려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¹⁰⁴⁾

이에 주북은 候補鹽大使 卜枚功을 伴送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한편, 이홍장에게 “路引을 발급해 주셔서 해당 재주관에 전급해서 가지고 가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홍장은 이에 의거해서 곧 路引에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 전급하도록 하는 한편 예부에 咨明하였다.¹⁰⁵⁾

이후에 路引 발급을 청하는 사례들도 문서의 형식이나 처리과정이 정형화되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예부에서 규정한 조선의 재주관이나 재자관이 천진을 통해 북경에 오는 경우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1886년 8월 19일

外. 理合呈報核咨等情. 到本署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104) 『청계사료』 제3권, 1972, p.1476.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賣奏官李鶴圭等前往北京發給路引並派員伴送> (1884. 9. 9)

七月二十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七月十八日. 據署津海關道盛宣懷詳稱. 案查前蒙憲台札. 准禮部咨開. 嗣後朝鮮各員. 如由海道赴津. 賣有奏咨文件來京. 務即遵照定例暨奏准章程. 先期知照本部. 并給與來京路引. 派員伴送等因. 行令遵照在案. 茲於七月十七日. 准朝鮮駐津商務大員南廷哲照會內稱. 本月十四日. 本國賣奏官李鶴圭. 通詞李基初. 跟伴李仁用. 隨帶行李六包. 由海道來津. 前往北京. 合將員役名數. 行李件數知照. 以便轉報北洋大臣. 發給路引. 并知照禮部查照等因. 到關.

105) 위와 같음. (중략)准此. 除札委候補鹽大使卜枚功妥爲伴送外. 理合詳請查核轉咨. 並請繕發路引. 以便轉給該賣奏官執往. 寔爲公便等情. 到本署大臣. 據此. 除將路引印發轉給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조선주진독리통상사무 박제순이 재자관 이응준이 8월 18일 천진에 도착한 것과 그 일행인 수행원, 통사, 근역의 이름과 수, 짐의 수를 밝히면서 짐조를 요청하자, 주복이 이에 준해서 候補監大使 趙元樽을 伴送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한편, 이흥장에게 자세히 살펴서 자문해주시고 아울러 路引을 발급해 주길 청하였다. 이에 의거해서 이흥장은 곧 路引에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 전급하도록 하는 한편 예부에 咨明하였다.¹⁰⁶⁾

路引은 전통적인 사대관계에 기초하여 청 내부를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이른바 통행증으로 발급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路引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외교관여권에 가까운 것이고 사행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도 매기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여행경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이들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2. 憑票와 執照

路引이 전통적인 사대관계에 기초하여 재자관이나 재주관에게 발급하는 문서였다면 護照는 재자관이나 재주관을 제외한 관인, 상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급한 문서이다. 그 발급절차는 먼저 중국 내지를 유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진에 가서 執照를 제출하면 주진대원이 도장을 찍어 천진해관도에게 알리고, 천진해관도가 도장을 찍어 護照로 전급해 주는 한편 이흥장에게 이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발급 초기에는 執照와 護照 대신에 憑票[증명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

106) 『청계사료』 제4권, 1972, p.2131.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賣咨官李應浚等赴京已發給路引> (1886. 9. 19)

八月二十二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津海關道周馥詳稱, 案查前蒙札, 准禮部咨開, 嗣後朝鮮各員, 由海道赴津, 賣有奏咨文件來津, 務即遵照定例, 暨奏准章程, 先期知照本部, 並給與來京路引, 派員伴送等因, 行令准照在案, 茲於八月十九日, 准朝鮮駐津督理通商事務朴齊純函稱, 現有賣咨官李應浚, 於八月十八日, 由海道來津, 帶有隨員金雲鳳, 通詞余得福, 並跟役二名, 行李八件, 擬即前往京都, 函請查照辦理等因到關, 准此, 除派委候補監大使趙元樽妥爲伴送外, 理合詳請查核轉咨, 並請繕發路引, 以便轉給該賣咨官執往, 實爲公便等情到本閣爵大臣, 據此, 除將路引印發轉給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후 執照나 護照의 명확한 구분 없이 執照와 護照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거나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1) 병표의 발급

護照 발급이 정착되기 전에 조선 관인에게 병표가 발급된 사례는 武備 등을 학습하는 일로 파견된 李用肅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880년 4월 30일에 이용숙을 보내어 製器·鍊軍을 학습하도록 천진에 파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이홍장에게 청하기로 하였다.¹⁰⁷⁾ 이듬해인 1881년 정월 20일에 이용숙이 천진에 도착하였음을 永定河道¹⁰⁸⁾ 游道(游智開)가 진해관도가 이홍장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문서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 사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료 3>

朝鮮國王爲咨覆事(마) 光緒七年三月二十四日 承準貴部咨(마) 節該左司案呈準督部堂咨開(라) 光緒七年二月初十日 準欽差北洋大臣直隸總督 李 咨開(다) 據津海關鄭道等會詳稱(나) 竊職道等 於光緒七年正月二十日 接到永定河道游道函稱(가) 朝鮮官 李容肅 爲學習武備等事 開列各條 來津稟候 中堂示道等因(가') 準此查各條內 有請給憑票一條 以爲朝鮮國學徒來津 沿途呈驗之用 業蒙俯準給發 茲據李容肅備具 押領請領憑票十張賚回 該國呈收理 合據情詳 請憲台俯賜給發憑票十張 以便轉交 李容肅 祇領 實爲公便等情(나') 到本大臣據此查 朝鮮國派人 由海道來津 學習武備等事 請給沿道憑票十張 已於本年正月二十八日 面交該國來員 李容肅祇領 除批示外 相應咨會查照備案等因(다') 到本軍督部堂 準此除分行外 相應照抄憑票咨行 爲此合咨貴部 請煩查照施行等因(라') 前來 相應照抄原票 知照朝鮮國王等因(마') 奉此除將貴部咨內辭意承領外

107) 『高宗時代史』 2집, 高宗 17年(1880) 4월 30일자. 앞서 王, 明幹人員을 淸國 天津等處에 派遣하여 製器·鍊軍 等を 學習시키려 하여 昨年 7월에 時獻書齋官 李容肅으로 하여금 淸直隸永平府 知府 游智開를 通하여 비밀리 北洋大臣 直隸總督 李鴻章에게 請하게 하고 領中樞府事 李裕元도 密函을 呈하여 이를 請하다.(하략)[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08) 永定河道는 하천 永定河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아문은 順天府 固安縣(현재의 河北省 廊坊市 固安縣)에 있었다. 山東運河道, 江蘇河庫道와 청대의 3대 河道 관리 기구였다. 당시 游智開가 永平府 知府와 겸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爲此合行咨覆請照驗施行 須至咨者.

右咨(마')

咨覆事.

光緒七年三月二十八日啓

主事臣 鄭憲時 製進 盛京禮部 光緒七年四月初四日 撥送 光緒七年三月二十八日 109)

<사료4>

七月十六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本年七月一日, 准朝鮮國王咨開, 光緒九年六月二十六日, 承准貴大臣咨節, 該前據山海關道續昌詳稱, 案查光緒七年二月十四日, 蒙前憲台李札, 飭以據津海關鄭道等會詳稱, 竊職道等於光緒七年正月二十日, 接到永定河道游道函稱, 朝鮮官李容肅爲學習武備等事, 開到各條來津, 稟候中堂示遵等因, 准此, 查各條內, 有請給憑票一條, 以爲朝鮮國學徒來津沿途呈驗之用, 業蒙俯准給發, 茲據李容肅備具押領, 請領憑票十張, 責回該國呈收, 理合據情詳請憲台, 俯賜給發憑票十張, 以便轉文李容肅祇領, 寔爲公便等情到本大臣, 據此, 查朝鮮國派人由海道來津, 學習武備等事, 請給沿途憑票十張, 已於本年正月二十八日, 面文該國來員李容肅祇領, 除批示外, 合行札飭札到該道, 即便查照, 計發憑票式一張.¹¹⁰⁾

<사료 3>의 흐름을 보면 먼저 (가) 영정하도가 이용숙이 武備 등의 일로 왔는데 中堂(이홍장)에게 아뢰어야 한다고 진해관도에 통보하였고, (나) 진해관도가 이용숙이 요청한 빙표 건에 대하여 다시 憲台(이홍장)에게 빙표 10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 이홍장은 직접 이용숙에게 빙표 10장을 교부하고(정월 28일) 사본을 만들어 군독부당에게 자회하였고, (라) 군독부당은 이 사실을 관련기관에 시달하는 한편(分行) 빙표의 내용을 적어 성경예부에咨文을 보냈으며, (마) 성경예부는 다시 그 빙표의 사본(抄)을 조선국왕에게 알렸다. 이에 (바) 조선국왕은 청의 처분에 사의를 표하고 회신(咨覆)을 보냈다.

109) 『各司謄錄』 근대편, 光緒七年四月初四日 學徒憑票照抄咨行事 盛京禮部回咨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10) 『청계사료』 제4권, 1972, p.1178.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國王咨覆韓民如有不持票照來津請予嚴禁> (1883. 8. 19)

그런데 이 문서와 유사한 문서 『청계사료』에도 보인다(<사료4> 참조). 그런데 두 문서를 비교해 보면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3> 문서는 북양대신 이홍장이 이용숙의 빙표 건과 관련하여 성경예부에 직접 보고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서의 전달과 시행과정도 다소 차이가 있다. (가) 부분은 영정하도가 진해관도에 보낸 문서의 내용(光緒 7년 정월 20일)으로 앞의 문서와 같다. 그리고 “津海關鄭道等會詳稱” 이하도 다시 앞 문서의 (나)와 같다. 다만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홍장이 문서 발행 주체가 아니고 “山海關道續昌詳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산해관도의 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의 문서와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진해관도가 보고한 내용에 따라 이홍장이 처리한 내용만 들어 있다. 이는 산해관도와 진해관도가 공동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會詳稱’이 이를 반영한다.¹¹¹⁾

두 문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880년 중에 천진 파견이 결정된 이용숙이 1881년 정월에 永平府에 도착하였다. 조선 정부가 영평부 지부인 유지개와 사전에 이용숙 파견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유지개는 이에 山海關道와 津海關道에 동시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정월 20일. 函) 산해관도와 진해관도는 다시 이용숙이 가지고 온 문서에 빙표 10장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 이를 다시 이홍장에게 보고하여 빙표 발급을 요청하였다(詳稱). 이에 이홍장은 정월 28일 직접 이용숙 등을 만나서 빙표를 전해 주고 조선국왕·군독부당과 성경예부에 각각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咨·文稱). 군독부당은 다시 성경예부에, 성경예부도 역시 조선국왕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국왕이 이홍장(7월 1일)과 성경예부(3월 28일)에 이용숙에게 빙표를 발급해 준 사실에 감사함을 표시하면 회답[咨覆]하였다. 이홍장은 조선국왕으로부터 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성경예부에 통보하였다.

문서의 흐름에 대해서 다소 장황한 설명이 되었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또한

111) 會詳稱은 두 기관 이상에서 함께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문서를 복잡하고 교차되게 주고받는 것은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행정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판단된다.

이 두 문서는 路引의 발급과 구분되며 근대적인 여행 및 체재 허가증으로 보이는 빙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武備에 관한 일로 파견된 이용숙은 事大 使行과는 구분되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해관도와 북양대신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 속에서 빙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때는 통상장정을 맺기 이전이었었고 護照의 발급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빙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2) 執照의 발급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만약 兩國商民이 내지에 들어가 土貨를 採辦코자 할 때는 皮차 商務委員과 지방관에게 품청하면 (두 기관이) 會銜¹¹²⁾하여 執照를 주며, 採辦場所·車馬·船隻을 詳記한다. 해당 상인은 스스로 沿道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皮차의 내지에 들어가 游歷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商務委員과 지방관에 稟請하면 회합하여 執照를 준다. 그런 후에 그 沿途地方을 갈 수 있다. 犯法 等事가 있을 때는 모두 지방관으로부터 近處通商海岸으로 押送하여 第3條에 의하여 엄중처단하되 押送途中에 다만 拘禁은 할지언정 凌虐할 수는 없다.¹¹³⁾

무역장정을 통해 조청 양국은 상민이 내지에 들어와 유력할 경우에는 상무위원과 지방관이 회합하여 執照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두었다. 그런데

112) 둘 혹은 그 이상의 기관 혹은 주관인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문서에 이름과 직함을 기록하는 것.

113)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전략) 如兩國商民欲入內地採辦土貨, 應稟請彼此商務委員, 與地方官會銜, 給與執照填明採辦處所. 車馬船隻, 聽該商自雇, 仍照納沿途, 應完釐稅. 如有彼此入內地游歷者, 應稟請商務委員, 與地方官會銜, 給予執照. 然後前往. 其於沿途地方, 有犯法等事, 統由地方官押交就近通商口岸. 照第二條懲辦, 途中止可拘禁, 不得凌虐.

1883년 주북이 통리아문에 중국에 가는 조선인이 이러한 여행허가증의 발급 절차를 어긴 건에 대해서 조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으로 가는 조선인이 조선 정부를 거쳐 본도에 알려 조희하면 조사하여 문서를 발급하고, 東海關道 衙門에 전달하여 護照를 환급하도록 하면 법도에 부합된다고 하고 있다고 하여 護照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다.¹¹⁴⁾ 여기서 집조와 호조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1884년 의정한 회령통상장정 10조를 보면, 호조의 발급절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집조와 호조의 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회령통상장정 제10조

朝鮮・吉林邊民 貿易은 奉天의 情形과 相近하므로 朝鮮商民이 吉林省에 들어가 土貨를 採辦하고자 할 때는 먼저 地方官이 執照를 給發하고 商務를 督理하는 官員이 按照하여 關防印을 蓋印한 뒤 다시 護照를 填給한다. 吉林商民이 朝鮮에 들어가 土貨를 採辦하고자 할 때도 此例로 하되 執照 內에 먼저 何處地方・何項物質을 聲明하며 萬若 何貨인지를 預定할 수 없으면 採辦을 마친 뒤 關卡地方에 回到하는 것을 기다려 實在貨物을 報明한 뒤 原領한 執照를 繳置하여 查貨徵稅케 하다. 換給한 稅單은 出關・入關時에 呈單 查驗하여 戳記에 蓋用하되 萬若 出入時에 報明을 거치지 않은 私貨를 携帶하면 偷漏의 뜻이 있는 것으로 看做하여 質物을 查出入官한다. 普通으로 隨時往來하여 開市處에 이르러 貿易하는 것은 地方官이나 혹은 稅局에서 商人의 姓名・貨物牲畜의 數目을 寄明한 關防印이 찍힌 照를 給與하되 執照가 없으면 放行을 不許한다. 兩國開市地方에서는 正路로 行走하되 任意로 閒行하지 못하며 民房에 借宿하거나 岐路를 捷徑繞越하는 者는 各 卡兵이 捕送하고 到官하는 대로 正稅의 倍를 罰懲한다.¹¹⁵⁾

114)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p.8~9. <中國에 가는 朝鮮人 護照發給節次에 관한 照會>(1883. 11. 21)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即補道陳, 爲咨會事, 照得, 本月二十日准直隸天津海關道函稱, 貴國駐津常務委員現在尙未派來, 而屢有來華之人, 或不持文憑, 或持貴衙門憑票, 均於體制未符, 現經議定, 暫由貴國政府知照本道, 查明給文, 轉達東海關道衙門換給護照, 以符體制等因, 准此, 相應備文咨請, 貴衙門查照辦理, 嗣後遇有往華之人, 請即備文知會本道, 以便查明給文, 賁赴東海關, 換給護照前往, 以符體制, 爲此備咨貴衙門, 請煩查照施行, 須至咨者.

115) 『高宗時代史』 2집, 高宗 21年(1884) 4월 3일자.

이를 살펴보면, 조선 상인이 吉林省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방관이 執照를 발급하고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원이 執照를 검열한 다음 關防印을 蓋印한 뒤 다시 護照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길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執照 안에는 먼저 어느 곳 어떤 화물인가를 밝혀야 하고, 어떤 화물인지 예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 구매하고 돌아오다가 稅關이 있는 지역에 이르러 실제의 화물을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執照를 바치면 화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받은 근거로 세금납부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 수시로 왕래하면서 무역시장에 와서 무역하는 자도 지방관청이나 稅局에서 關防印을 찍은 照를 발급해 주는데 상인의 성명과 화물, 가축의 수량을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하고, 執照가 없으면 통과시켜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조금 뒤의 일이지는 하지만 1895년 반포한 <保護清商規則>에서는 호조의 발급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14조

청나라 사람이 <保護清商規則> 제5조에 의하여 남겨둔 산업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제3호의 양식에 의해 신청서[稟帖] 원본과 부분 두 통을 만들어 각 당해 지방 관청에 내고 허가를 청해야 한다.

제15조

각 지방 관청에서 전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곧 기재된 산업을 남겨둔 지방 관청에 공문을 보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명백히 알아보아 틀림이 없는 사실인 때에는 제4호 양식의 여행허가증[護照]을 발급한다.

제16조

여행허가증[護照]을 받은 청나라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내륙에서 원거주지로 돌아왔을 때 받았던 여행허가증[護照]을 해당 지방 관청에 도로 바쳐야 한다.¹¹⁶⁾

116) 第十四條: 清民之按照保護清商規則第五條, 爲收回存留產業, 欲進入內地者, 須照第三號式樣, 繕備正 副稟帖兩本, 呈上各該地方廳, 稟請準可.

第十五條: 各地方廳接有前項稟請, 卽行移牒所名存留產業地方廳審明眞假, 如事實無疑者, 發給第四 號式樣護照.

이에 따르면, 먼저 청나라 사람이 남겨둔 산업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신청서[稟帖] 원본과 부분 두 통을 만들어 각 당해 지방 관청에 내고 허가를 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방 관청에서 전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곧 기재된 산업을 남겨둔 지방 관청에 공문을 보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명백히 알아보아 틀림이 없는 사실인 때에는 護照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護照를 받은 청나라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내륙에서 원거주지로 돌아왔을 때에는 받았던 護照를 해당 지방 관청에 도로 바쳐야 했다. 즉 執照는 일종의 증빙서류였으며, 護照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했던 여행허가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執照의 사례로 1848년(光緒 4)에 東海關道에서 발행한 船鈔執照를 들 수 있다(<그림1> 참조). 이 執照는 영문으로 부기된 부분이 같이 있어서 執照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執照의 오른쪽에는 “東字第六拾參號”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동해관도에서 발행한 執照의 일련번호로 생각된다.

테두리 안의 첫 번째 줄에는 執照의 발행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監督東海關山東登萊靑兵備道 方”이라고 하였다. 方은 다른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東海關道の 姓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앞부분은 東海關과 산동지역에 속한 登州 萊州 靑州의 兵事를 감독한다는 의미의 직함이다.¹¹⁷⁾ 먼저 東海關道인 方이라는 관인이 執照를 발급하는 일이라고 하고, 通商章程을 살펴보니 “모든 배들은 한 항구를 떠나서 다른 항구 및 香港 지방으로 가서 통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배의 船主가 海關에 稟明하여 專照를 발급받고 4개월 동안 다른 항구에서 통상하는 경우에 다시 船鈔를 내지 않도록 하여 중복과세를 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¹¹⁸⁾

第十六條: 領有護照之清民行旅已了, 由地內回到原地, 當將所領護照, 還納該地方廳.

117) 『清史稿』 卷21 本紀,, p.769. 定登萊靑道駐煙台, 監督東海關稅務.

118) 『清史稿』 卷125 洋關, p.3686. 咸豐四年, 設江海關於上海. 八年, 復定英約: 一, 牛莊、臺灣、登州、潮州、瓊州等口, 均准開埠通商; 一, 值百抽五之貨, 多有價值漸減者, 應將舊則重修, 此次新定稅則, 如欲重修, 以十年爲限, 須先六月知照, 否則照前章完納, 復俟十年; 一, 子口稅按值百抽二五, 如願一次輸納, 洋貨在進口、土貨在經過第一關納稅給票後, 他口不再徵; 一, 英船納鈔給照後, 四月內不重徵; 一, 貨船進口二日, 卽全納鈔; 一, 英商自用

이에 의거하여 □國¹¹⁹⁾ 商人 船主가 希林那(Helena) 상선이 실은 물건이 603톤인데 稟報하고 稅銀 241兩 20錢을 완납하였으므로, 照를 발급하여 증빙으로 삼기에 합당하다. 이를 위하여 照(증명서)를 발급하니 해당 상인은 받아 소지하여 선초를 重納하는 것을 면하려면 반드시 執照(증명서를 소지)할 것이라고 하였다.¹²⁰⁾

영문 부분을 보면 좀 더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CHEFOO TONNAGE DUES CERTIFICATE VESSEL Helena Tons. 603 등이 기록되어 있다. Chefoo(芝罘)는 烟台의 옛날 이름으로 東海關道가 있던 곳이다. tonnage는 여기서는 화물적재량이고, dues는 수수료나 부과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영국 상선 헬레나호가 603톤의 적재 화물에 대하여 船鈔(혹은 船料)를 납부한 증명서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통하여 執照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인 동시에 文面을 통해서도 증명서를 소지하라는 뜻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艇, 如帶例應納稅之貨, 每四月納鈔一次; 一, 商貨納稅後, 改運他口, 係原包, 免重徵. 是年, 允法商於潮州、瓊州、臺灣之淡水、登州、江寧通市, 納稅輸鈔均同有約國.

119) 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배의 이름(Helena)이나 4개월간 다시 과세하지 않는 규정(中英通商章程 善後條約 第11條 規定)으로 보면 영국 상선일 것이다.

120) 船鈔執照 / 爲給發執照事. 按通商章程內載, 凡船隻出口, 欲往通商他口, 並香港地方, 該船主稟明海關發給專照, 自是日起以四個月爲期, 如係前赴通商各口, 俱毋庸另納船鈔, 以免重征等因. 茲據, ■國商人船主, 稟報希林那商船載貨六百〇參噸完稅銀貳百四拾壹兩貳錢, 合行給照爲憑, 爲此照給該商收執, 免其重納船鈔, 須至執照者.

光緒 九年 日卽日起 右給 國商人收執 限 日繳 (본문 속의 ■은 공백)



<그림 1> 1848년에 발행된 船鈔執照.

3. 護照

이처럼 병표나 집조가 일종의 증빙서류를 나타내는 문서라면, 護照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했던 정식 여행허가증이었다. 재자관이나 재주관을 제외한 관인, 상민, 학생들이 조선의 해당관사(駐津大員 등)에 護照의 발급을 신청하면, 駐津大員이 신분·유력경로·휴대하는 짐의 수 등을 기록한 뒤 도장을 찍은 ‘執照’를 해당관사(津海關道 등)에 보내 호조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執照를 확인한 津海關道가 서식에 맞추어 蓋印해서 발급한 것이 護照였다. 이 護照를 주진대원에게 보내면, 다시 주진대원이 요청한 본인에게 轉給하였다. 즉 執照는 護照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에서 제출하는 서류이고, 護照는 해당국에서 발급하는 정식 여행허가증인 셈이다.

그러나 개항 초기에 조선에서는 조선의 증빙문서만을 가지고 청국 내지를 여행하여 무역장정에서 호조의 발급 절차를 어기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진해관도는 그 절차를 어긴 점에 대해 지적하고 호조라는 새로운 행정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고, 조선에서도 점차 호조의 개념과 운용을 이해하고 이르렀다. 한편 천진해관도는 천진해관에서만 호조를 발급하여 봉천 변계를 거쳐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조선 상인들이 길을 돌아서 천진으로 와서 집조의 수령을 청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함을 겪는 점을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건의하면서 조선의 편의를 도모한 측면도 있었다.

1) 관인 호조의 발급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이후 호조발급 절차를 명시해 놓았지만 장정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에서는 여전히 호조의 개념이나 운용 체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 이후에도 호조 발급 절차를 어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883년 3월 19일 海防同知 寶岱는 山海關道에게 조선국인 李[盈]珍이 동

행인 5명과 작은 수레 한 대를 타고 봉황성을 거쳐 들어와서, 이번 달 17일에 營口에 이르러 화흥점(和興店)에서 18일에 머물고, 윤선을 타고 천진으로 떠나갔는데 빙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일을 알려 왔다. 이에 산해관도는 조선국인이 해도로 천진에 오는 경우는 마땅히 정장(定章)에 비추어 빙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이영진이 營口에 도착한 후 빙표를 제출하지 않고, 곧 황포윤선을 타고 천진으로 갔으니, 원래 정한 장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조치하여 제한하는 바를 보여야 한다고 이홍장에게 문서를 보냈다.¹²¹⁾

이를 본 이홍장은 천진해관도에게 이 일에 대해 조사하도록 차촉하였다. 그런데 주북은 최근 조선국인 이영진이 내진한 일이 없고, 다만 1883년 3월 23일에 조선관인 이용준을 비롯한 5명이 천진에 와서 일본 영국대사가 일본에 도착한 일과 영의정 홍순목 등이 조회한 2건을 몰래 보고한 일이 있었으며 해당관원은 바로 귀국하였다고 조회하였다. 이용준이 아뢴 바에 따르면, 2월 25일 王京에서 출발하여 3월 18일에 牛莊上船을 타고 왔다고 했는데, 사람 수와 날짜가 모두 산해관도가 보내온 것과 서로 부합하였다. 이에 주북은 산해관도가 이영진이라고 한 것은 혹시 이용준이며, 그 이름이 같지 않으나 譯音이 분명하지 않은 까닭인 것 같다고 하였다.¹²²⁾

또한 빙표에 관한 내용은 광서 6년(1880)에 전 통상대신 이홍장이 상주

121) 『청계사료』 제4권, 1972, pp.1179~1180.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國王咨覆韓民如有不持票照來津請予嚴禁> (1883. 8. 19)

茲於光緒九年三月十九日. 據海防同知寶岱申稱. 查得朝鮮國人李[盈]珍. 併跟人五名. 坐小車一輛. 由鳳凰城來. 於本月十七日抵營. 在和興店存住十八日. 搭坐輪船往天津去訖. 並未呈出憑票等情. 據此. 職道查朝鮮國人. 由海道赴津. 自應遵照定章. 呈驗憑票. 今李[盈]珍到營口後. 並未呈出憑票. 旋即搭附黃浦輪船赴津. 核與原定章程不符. 嗣後遇有似此情事. 應作何辦理. 以示限制之處. 理合詳請核示祇遵等情.

122) 『청계사료』 제4권, 1972, p.1180.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國王咨覆韓民如有不持票照來津請予嚴禁> (1883. 8. 19)

當經飭飭津海關道查便去後. 茲據該道周馥詳稱. 遵查近日. 並無朝鮮國人李[盈]珍來津. 惟三月二十三日. 有朝鮮官李應浚上下五人來津. 密呈抄錄駐紮日本英使致日本領議政洪淳穆等照會二件. 當經職道照錄. 面呈憲台察閱. 該員旋即回國. 據該員稱. 二月二十五日. 在王京起程. 三月十八日. 由牛莊上船. 所有人數日期. 均與山海關道來詳相符. 該道所稱李[盈]珍. 或即係李應浚. 其名字不同. 諒因譯音未清之故. 至憑票一節.

하여 분명히 하였는데[奏明], 오로지 조선국에서 무비를 학습하기 위하여 來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이응준이 온 것은 학예 때문이 아니므로, 빙표를 신청하여 수령할 필요가 없었으며, 예전에도 이응준은 여러 차례 조선국왕이 재자관으로 파견되어 자주 천진에 왔었다. 그런데 무역장정 제4조를 살펴보면, 游歷執照의 발급을 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응준은 이번에 천진에 올 때 집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아직 상무위원을 파견하지 않았으므로 집조를 발급할 곳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최근에 조선관원이 때로 공적인 일을 받들어 來津하는 사람도 모두 집조를 수령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주북은 이제 산해관도가 사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며, 적절하게 조치하여 제한하는 바를 보이고, 자세히 지시해 줄 것을 청한 것은 신중하게 의견을 내놓은 것이므로, 마땅히 현대에 청하여 자세히 살펴서 명을 내려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홍장에게 조회하였다.¹²³⁾

당시 조선무역장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상무위원이 파견되지 않았으므로, 이응준에게 빙조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朝鮮學習製器鍊兵各章程에는 만약 천진에 오는 일이 있으면 파견되어온 인원의 이름과 수 및 경유하는 도로를 먼저 나누어 자문하고, 아울러 해당 관원들에게 장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빙표를 소지하고 해도로 천진에 오도록 하여 편리하고 빠르기를 기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사후 조선국에서 천진으로 오는 사람이 문빙이 없으면 왕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상무위원이 파견되기를 기다려 다시 무역장정 변리를 살펴 행할 것을 논의하였다.¹²⁴⁾

123) 위와 같음. 係光緒六年. 前通商大臣李奏明. 專爲該國來津學習武備人等而設. 李應浚此來. 並非學藝. 自無庸請領憑票. 照案應遵奏定貿易章程第四條. 請給游歷執照. 而李應浚此來. 亦未請有執照. 職道查李應浚屢經朝鮮國王派充責咨官. 常到天津. 現在朝鮮商務委員. 尚未派來. 無從給照. 是以近日朝鮮官員. 時有奉公來津之人. 均未領有執照. 今山海關道. 以嗣後遇有似此情事. 應作何辦理. 以示限制之處. 詳請核示. 係爲慎重起見. 應請憲台酌核飭遵. 緣奉前因. 理合再將李應浚所呈照會. 照錄清摺. 詳復查核示遵等情. 到本署大臣.

124) 『청계사료』 제4권, 1972, pp.1180~1181.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國王咨覆韓民如有不持票照來津請予嚴禁> (1883. 8. 19)

據此. 除批據詳並摺均志. 現在朝鮮貿易章程尚未開辦. 未經派有商務委員. 李應浚此來. 自

이후 주북은 이응준 司直의 護照 違式에 관한 건으로 조선 독판교섭통상사무 閔泳穆에게 조회하였다. 주북은 이응준이 가지고 온 통리아문 빙표에 중국 천진과 북경 등에 가서 조사한다는 등의 말은 있으나, 중국 해관도 아문에 호조의 환급을 청하는 말이 없는 것을 지적 하였다. 또 조선의 印票는 중국 내지를 다니는 데 편리하지 않고, 이미 장정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 안에 쓰인 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중국의 관에서 보호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귀국 상무위원이 아직 과견되어 오기 이전에 관민 등이 앞서 내지에 오는 경우에는, 일단 귀국정부를 거쳐, 가까운 상무위원 陳芑南에 函告¹²⁵⁾하여 분명히 살핀 다음, 備文을 발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東海關 아문에 들르면 호조로 환급하면, 반드시 빙표 발급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법도에 부합된다고 하면서 상무위원이 과견되어 오기를 기다려서 장정을 살펴서 처리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²⁶⁾

주북은 중국에 가는 조선인 호조 발급 절차에 대해 1883년 10월 20일에 다시 조회를 보내어 현재 조선의 駐津 상무위원이 아직 과견되어 오지 않았는데, 자주 중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혹은 문병을 소지하지 않고, 혹은 귀

屬無從給照。查李閣爵天臣奏定朝鮮學習製器鍊兵各章程。經禮部核准。如有赴津之事。應將派來員弁人名數目。及經由道路。先期分咨。並令該員弁等遵守章程。執持憑票。由海道赴津。以期便捷等因。咨行在案。嗣後該國有人來津。如無文憑。自應不准往來。俟派有商務委員後。再行查照貿易章程辦理。俟行山海關道。並咨朝鮮國王查照摺存。此繳掛發並咨行外。相應咨會貴國王。煩請查照。飭遵施行等因。奉此。除將貴大臣咨內詳意承領外。竊念小邦民人。不持憑照。無端謁來者。卽是奸究匪類。揆以常憲。固當嚴禁。煩乞貴大臣隨現隨捉。一一領回。千萬幸甚。爲此咨覆等因。到本大臣。准此。除咨行外。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125) 편지로 [우편으로] 알린다는 뜻이다.

126) 『구한국의교문서』 제8권, 1970, p.4. <護照違式에 관한 건>(1883. 10. 16)

敬再啓者, 李司直應俊來津, 持有貴國統理衙門憑票一紙, 內有前往中國天津 北京等地辦理事件等語, 並無請中國關道衙門換給護照字樣, 查上年奏定貿易章程內開, 兩國商民人內地游歷者, 應稟請商務委員與地方官會銜, 給與執照等語, 是執照應與地方官會銜繕給, 現在貴國商務委員尚未派來, 自無從會銜, 然貴國印票未便徑行中國內地, 既與章程不符, 且其中措語亦未得體, 中國官無從保護, 通商以來, 在各國俱無此辦法, 除此次已由東海關換給護照外, 嗣後如貴國商務委員尚未派來以前, 有官民人等前來內地, 請暫由貴國政府, 就近函告商務委員 陳芑南觀察查明, 備文發給, 賣投東海關衙門換給護照, 不必徑給憑票, 以符事制, 俟商務委員派來後, 仍照章程辦理爲要, 再請台安, 諸惟朗譽, 不一.

아문의 빙표를 소지하고 있어, 법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리아문은 앞으로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문서를 갖추어 본도에 알려오면, 편의에 따라 조사하여 문서를 발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동해관에 오면 호조를 환급해서 가면 법도에 부합된다고 조회하였다.¹²⁷⁾

이에 민영목은 이응준 사직이 전에 빙표를 가지고 간 것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한 건에 대해서, 이미 진총관을 거쳐 행자하여,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일이 있을 때, 참하여 공문을 구하여 근거로 삼고, 천진에 주재할 관원을 파견하기를 기다려, 마땅히 규정을 살펴서 처리하도록 약속하였다고 회답하였다.¹²⁸⁾

이처럼 개항 초기 호조의 발급 절차를 여기고 조선의 증빙문서만을 가지고 청국 내지를 여행하여 해관도의 지적을 받고 있었던 점은 개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의 관인들이 단시간에 호조라는 새로운 행정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이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하면서 조선이 근대적인 행정체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商人 호조의 발급

이후 천진해관도는 조선 통리아문 측에 호조 발급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앞으로 통상장정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이

127)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p.8~9. <中國에 가는 朝鮮人 護照發給節次에 관한 照會>(1883. 11. 21)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即補道陳, 爲咨會事, 照得, 本月二十日准直隸天津海關道函稱, 貴國駐津常務委員現在尙未派來, 而屢有來華之人, 或不持文憑, 或持貴衙門憑票, 均於體制未符, 現經議定, 暫由貴國政府知照本道, 查明給文, 轉達東海關道衙門換給護照, 以符體制等因, 准此, 相應備文咨請, 貴衙門查照辦理, 嗣後遇有往華之人, 請即備文知會本道, 以便查明給文, 賁赴東海關, 換給護照前往, 以符體制, 爲此備咨貴衙門, 請煩查照施行, 須至咨者.

128)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11. <各國通商章程 및 稅則改正에 관한 回答>(1883. 12)

再咨者, 李司直應俊前持憑票, 未符事制一節, 已由陳總辦行咨, 約以日後有敝邦人去, 可咨覓公文爲據, 俟派大員前往駐津, 自當按章辦理, 并乞鑑裁.

근대적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진대원이 천진에 파견된 이후에는 규정된 발급절차에 따라 호조 발급을 요청하는 형식도 정비되었고 이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일률적으로 호조 발급이 이루어졌다.

그 절차는 먼저 조선인 중 청에 가고자 하는 상인이 천진에 있는 조선공관에 가서 집조 발급을 요청하면 주진대원이 상인의 이름과 수, 가는 짐수, 행로 등을 적은 집조를 작성하고 집조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천진해관에 보냈다. 주진대원이 보낸 집조를 받은 천진해관에서는 집조를 확인하고 호조를 발급하는 한편 이홍장에게 보고하여 자세히 아뢰었다. 路引 발급시 이홍장이 최종적인 결재권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호조 발급시에는 천진해관도가 도장을 찍어 발급하고 있으며,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만 이홍장에게, 그리고 이홍장은 예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호조의 발급 절차는 대체적으로 비슷하였는데, 주로 주진대원→주북→이홍장의 형식이다. 1885년 9월 6일 조선대리상무대원 박제순은 ‘본국 통사 朴泳祚가 천진을 통해 烟台에 갔다가 營口로 가서 봉천 봉황성 변문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육지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가지고 가는 짐은 4건입니다. 특별히 집조 1장을 갖추어 보내니 도장을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천진해관도 주북에게 편지를 보냈다. 주북은 이에 의거하여 도장을 찍어 발급한 이외에 이홍장에게 자세히 아뢰었고, 이홍장은 이러한 내용에 의거하여 예부에 咨明하였다.¹²⁹⁾

이렇게 호조발급 요청을 받은 청 내에서는 유력하려는 곳의 책임자들에게 차례대로 보고하였다. 1884년 10월 13일 주진상무대원 박제순은 집조 2장에 도장을 찍어 보내줄 것을 청하였다. 이 집조는 하나는 본국 상인 李

129) 『청계사료』 제4권, 1972, p.1950.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通詞朴泳祚由津赴烟轉往營口由陸回國發給通行執照> (1885. 10. 19)

九月十二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津海關道周馥呈. 九月初六日. 准朝鮮代理商務大員朴齊純函稱. 茲有本國通詞朴泳祚. 擬由津赴烟. 前往營口. 出奉天鳳凰城邊門. 由陸回國隨帶行李四件. 特備執照一紙. 送請蓋印. 等因到關. 准此. 除印發外. 理合呈報核咨. 等情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殷英과 가지고 가는 짐 23건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본국 상인 金相五, 高永文, 韓禎鶴과 가지고 가는 짐 69건에 관한 것인데 모두 천진을 통해 북경에 가고 봉황성 지방을 여행하는 일이었다. 천진해관도 주북은 이에 준해서 나누어 도장을 찍어 발급한 이외에 이흥장에게 알려서 자문하였다.¹³⁰⁾ 이흥장은 이에 의거해서 府尹과 撫院에게 자문하였고, 광서 11년(1885) 11월 12일 奉天督部堂이 撫尹堂이 보낸 直隸爵閣 督部堂의 자문을 전해서 성경 장군 慶裕에게 보냈다.¹³¹⁾ 즉 여기서 조선 상인 이은영이 천진을 통해 북경에 가고 봉황성 지방을 여행하는 건에 대해 주진상무대원 박제순→천진해관도 주북→이흥장(直隸爵閣 督部堂)→府尹, 撫院→奉天督部堂→성경 장군 慶裕→예부의 단계로 보고하고 있다.

1883년에 정한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제2조에 의하면 조선상민은 도장을 찍어 발급한 짐조 없이는 奉天省의 각 지방을 몰래 유력할 수 없으며, 제10조를 살펴보니 조선상민은 토산물을 구매할 때에도 봉황성의 邊門으로 출입하며 공물 길[貢道]을 통해서만 왕래해야 하고 마음대로 유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성경 장군 慶裕는 이은영 등이 이미 도장을 찍은 짐조를 가지고 있고 천진을 통해 봉황성에 가서 유력하는데, 지나가는 연도와 지방에서는 마땅히 일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오직 장정에 따라 공물 길을 통해서 왕래하고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이로써 제한하고 엿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해당 지방관에게 명령하기를 조선상인 이은영 등이 경계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정한 장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였다.¹³²⁾

130) 『청계사료』 제3권, 1972, p.1501.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商人李殷英等欲赴北京及鳳凰城地方游歷發給通行執照> (1884. 12. 7)

十月二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津海關道周馥呈, 十月十三日, 准朝鮮駐津商務大員從事官朴齊純函, 送執照二紙, 內開, 一係本國商人李殷英, 隨帶行李二十三件, 一係本國商人金相五, 高永文, 韓禎鶴, 隨帶行李六十九件, 均擬由津赴北京, 及鳳凰城地方游歷, 函送蓋印等因, 到關, 准此, 除分別印發外, 理合呈報核咨等情, 到本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131) 『청계사료』 제4권, 1972, p.1624. <總署收成京將軍慶裕文-韓人李殷英等持照由津赴北京及鳳凰城游歷已飭沿途地方官照章保護> (1885. 1. 29)

132) 위의 사료, 十二月十四日, 成京將軍慶裕文稱, 光緒十年十一月二十五日, 准奉天督部堂咨

그러나 이후에도 종전에 사사로이 중국에 들어와서 습관처럼 내지를 유력하였던 조선 상민들은 여전히 집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새 장정을 알지 못하고 호조발급 절차를 어겨서 각 지방에서 붙잡혀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에 청 예부는 ‘강어귀에 개장(開場)을 한 지방과 개장을 하지 않은 지방에 만일 두 나라의 상인들 가운데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몰래 다니면서 무역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피차의 委員들이 압송하도록 황제의 하교를 받아 통지한다.’¹³³⁾고 咨文을 보내기도 하였다.

3) 육로상 호조의 발급

한편 원래 정장에 비추어 보면 상무위원과 지방관에게 회합하고 호조를 받은 후에 다시 목적지로 가야 했는데, 만약 봉천 변경을 거쳐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경우 또한 길을 돌아서 천진으로 와서 집조의 수령을 청하도록 하고 있어 조선 상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천진해관도인 유여익은 천진해관에서만 호조를 발급하는 것은 상민들에게 불편하므로, 해로로 천진에 오는 경우는 천진에서, 육로로 봉천으로 오는 경우는 조선 지방관의 빙힘을 가지고 와서 동변도에서 호조를 받는 것으로 하자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1887년 조선주진독리통상사무 박제순은 천진해관도 유여익에게 집조를 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종전처럼 중국 내지를 그냥 유력하는 자가

開. 爲咨行事. 光緒十年十一月十二日. 准撫尹堂咨開. 轉准直隸爵閣督部堂咨開. 據津海關道周馥呈. 十月十三日. 准朝鮮駐津商務大員從事官朴齊純函. 送執照二紙. 內開一係本國商人李殷英. 隨帶行李二十三件. 一係本國商人金相五. 高永文. 韓禎鶴. 隨帶行李六十九件. 均擬由津赴北京. 及鳳凰城地方游歷. 函送蓋印等因到關. 准此. 除分別印發外. 理合呈報核咨等情到本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軍督部堂. 府尹. 撫院. 請煩查照等因. 准此. 查前定章程第二條內開. 朝鮮商民. 非有印發執照. 不得潛往奉省各處游歷. 第十條內開. 朝鮮商民. 採買土貨. 亦祇准由鳳凰邊門出入. 仍由貢道折回. 不得肆意游行各等語. 此次該國商人李殷英等. 既領有印照. 由津赴鳳游歷. 所有沿途經過地方. 自應一體保護. 惟祇應照章准由貢道往來. 毋任期越境他往. 以示限制. 而杜覬覦. 除分飭各該地方官. 一俟朝鮮商人李殷英等到境. 遵照定章妥爲辦理外. 相應咨行. 請煩查照施行等因. 准此. 除分行外. 相應咨呈貴衙門查照可也.

133) 『高宗實錄』 高宗 20年(1883) 7월 27일자.

있으니 특히 일의 이치에 맞지 않고, 또한 저들 상인들은 모두 봉성의 변계를 넘어서 들어가고 해로로 내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을 거치지 않으므로 곧 봉성동변도를 거쳐 내왕 경과하는 조선인이 있으면 본국 邊界官이 발행한 照가 있는지를 심문하여[盤詰] 조사하고 헤아려 시행해야 한다고 조회하였다.¹³⁴⁾

이어서 박제순은 채찍이 길다 하나 말에는 닿지 못하는 형편이라 조사할 방도가 없으니 천진해관도에게 각 지방에 轉飭하여, 만약 내지에 호조가 없는 조선인이 있으며 일일이 조사하여, 진에 와서 호조 발급을 會銜 給照하여 다시 목적인 곳으로 가도록 명하여 지장(阻滯)이 없도록 청하였다. 그래서 천진에 있는 상민에게는 내지에 들어갈 때는 호조를 발급받도록 하는 한편, 청의 각 주현에 알려 호조가 없는 조선인은 천진에 가서 호조를 수령한 다음 다시 내지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진해관도에 요청하였다.¹³⁵⁾

이를 본 천진해관도 유여익은 이홍장에게 천진해관에서만 호조를 발급하는 것은 상민들에게 불편하므로, 해로로 천진에 오는 경우는 천진에서, 육로로 봉천으로 오는 경우는 조선 지방관의 빙힘을 가지고 와서 동변도에서 호조를 받는 것으로 하자고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유여익은 조선 상민이 스스로 준행해야 하지만, 새 장정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사사로이 왕래 유력하니 마땅하지 않은 듯하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박제순이 호조를

134) 『청계사료』 제4권, 1972, p.2188.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此後朝鮮人由陸路來華應由東邊道發給護照以便沿道呈驗> (1887. 3. 31)

二月十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署津海關道劉汝翼詳稱. 案准朝鮮駐津督理商務朴齊純照會內稱. 查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第四條內開. 兩國商民. 如有彼此入內地遊歷者. 應稟請商(務)委員與地方官. 會銜給予執照. 然後前往. 其於沿途地方有犯法等事. 統由地方官押交就近通商口岸懲辦. 途中止可拘禁. 不得凌虐等因. 從前敝國商民私入中國. 慣游內地. 不知有領照新章. 向來在各地方被搶控告之案. 層見疊出. 而無由知其爲真正朝鮮人. 殊屬不成事體. 且此等小生意之人. 皆由鳳城邊界越入. 並非海路來往. 由津經過. 卽應由奉省東邊道. 遇有朝鮮人來往經過. 隨時盤詰查明. 有無本國邊界官給照. 酌量施行.

135) 『청계사료』 제4권, 1972, pp.2188~2189.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此後朝鮮人由陸路來華應由東邊道發給護照以便沿道呈驗> (1887. 3. 31).

敝督理鞭長莫及. 無從根究. 應請貴關道轉飭各地方. 如有朝鮮人在內地無護照者. 一一查明. 飭其來津會銜給照. 再准前往. 俾免阻滯. 除諭飭在津商民. 以後入內地必須領照前往外. 相應照會貴道. 請煩查照. 分行各州縣. 出示曉諭. 令無照之朝鮮人來津領照. 再入內地. 以符定章. 而使商民. 實爲公便等因.

지참하지 않은 조선인은 천진에 와서 호조를 수령하고 다시 내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는 조선 상민이 중국 변경에 올 때 반드시 호조를 수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 또한 定章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¹³⁶⁾

유여익은 조선상민에게 만약 중국 내지로 가서 유력할 때 정장에 따라 호조를 수령하도록 하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하며, 아울러 봉천동변도에 자회하여 지나가는 조선인이 천진을 거쳐가는 경우는 수시로 조사하여, 마땅히 징험을 제출하고 호조를 받은 다음 목적지로 가도록 하여, 정장의 각 조항에 부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상민이 중국에 와서 유력하는 경우, 만약 해도로 관에 이르러 다시 내지로 가는 경우는 원래 정장에 비추어 보면 상무위원과 지방관이 회합한 호조를 받은 후에 다시 목적지로 가야 했다. 만약 봉천 변계를 거쳐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경우 또한 길을 돌아서 천진으로 와서 집조의 수령을 청하도록 하고 있었다.¹³⁷⁾

이에 대해 유여익은 상인들의 실정에 비추어 실로 불편이 많으므로 자연히 사사로이 잠행하게 되니, 도리어 조사할 방도가 없는 데 이르므로 앞으로 해도로 천진에 오는 조선상민이 만약 내지로 가서 유력하는 경우는 무역 장정 제4조에 비추어 처리하고, 봉천 변계의 육로로 중국에 들어오는 자는 즉 조선의 지방관이 집조를 발급하고 해당 상민에게 교부하여 이를 지참하고 동변도아문에게 나아가서 징험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중국으로 와서 내지의 어느 곳을 유력하더라도 동변도

136) 『청계사료』 제4권, 1972, p.2189.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此後朝鮮人由陸路來華應由東邊道發給護照以便沿道呈驗> (1887. 3. 31)

准此. 職道查貿易章程第四條所載. 兩國商民. 如有彼此入內地遊歷者. 應稟請商務委員與地方官. 會銜給予執照. 然後前往等語. 是朝鮮商民. 欲赴中國內地遊歷. 必須請領執照. 方能前往. 定章已久. 該國商民. 自應遵行. 似未便以不知新章爲詞. 私自往來游歷. 朴齊純所稱. 由職道分行各州縣. 出示曉諭. 令無照之朝鮮人. 來津領照. 再入內地. 是朝鮮商民之進中國邊界. 無須領照. 亦與定章微有不符.

137) 앞의 사료. 當經職道備文照覆查照. 轉行朝鮮官員. 示諭朝鮮商民. 如赴中國內地游歷. 務須遵章領照. 並咨會奉天東邊道. 遇有朝鮮人來往經過. 隨時盤詰. 應飭呈驗會銜執照. 方准前往. 以符定章各在案. 職道復查朝鮮商民. 前來中國游歷. 若由海道到津. 再赴內地. 原可照章請領商務委員暨地方官會銜執照. 再行前往. 若由奉天邊界進中國內地. 亦須責令繞道來津. 請領執照.

가 호조를 발급하고 편의에 따라 연도에 징험을 제출하면 이에 의거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정장과 서로 부합되고, 상민들도 또한 한결같이 편할 것이라고 하였다.¹³⁸⁾

그러나 이후에는 조선에서 호조의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고 오히려 조선 측에서 스스로 호조에 대한 규정을 지키면서 이를 운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장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짐의 수를 가지고 온 조선 상민에 대해 주진독리통상사무가 먼저 천진해관도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집조에 있는 짐에 주를 달아 명확하게 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1891년 조선주진독리통상사무 변석운(邊錫運)은 천진해관도 李興銳에게 조선 상민 김정진(金正鎭)이 지폐[紙貨]를 가지고 북경에 가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집조 1장을 고쳐야 하니 청컨대 집조를 살펴서 관인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변석운 자신이 유력집조는 살펴보았지만 가지고 온 화물은 살피지 않았는데, 김정진이 가지고 온 지화는 비록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들여온 짐의 수는 정한 장정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¹³⁹⁾

따라서 변석운은 마땅히 실제 짐의 확실한 수를 명확하게 살펴서 곧 가지고 온 지폐의 수를 골라내서 집조를 고쳐야 하고, 아울러 집조 끝머리에 고친 짐의 수 아래에 가지고 온 지화를 주를 달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138) 앞의 사료. 商情實多不便. 勢必私自潛行. 轉致無從稽察. 職道愚見. 嗣後海道來津之朝鮮商民. 如赴內地游歷. 仍照貿易章程第四條辦理. 其由奉天邊界陸路入中國者. 卽由該國地方官給發執照. 交該商民持赴東邊道衙門呈驗報明. 前赴中國內地何處游歷. 由東邊道給予護照. 以便沿途呈驗. 藉資查察. 似與定章尙屬相符. 商民亦均稱便. 如蒙府允. 擬請憲台咨會奉天軍督憲. 轉行東邊道. 出示曉諭. 俾衆週知. 並由職道照會朴齊純. 報明該國統理衙門. 轉行該國地方查照辦理. 是否有當. 理合詳請查核批示祇遵. 實爲公便等情到本閣爵大臣. 據此. 查所詳事屬可行. 除分咨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139) 『청계사료』 제4권, 1972, p.2919.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人金正鎭帶紙貨游歷北京除由津海關道印發執照外所帶紙貨仍飭照完沿途稅厘> (1891. 10. 20)

九月十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署津海關道李興銳呈. 現准朝鮮署駐津督理商務邊錫運函稱. 本國商民金正鎭擬帶紙貨前往北京販賣. 茲繕執照一紙. 送乞查照鈐印等因. 當因金正鎭既係進京販賣紙貨. 而送到執照內係游歷字樣. 核屬兩歧. 究竟該商所帶紙貨曾否完稅. 未經聲叙. 卽經函准朝鮮駐津邊督理復稱. 金正鎭所帶紙貨已經完稅. 其行李十五件. 卽連紙貨在內. 乞從權辦理等因. 職道查游歷執照向不准攜帶貨物. 金正鎭所帶紙貨雖經完稅. 但列入行李件數之內. 核與定章不符.

역설하였다. 화상들의 규정에 따르면 연도의 징수하는 관세와 지방통과세[稅厘]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변석운은 따로 해당 상인 김정진이 북경에 가는 游歷執照 1장을 고쳐서 짐 3건을 주를 달아 명확하게 했고, 아울러 가지고 온 지화는 연도의 징수하는 관세와 지방통과세[稅厘]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청컨대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였다.¹⁴⁰⁾ 이를 통해서 짐조가 세금을 걷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호조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호조라는 근대적 시스템에 편입되었다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4) 호조의 실례

조선의 호조는 현재 2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884년과 1890년대의 호조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의 호조는 미국인 해군 중위 福久(George C. Foulk)¹⁴¹⁾에게 발급한 호조다. 전체적인 형식을 보면 상단에 護照라고 크게 쓰고 오른쪽 첫 행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爲
給發護照事. 照得(美國人海軍中尉福久氏游
歷忠清全羅慶尙道等地) 合行給照護送. 仰沿途
各官驗照放行, 毋令阻滯. 該員亦不得

140) 『청계사료』 제4권, 1972, pp.2919~2920.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朝鮮人金正鎮帶紙貨游歷北京除由津海關道印發執照外所帶紙貨仍飭照完沿途稅厘> (1891. 10. 20)

應查明核商實在行李確數. 將所帶紙貨件數剔除. 另填執照. 並於照尾所填行李件數之下註明此外隨帶紙貨. 仍照華商例完納沿途稅厘字樣. 以昭核實. 復經函復辦理去後. 茲准該督理另繕該商金正鎮赴京游歷執照一紙. 註明行李三件. 並所帶紙貨照完沿途稅厘字樣. 送請蓋印前來. 除將執照印發外. 理合呈報核咨. 等情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141) 포크. 미합중국대리공사. 고종 23년 8월 5일 대리공사로 임명되었다.(『高宗時代史』 高宗 23年(1886) 8월 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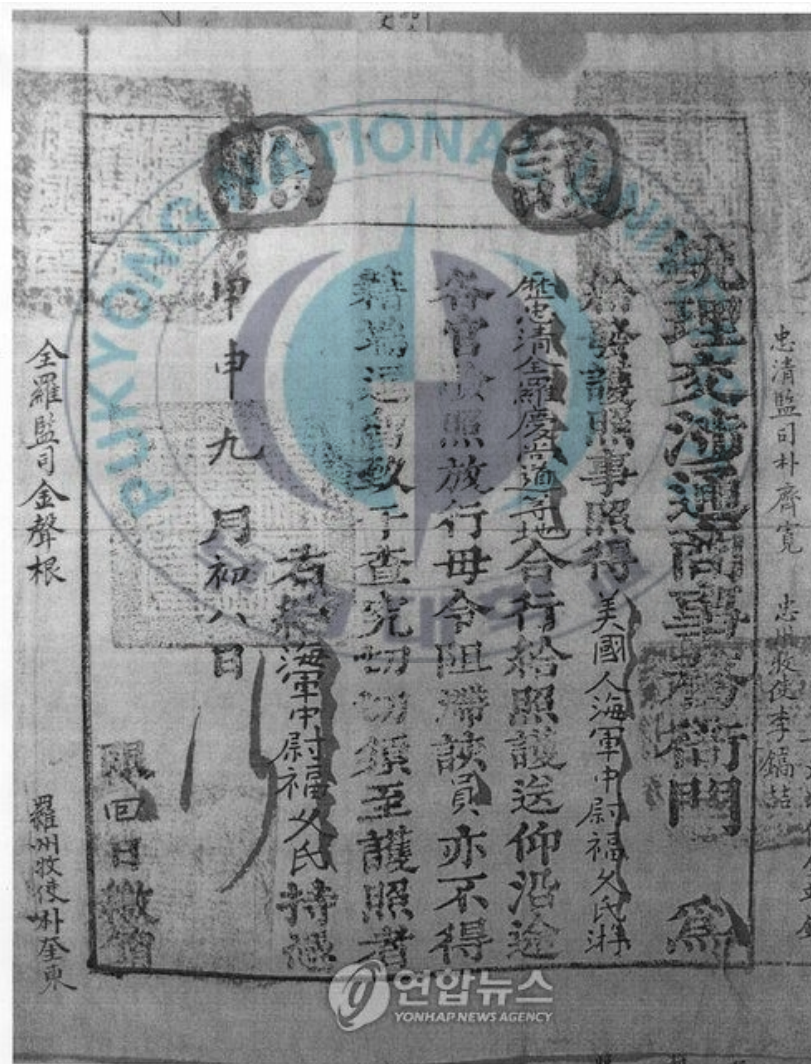
籍端逗留，致于查究。切切須至護照者。

右給(海軍中尉福久氏)持憑

(甲申)(九)月(初八)日

限(回)日繳銷

(괄호 안은 手記한 부분)



<그림 2> 조선의 호조. (출처 : 연합뉴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호조를 발급하는 일. 照會를 보니(미국 영사 등이 조선의 통리아문에 호조를 발급해 주기를 청하는 문서를 받아보니) 미국인 해군중위 福久氏가 충청 전라 경상도 등지를 유력하고자 하므로, 증명서를 주어 호송하기에 마땅하다. 연도의 각 관은 증명서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해당 인원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래 머물러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반드시 護照할 것.

앞의 문서를 해군 중위 福久氏에게 주어 증빙으로 가지게 함.

갑신년(1884) 9월 8일

돌아오는 날 만료

또한 호조 본문을 담고 있는 테두리 바깥에는 충청 감사, 충주 목사, 전라 감사, 나주 목사의 직함과 이름이 쓰여 있다. 이는 해군 중위 포크가 游歷할 지역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통리아문에서 써넣은 것인지 현지에서 써넣은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통리아문에서 써넣었다면 경상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것을 보면, 포크가 실제 충청도와 전라도를 다녔고, 그 지역의 감사와 목사가 추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일한 호조의 사례로는 영국인(호주) 데이비스에 발행한 호조(1890년)가 있는데,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 두 호조의 내용은 뒤에서 다룰 청의 호조에 비해서는 내용이 간략하고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호조는 원래 청의 호조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884년에는 이미 앞의 형식과 같은 조선의 호조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의 호조와는 다소 다른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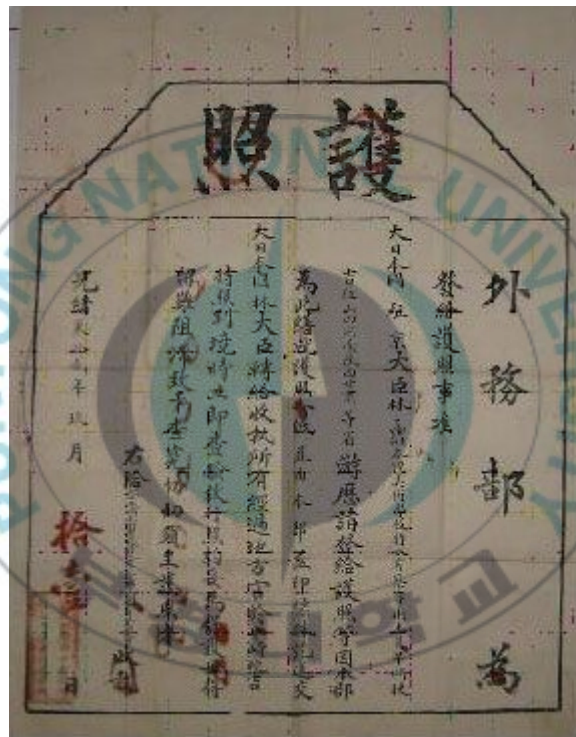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爲
給發護照事照得(英國土人德倍時前往全羅慶尙游歷航
海至元山由□□至平壤回京)合行給照護送仰沿途
各官驗照放行毋令阻滯該(土人)亦

籍端逗留致于查究切切須至護照者

右給(英國士人德倍時) 持憑

(庚寅) (二)月 (二十)日

限(回)日繳銷



<그림 3> 청의 호조

<그림3>의 호조는 청이 일본인에게 발행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외무성 소속 북경 주재 대신이었던 林權助의 명의로 早崎梗吉가 미술학교 특과고찰학술위원으로 山西 河南 陝西 甘肅省을 游歷하고자 하니 호조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本部(청 외무부)는 護照의 서식에 蓋印(호조 좌측 하단의 도장)과 標硃(호조 전면에 보이는 붉은 색의 표시, 一이라는 글자 위에 붉은 표시를 해서 위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를 해서

다시 일본국 대신 林權助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를 林權助는 다시 早崎梗吉에게 轉給하여 소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호조의 내용 속에서는 早崎梗吉이 유력하는 지역의 지방관에게 早崎梗吉이 護照를 가지고 省의 경계에 이르면 호조를 확인하고 省 내를 放行(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한 청일 양국의 조약에 비추어 보면, 早崎梗吉을 보호하고 난처하게 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호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대일본국 미술학교 특과고찰학술위원 早崎梗吉라고 명기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光緒 32년(1906) 9월 11일에 발급하였다는 날짜가 있고 청 외무부의 관인이 찍혀 있다.

이처럼 1880년대에 조선이 청나라 내지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에 필요한 통행허가증으로는 전근대적인 사대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근대적인 조약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호조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노인은 100리 바깥으로 멀리 떠날 때 지방관청 등으로부터 받은 추천장이나 통행증과 같은 공문으로 조선 내지는 물론 변경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중국 내지로 들어갈 때 발급받았다. 노인은 전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되었던 것으로 1880년대에 이르면 조선국왕의 주문이나 자문을 가지고 가는 관인들이 이 노인을 가지고 천진을 거쳐 북경으로 들어갔다. 반면에 執照와 護照는 원래 청조 때에도 신분을 증명하고 청 변경 관방 조사기관의 보호와 통행의 편리와 필요한 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사용되고 있었지만¹⁴²⁾,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이후 상대국의 내지를 다니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문서로서 조선에 새롭게 들어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사대관계와 근

142) 호조의 서방 칭호는 passport인데 seaport(海港)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세기에 성채·성의 대문을 통과하는데(porte) 사용한 문서에서 왔다. 중세기의 유럽에서 문건은 그곳의 통치역량에 따라 여행자에게 발급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소지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도시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passport라는 단어는 1845년 최초로 호조로 번역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880년대 호조는 visa에 가까운 것이었다.

대적인 조약관계의 산물로 대표되는 路引과 護照 체제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사대관계체제가 근대적 조약관계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은 이른바 양절체제로 표현할 수 있는 이중적 국제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절체제는 청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능동적으로 개항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청의 보호 속에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개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행정체제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의 관인들이 호조의 발급 절차를 어기고 조선의 증빙 문서만을 가지고 청국 내지를 여행하였을 때 그 절차를 어긴 점을 지적하고 발급절차에 대해 알려주면서 조선이 점차 근대적인 행정체제를 이행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借款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제반 개화정책 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당시의 극악한 재정상태 아래에서 자금 조달 방법이 막연하였다. 따라서 그 자금의 일부를 해외차관의 도입으로 충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1882년 영선사 일행의 경비 부족이 개항 이후 조선정부가 외국과의 부채 관계를 빚어 낸 최초의 차관이였다. 이어 같은 해 8월 조선정부는 해관창설과 부두건설을 위해 淸銀 50만 냥의 차관조약을 청과 체결하였다. 이것이 곧 차관계약에 의한 조선정부 최초의 해외자본 도입이였다.¹⁴³⁾

그러나 이 때 청국 또한 실제로 조선에 차관을 제공해 줄 경제발전단계 내지 조건에 놓여있지 않았다. 이홍장의 주도하에 양무관료자본과 매판자본이 결합하여 관독상관형 공업화를 시도하면서 오히려 청국에 진출한 구미 商社로부터 막대한 조세수입을 증가시켜 농민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⁴⁾ 그렇지만 청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조선에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과 대우로 차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천진해관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차관을 지급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주진대원이 주재할 천진조선공관을 건축하는데 사용한 비용과 조선이 기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천진해관과 조선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차관의 형태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진조선공관 건축 차관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청은 주한 청국인의 보호와

143) 김정기, 「조선정부의 청차관도입(1882-1894)」, 『한국사론』 3, 1976, pp.407~408.

144) 김영호, 「개항기의 부국강병정책과 차관문제」, 『慶商大學論集』 8, 1980, p.25.

상무 진흥을 위해 조선에 영사급 외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상무위원을 파견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1883년 8월 5일 상무위원으로 임명된 陳樹堂은 9월 20일부터 서울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조선의 영사급 사절은 大員으로, 조선 국왕이 파견하고 북경이 아니라 천진에 주재하기로 되어 있었다.¹⁴⁵⁾ 조선은 領選使의 예를 참고하여 조선주진상무공서장정을 제정하였고 1884년 1월 27일 南廷哲을 주진대원으로 임명하였다. 이 주진대원 일행은 1884년 3월 17일 고종에게 사폐하고 천진으로 출발하였다.

주진대원을 파견하기에 앞서 이들이 주재할 공관의 건설에 대해서는 조선 영선사 김윤식 등이 천진해관도 주북에게 대신 땅을 선택하여 공관을 건설해줄 것을 청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경비로 미리 平化寶銀 1,000냥을 지급하였다. 이에 천진해관도 주북은 조선을 대신하여 候補同知直隸州知州 潘牧靑으로 하여금 땅을 고르고 건설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반목청이 품하여 이르기를 風神廟 근처 牌汊가 조선 공관을 건설할 만 하지만 땅이 중요한 도로에 해당하여 사는 주민들이 토방을 지어 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토방을 상중하 3등으로 나누어 이사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들 방호가 따로 살 곳을 지어 살도록 하였다. 이때 津田으로 지급한 돈은 津平銀 257냥 6푼 6리였다.¹⁴⁶⁾

그 후 5월 초6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어진 조선공관은 기와집 22칸, 회랑[廊] 4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담장 높이 1장 둘레 길이 30장으로 둘러

145) 이은자, 「청말 주한 상무서 조직과 그 위상」, 『명청사연구』 30, 2008, p.361.

146)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p.30~31. <天津公館建築價銀의 歸款要請> (1884. 2. 18.)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即補道陳,爲照會事,爲照會事,案照,本月二十日,准直隸津海關道周[馥]光緒九年十二月二十五日咨開,案照上年奏章中國朝鮮貿易章程內開,朝鮮國王,遣派大員駐紮天津等語,前經朝鮮領選使金允植等商請,代爲擇地,修建公館,以爲來往棲止之處,所需經費,由朝鮮自行籌備當經交存錢平化寶銀壹千兩,本道即令候補同知直隸州知州潘牧靑照擇地修造,諭飭需用工料一切務從節省,不可糜費,去後,茲據潘牧稟稱,天津郡城至紫竹林一帶,舖戶房屋鱗次櫛比,寔無相當地基,惟查風神廟下牌汊方,本係沿河官地,居郡城紫竹林之中,堪以建造朝鮮公館,但地當要道,久被居民搭蓋土房,未忍概令驅逐,計土房五十五間半,卑職等親往細勘,分別上中下土房三等,酌給折移之費,俾該房戶別營棲止,計給發津錢合津平銀貳百伍拾柒兩陸分陸厘,

싸고, 아울러 아궁이[磚炕], 목기 등의 물품을 갖추어서 10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관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용된 돈은 津 平화보은 2999냥 3전 7푼 3리였다. 이에 천진해관은 조선이 원래 맡겨둔 돈은 평화보은 1,000냥을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은 돈 평화보은 1,999냥 3전 7푼 2리가 있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기다리는 것은 불편하므로 본도의 회계에서 입체해서 지급하고자 한다고 조회하였다.¹⁴⁷⁾

이에 조선은 보내주신 淸冊과 圖式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 절약하여 낭비가 없고 규모와 제도가 질박하며 설비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 후에 진에 주재할 일행들이 거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불하지 않은 돈 1,999냥 3전 7푼 2리는 이전에 파견된 동행역관(冬行譯官)¹⁴⁸⁾이 필요한 은량을 경성에서 천진으로 가지고 가서, 관역에 이르러 지불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¹⁴⁹⁾

그러나 공관을 건조하는 데 빌린 차관을 4개월간 갚지 않자, 주북은 주진상무대원 남정철에게 조회하는 한편 조선국정부에게 보고하고 해관도아문에 알려 조사해서 속히 곧 진 항목의 은량을 완전히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⁵⁰⁾ 그러자 조선은 차관 반환이 지체된 이유로 작년 冬行 역관 편

147)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31. <天津公館建築價銀의 歸款要請> (1884. 2. 18.)

當於五月初六日開工,計造朝鮮公館一所,共瓦房二十二間,又廊四間外,緣以牆高一丈圍長三十丈,加以磚炕木器等件,通於十月底工竣,總共用津平化寶銀貳千玖百玖拾玖兩參錢柒分貳厘,皆係格外撙節,寔用寔銷,無可再省,理合據寔造具做法用款淸冊,圖繪房式,稟懇鑒察核銷等情,據此,當即派員往驗,所建房屋樸寔整齊,院落寬敞,屋內桌椅鋪陳亦屬精整,核與冊開工料價值,委係切寔無浮,本道復親往,查驗無異,除朝鮮原交錢平化寶銀壹千兩外,計不敷錢平化寶銀壹千玖百玖拾玖兩參錢柒分貳厘,未便停待,經本道籌墊給發,現准金允植函稱,已飭冬行譯官,由京將所墊銀兩送至天津歸款等語,俟收到歸款,是否足數,再行咨明外,相應將建造館舍工程淸冊圖式一併咨送,爲此合咨貴道,請煩查照,照會朝鮮統理衙門備案,計咨送淸冊一本圖式一紙等因,准此,相應備文,並淸冊圖式照會,爲此,照會貴督辦,請煩查照備案,祈即見覆施行,須至照會者.

148) 동지사와 같이 겨울에 사행으로 가는 역관.

149)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p.31~32. <同上件에 관한 回答>(1884. 2. 21)

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閔. 爲照覆事, 案照, 本月二十二日, 准貴總辦照會內開, 本月二十日准云云, 祈即見覆等因, 准此, 送來淸冊及圖式一一詳閱, 知所建公館節省糜費, 而制度樸寔, 鋪陳精整, 嗣後駐津之行, 庶忘羈寓之苦, 周[馥]道爲敝邦費神, 殊爲感謝, 前飭冬行譯官, 將所墊銀兩由京輸津, 至館役所費, 除原交錢平化寶銀一千兩外, 計不敷錢平化寶銀壹千玖百玖十兩參錢柒分貳厘, 自當照數歸款, 相應備文照會, 爲此, 照覆貴總辦, 請煩查照備案施行, 須至照覆者.

으로 해당 역원에게 명령해서 북경 인삼 값으로 완납[清還]하도록 했으나 올해 4월 해당 역원이 돌아와 작년 인삼 값은 손해를 보아 차관을 다 갚지 못했다고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차관 변제가 완결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그간 조선 정부가 알지 못해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였다. 그리고 주북이 대신해서 지불한 건조비용은 천진에 기항하는 배편으로 전액을 가지고 가도록 명령하여 해관도아문에 반환할 것이며, 脚費와 船價는 기록하여 알려주면 다시 갚겠다고 조복하였다.¹⁵¹⁾

이후 조선통상아문은 진수당이 있는 商務署에 元寶銀 40개를 평화보는 1,999냥 3전 7푼 2리에 해당한다고 보냈다. 그런데 상무서에서는 化寶를 감정하는 은화감정사[銀匠]가 없어 천진에서 사용하는 평화보은과 교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내온 원보은을 다시 나무상자에 火漆해서 굳게 봉인하고 도장을 찍어 인천으로 보내고 보험을 들어 상해 招商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기탁하고, 다시 보험을 들어 진해관도 盛宣懷¹⁵²⁾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150)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107. <天津朝鮮公館建造費完清要請>(1884. 6. 14)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即補道陳, 爲照會事, 案准天津海關道周[馥]咨開, 案照, 代朝鮮在津建造公館, 墊發錢平化寶銀一千九百九十九兩三錢七分二厘, 於光緒九年十二月二十五日咨會貴道, 並照准駐津朝鮮大員南廷哲, 覆稱, 前墊銀兩迄未完清, 應由敝處報本國政府, 趕辦清款等因, 本道現因病乞假調治, 已奉北洋大臣[李鴻章]批准給假, 另委盛道台接署, 定於五月十一日接印, 所有墊發建造公館平化寶銀一千九百九十九兩三錢七分二厘, 係在分款內借用, 現經本道交卸, 此款未便久懸, 已由本道墊還, 除照會駐津商務大員南廷哲, 呈報朝鮮國政府趕緊解津, 交海關道衙門查收, 轉交本國政府衙門, 速將前項銀兩解津歸還, 望切施行等因, 准此, 相應備文照會貴督辦, 請煩查照, 見覆施行, 須至照覆者。

151)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108. <同上完清回答>(1884. 6.)

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金. 爲照覆事, 照得, 本年五月二十一日, 接准貴總辦照會內開, 云云等因, 准此, 查敝邦駐津大員公館建造已完, 蒙天津海關道周[馥]代爲費心, 至墊發公銀, 以足不敷, 敝政府深爲感幸, 已於上年冬行譯官便, 飭該譯員, 將北京蔘價銀解津清還, 嗣於本年四月該譯員回, 據稱, 上年蔘價失利, 未克歸款, 敝政府尙未知這間事情, 以致久懸, 極庸歉歎, 茲更籌款平化寶銀一千九百九十九兩三錢七分二厘, 如墊發之數, 由本衙門送交貴署, 乞飭信實船便帶往解津, 確交海關道衙門, 歸還墊款, 望切禱切, 再有脚費船價多少, 無以懸度, 請煩開錄示覆, 俾便依數交清, 除將天津歸款銀一千九百九十九兩三錢七分二厘附送外, 相應備文照覆, 請煩貴總辦查照施行, 須至照覆者

152) 이때 주북이 병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여 이홍장은 휴가를 주는 것을 비준하고 별도로 盛宣懷 道台(海關道台)에게 일을 대신 맡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오직 중국에서 두루 사용하는 寶銀은 색깔과 품질을 의거할 데가 없고, 진해관도의 일이 번거롭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상무서에서는 이 과정에서 필시 庫吏의 손을 거칠 것인데, 손을 거치면서 색깔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고 (조선에서 보낸 은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 남의 손을 빌려서 말이 많은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선통상아문이 미리 主事官을 파견해서 이 보은 하나하나에 직접 화압을 써서 근거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조회하였다.¹⁵³⁾ 이렇게 해서 상무서에서는 원보은 40개에 대해 대신 보험을 들고 인천에 보내서 怡和洋行 南升輪船에 실어서 상해 초상총국에 운반하였다. 그리고 초상총국에서 수령해 천진에 부친 원보은은 천진해관에 도착해서 수량대로 교환한 뒤 주북에게 돌아갔다.¹⁵⁴⁾

또한 조선정부는 천진에 주재하는 관원들에게 경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어 조선에서 천진으로 가는 인편이 적어서 경비를 전할

153) 『구한국의교문서』 제8권, 1970, pp.127~128. <天津朝鮮公館建造代墊銀 대한 書押 요청>(1884. 7. 10)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即補道陳, 爲照會事, 案准貴照會內開, 歸還前天津海關道周[馥]代墊建造銀壹千玖百玖拾玖兩參錢柒分貳厘, 由本道交便船寄津, 脚費船價開錄, 再行交還等因, 並收到送來元寶銀肆拾個, 准此, 本署現無天津錢平, 亦無銀匠估看化寶, 不便彈兌, 現准將送來寶銀肆拾個, 用木箱火漆釘封外, 加印封, 送由仁川交南升輪船, 買保險, 寄託上海招商局收入, 再轉買保險, 由商輪船寄交署津海關道盛, 驗火漆釘封印封查收, 諒無錯悞, 所須船價・保險費用, 俟將來上海開例到日, 再行彙開知照歸還, 惟中國行用寶銀, 成色高低無憑, 津海關道事煩, 勢必假手庫吏, 倘或以低色爲言, 經手轉折, 殊爲可慮, 應請貴衙門立派主事官前來, 將此寶銀逐個手書花押爲據, 由本道詳細函致署津海關道盛驗明, 庶可免假手多言之慮, 爲此備文照會, 請煩貴督辦查照, 見覆施行, 須至照會者.

154) 『구한국의교문서』 제8권, 1970, pp.155~156. <天津朝鮮公館建造費 墊發銀 회송에 대한 제비용 청구>(1884. 8. 16)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即補道陳, 爲照會事, 本月二十六日, 准署理直隸天津海關道盛咨開, 六月初四日, 准貴道移開, 准朝鮮通商衙門送來元寶銀四十個, 據稱, 錢平化寶銀壹千九百九十九兩三錢七分貳厘, 歸還前關道周[馥]墊發建造朝鮮駐津商務委員公館銀兩, 茲代買保險, 交商輪船寄, 由招商局轉寄兌收, 歸還前關道周墊款, 請驗收見覆, 計移送木箱內元寶銀四十個等因到關, 准此, 當即將木箱拆開, 如數兌收訖, 除移解外, 相應咨覆等因, 准此, 相應據咨照會貴衙門備案, 覆查, 前准貴衙門送來銀箱, 由本署內代送仁川, 附搭怡和洋行南升輪船運交上海招商總局, 代寄天津, 計共代支去脚費船價銀貳拾七兩五錢七分六厘, 茲開例細賬, 並怡和行洋文單, 計共貳紙, 照會貴署理督辦, 請煩查照, 如數歸還, 見覆施行, 須至照會者.

방법이 없자 청측에서 대신 경비를 지급해줄 것을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천진해관도가 조선 대신 은을 마련하여 주진대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하였다.

1883년 조선정부에서 파견한 관원은 진수당의 후임으로 온 원세개에게 찾아가 천진에 주재하는 조선관원이 오랫동안 채물과 자원이 모자라는데, 겨울이 와서 (조선에서) 천진으로 가는 인편도 매우 적어 급한 수요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선의 票銀 2,000냥을 보내어 전달하고자 하니 尊處(원세개)에서 먼저 兌銀을 지급해 달라고 청하였다.

원세개는 署津海關道 劉汝翼에게 전보를 보내 외국에 사신으로 나갈 때 지급되는 예산에서 주진 조선 관원에게 은 2천 냡을 발급하여 이로써 급한 수요를 구제하게 하면, 다음해 봄에 예산으로 반환받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여익은 관에 등록한 代商¹⁵⁵⁾에게 借墊行 평화보은 2천 냡을 융통하여 주진 조선 관원에게 보냈다. 그리고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출사 경비 항목에서 제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은표 1장을 만들고 문서를 갖추어 원세개에게 보냈다.

천진해관도가 보낸 은을 받은 독리통상사무 성기운은 받은 은냥의 액수에 대한 문서를 갖추고, 다음해 봄 경비를 가져오는 것을 정할 때 수에 비추어 나누어 반환하여 갚을 것이라고 조복하였다.¹⁵⁶⁾

그 외에도 駐津公館에서 사용한 1달여 분의 電報抄單을 전달하는 일도 천진해관에서 담당했다.¹⁵⁷⁾ 일찍이 주북 때부터 조선주진독리공관에서 조

155) 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인

156)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420. <駐津韓員에게 發給한 海關道銀二千兩歸款要請>(1884. 2. 18)

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三品銜升用道袁, 爲照會事, 照得, 本年十二月十一日, 准署津海關道劉咨開, 案准貴道電稱, 昨據韓廷派員來稱, 駐津韓員, 久乏資斧, 而冬來津便甚少, 難濟急需, 送交弊處票銀兩千請轉懇尊處, 先行發兌等語, 至可否由出使經費預支項下, 發給駐津韓員兩千銀, 以濟急需, 嗣由明春應領項下劃還之處, 乞核示等因, 當經本道向官錄號代商, 通融借墊行平化寶銀二千兩, 俟明春應領出使經費項下扣抵, 並開具銀票一紙, 備文照送, 去後, 茲據督理通商事務成, 將前項銀兩照數, 備文照覆前來, 除呈報外, 相應咨會, 請煩查照, 俟明春請領經費時, 照數劃還歸款等因, 准此, 相應備文照會貴督辦, 請煩查照施行, 須至照會者.

157)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358. <駐津公館에서 사용한 3~4월분 電報抄單 傳

선에 官電報를 보내야 할 경우 마땅히 도장[印信]을 찍고, 關署를 거쳐 電局에 전달해서 전보를 보내도록 하고 있었다. 천진해관 측은 월 별로 공관에서 사용한 전보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해관이 보낸 각처 전보를 抄單으로 조회하였다.

2. 기기 구매 차관

개항 이후 조선에서 외세의 침투에 따라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한편 서구 문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병인양요 이후 서양의 군사력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서구의 기술을 익혀야만 부국강병에 힘쓸 수 있다는 사고가 확산되었다. 조선정부는 서양의 근대적인 과학기술 특히 병기 제조기술을 배우기 위한 방편으로 김윤식과 학생들을 영선사로 천진에 파견하였다.¹⁵⁸⁾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을 습득한 유학생들이 귀국하자, 조선정부는 유학생들을 활용할 機器工廠의 설비를 구상하고 본격적으로 기기를 구매하고자 하였다.

조선정부는 천진기기국의 東局·南局, 천진해관도 海軍軍械所에 기기 구입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고 김윤식과 천진주재 종사관인 金明均을 통해 1882년부터 기기를 구매하는 일에 착수하였다.¹⁵⁹⁾ 조선은 직접 투자한 돈과 천진해관에서 빌린 차관 등으로 구입한 기기를 토대로 하여 1883년 3월에는 서울 삼청동 북창에 근대 병기공장인 機器廠을 건립하였다. 또한

達>(1887. 6. 9)

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三品銜升用道袁, 爲照會事, 案照, 本年閏四月十四日, 准署津海關道劉咨開, 案查, 前准朝鮮駐節天津督理通商事務朴齊純照稱, 以該館凡有公務官電報寄至朝鮮, 應請蓋用督理關防爲憑, 送至電局, 卽行發電, 至別處別事, 不得援以爲例等因, 曾經前關道周[馥], 擬以嗣後朝鮮駐津督理公館, 凡有寄朝鮮官電者, 應蓋用印信, 由關署轉交, 以昭慎重, 業經按月開單呈報在案, 茲查三四兩月分該館所發各處電報, 自應抄單送核, 除呈報, 並咨行外, 相應抄單咨會, 請煩查照施行, 計粘抄單等因, 准此, 相應照會, 爲此照會貴督辦, 請煩施行, 須至照會者.

158) 이은송, 「고종의 개화 교육정책 연구」, 『한국교육사학』 21, 1999, pp.356~357.

159) 김정기, 「1880년대 기기국·기기청의 설치」, 『한국학보』 4-1, 1978, p.101.

1883년부터 직접 투자하여 집중적으로 기기를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은 재차 천진해관의 돈을 차입하게 되었다.¹⁶⁰⁾

이 때문에 주북은 수지와 반납하지 않은 은량의 액수를 기록한 清單를 첨부해서 기기물료 구매 비용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청단에 따르면, 1883년 정월부터 9월까지 반환한 차관과 기기 가격으로 지불한 돈, 김명균 등이 수령하여 사용한 은은 모두 公砵化寶銀으로 20,540냥 2전 8푼 5리로 전에 수령한 20,000냥을 제외하고, 지불하지 않은 은 540냥 2전 8푼 5리는 본도의 회계에서 지출된 것이다.¹⁶¹⁾ 청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⁶²⁾

광서 9년(1883) 정월 12일, 조선 吳慶然이 천진에 가지고 온 公砵 平化寶銀 20,000냥.

정월 13일, 초상국 차관 庫 白寶銀¹⁶³⁾ 10,000냥 상환, 公砵 平化寶銀 10,452냥 3전 4푼.

정월 13일, 關署가 조선을 대신하여 구매한 기기 차관 湘化銀 3,000냥 상환.

2월 25일, 金明均에게 준 湘白銀 300냥, 公砵 平化寶銀 302냥 1전.

6월 15일, 金晩植에게 盤費로 준 公砵 平化寶銀 250냥

7월 3일, 通史 白文彬·학생 宋景和에게 준 公砵 平化寶銀 30냥.

8월 8일, 내가 조선이 사는 기기값으로 준 規銀 4,756냥, 계 公砵 平化寶銀 4,552냥 1전 7푼

160) 김정기, 「조선정부의 청차관도입(1882-1894)」, 『한국사론』 3, 1976, p.423.

161) 『구한국의교문서』 제8권, 1970, p.29. <機器物料購買價銀의 歸款要請>(1884. 2. 18)

欽命總辦朝鮮商務二品銜分省遇缺即補道陳, 爲照會事, 案照, 本月二十日, 准直隸津海關道周[馥]光緒九年十二月二十五日咨開, 案照, 本道同製造局即選道王[道台], 代朝鮮國購買應用機器物料, 當經本道籌墊定銀湘平三千兩, 由朝鮮從事官金明均出具借約備案, 嗣據朝鮮國大通官吳慶然交到公砵平化寶銀二萬兩, 當將前項借款湘平銀三千兩撥還歸墊, 並代朝鮮金允植, 付還超商局借款庫平白寶銀一萬兩, 下餘銀兩留備購買機器物料之用, 茲查, 自本年正月至九月所有付還借款, 及撥發機器各價, 並金明均等領用各銀, 計共用過公砵平化寶銀二萬五百四十兩二錢八分五厘, 除前收二萬兩外, 其不敷銀五百四十兩二錢八分五厘, 業由本道籌墊, 除俟朝鮮解到銀兩, 再行歸墊外, 相應將收支及不敷銀兩數目開具清單咨送, 爲此合咨貴道, 請煩查照, 照會朝鮮統理衙門備案, 計抄粘清單一紙等因, 准此, 相應照抄清單備文照會, 爲此, 照會貴督辦, 請煩查照備案, 并祈見覆施行, 須至照會者.

162) 『구한국의교문서』 제8권, 1970, p.30. <機器物料購買價銀의 歸款要請>(1884. 2. 18) 附. 同上件에 관한 計抄單

163) 천진에서 유통되던 은.

8월 20일, 王 道台¹⁶⁴⁾에게 주어 대신 입체하여 구매한 鑛水 등의 물건값 湘平銀 129냥 6 전 6푼 3리, 계 公砵 平化寶銀 129냥 8전 5푼 6리

9월 4일, 王 道台에게 주어 대신 구매한 기기의 해상운송보험과 내가 준 規銀 294냥 5전, 계 公砵 平化寶銀 281냥 8전 7푼 2리

9월 10일, 王 道台에게 주어 대신 구매한 기기값과 내가 준 規銀 1,560냥, 계 公砵 平化寶銀 1,496냥 9전 4푼 5리.

도합 지급한 公砵 平化寶銀 20,540냥 2전 8푼 5리

상환되지 않은 公砵 平化寶銀 540냥 2전 8푼 5리

그러나 조선은 취약한 재정상태 속에서도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관을 요청하였다. 1886년 주진대리상무대원 박제순은 주북에게 본국 세무사 墨賢理(Merrill)가 스스로 매수하려는 器具 비용이 은 600냥인데, 현재 잔고[存項]가 없으므로, 청컨대 대신 변통해주시면 곧 본국 통리아문에 보고를 올려 속히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주북은 박제순의 요청에 따라 平化寶銀 600냥을 대신 준비하여, 津關의 G. Detring(德瑠琳) 세무사에 보내어 Merrill에게 변통해주었다. 그러나 해가 지나도 변제받지 못하자 주북은 박제순과 왕래한 서신문서를 첨부하여 원세개에게 조선 통리 김에게 반납을 재촉하여 액수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¹⁶⁵⁾ 이 은 변제 건에 대해 김윤식은 연말연시로 인하여 예산[籌款]이 심히 어려워 반환이 지체되었으므로 오는 2월 사이에 금액대로 계산하여 보내겠다고 회답하였다.¹⁶⁶⁾

164) 欽加二品銜總辦行營機器製造局的 郎選道 王德均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65) 『구한국의교문서』 제8권, 1970, p.292. <墨賢理 買受 器具代로 借用한 銀 600兩의 迅速歸款要請>(1886. 2. 24)

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三品銜升用道袁, 爲照會事, 照得, 本道頃准津海關道周[馥]移開, 十一年七月二十八日, 准朝鮮駐津代理商務大員朴齊純函稱, 本國稅務司黑賢理[Meril]自買器具所需銀六白兩, 現無存項, 請代爲墊給, 由敝處即行呈報本國統理衙(門), 請速歸款, 一俟銀到送上不誤等因, 當經本道墊借行平銀六百兩, 並函覆在案, 查前項銀兩, 至今尚未寄還, 除由本道函催朝鮮統署金, 如數歸還, 解交貴道查收外, 相應將朴齊純與本道往來信函粘抄移會, 爲此合移貴道, 請煩查照, 即希代爲詢催歸款, 望切施行, 計粘抄單一紙等因, 准此, 合亟照會貴督辦, 請煩查照歸款, 以憑移覆, 望切施行, 須至照會者.

166) 『구한국의교문서』 제8권, 1970, p.293. <同上回答>(1886. 2. 25)

기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차관을 빌리는 과정에서 조선은 홍삼을 판매해서 갚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개 차관에 대한 담보물로는 조선의 해관세와 전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稅源인 홍삼세,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광산세 등이 있었다.¹⁶⁷⁾ 그러나 천진해관에서 起債한 경우는 담보물을 설정하지 않고, 상환 방법만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은 진수당의 후임으로 1885년 총리교섭통상사의로 부임한 원세개에게 조선의 親軍營 機器局에서 機器軍機 등의 물건을 사고자 하는데, 은화가 부족하여 충당할 자금이 없으므로 전 府使 吳慶然을 파견하여 대신 홍삼 15,000근을 가지고 천진 상해와 같은 곳에서 가서 군기를 구매하고자 한다고 조회하였다.

또한 천진·상해 關道에 공문을 보내서 편의에 따라 조사하여 면세를 해줄 것과 해당 관원에게 護照를 발급하여 沿道의 장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⁶⁸⁾ 원세개는 이에 대한 회답으로 마땅히 호조를 전취하여 문서를 갖추어 보내니 귀독관이 자세히 조사하여 발행하고, 오로지 돌아오는 날, 말소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조복하였다. 아울러 천진과 상해의 해관도에 자문한 공문 1건을 첨부해서 천진, 상해로 가는 관원에게 교부하여 지참할 것을 당부하였다.¹⁶⁹⁾

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金，爲照覆事，准本月二十一日貴照會內開，云云等因，准此，查此項銀款，宜由敝處趕速歸還，緣歲前後籌款甚難，延拖至此，定擬來二月間如數籌送，再無遲悞，爲此備文照覆，請煩貴總理查照移覆可也，須至照會者。

167) 김영호, 「개항기의 부국강병정책과 차관문제」, 『慶商大學論集』 8, 1980, p.25.

168)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342. <軍機 購買를 위한 紅蔘 免稅와 官員의 護照 要請>(1887. 4. 1)

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金，爲照會事，照得，敝邦親軍營機器局，欲買機器軍機等物，奈敝處銀貨乏少，無可挾之貲，專派前府使吳慶然，代齎紅蔘一萬五千斤，前往天津·上海等處，購買軍器，應請貴總理移咨天津·上海關道，以便查驗免稅，祈發給該員護照，俾免沿途碍阻幸甚，爲此備文照會，請煩貴總理查照施行，須至照會者。

169)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 1970, p.342. <同上回答>(1887. 4. 2)

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三品銜升用道袁，爲照覆事，照得，本年三月初八日，准貴督辦照會內開，云云等因，准此，相應將填就護照，備文送請貴督辦，查照驗發，一俟回日，望祈繳銷施行，並有咨津海·上海關道公文各一件，亦請交去員帶投，須至照會者。

이를 통해서 실무 차원에서 천진해관이 조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진해관은 조선 천진공관의 부지 선정, 이주 처리, 예산 부족분 대체 등에 관한 업무에서 조선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의 책정과 같은 복잡한 협의과정은 생략하기도 하였다. 담보에 관한 논의 없이, 조선쪽에서 상환방법만을 제시하면 차관을 제공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천진해관 쪽에서 업무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먼저 필요한 경비를 立替하고, 사후에 상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조선 해관창설과 관련된 50만 냥 차관에 대해 청이 3중 담보를 책정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우호적인 대우를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선사 청 체재비 관련 차관이 월 6~10%¹⁷⁰⁾, 해관창설차관이 연 8%의 이자가 붙었던 데에 비해¹⁷¹⁾, 천진해관에서 제공한 차관은 이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상환이 지체된 경우에도 원금만 청구하고 있고 이자는 계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리대금 성격의 차관이 있었던가 하면 해관창설차관과 같이 근대적인 조약관계에 입각한 차관, 천진해관과 같이 실무적 차원의 차관 등 여러 형태의 차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관이라고 해도 이를 단일한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안 별로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천진해관과 조선 사이에 이루어진 차관의 형태를 보면, 이는 근대적인 조약관계에 기초한 외교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메릴의 기기 구입 때에도 별다른 사전 협의없이 立替해 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상환방법도 홍삼을 판매해서 갚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천진해관 측도 상환이 미루어진 경우에도 상환을 독촉하고 있을 뿐이고 상환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종래의 조공무역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이 단시간에 근대적인 조

170) 김정기, 「조선정부의 청차관도입(1882-1894)」, 『한국사론』 3, 1976, p.413.

171) 앞의 논문, pp.431~432.

약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항 직후에 조선의 관인들이 즉각적으로 근대적인 외교방식이나 계약 관계에 적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는 차관이라는 개념 자체에 눈 뜬 시기였고, 차관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청이나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청이나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였던 때이다. 1882년 8월 20일에 해관창설차관 합의안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근대적인 조약관계에 입각한 차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무차원에서 여전히 전근대적인 관계나 관행에 입각한 차관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19세기 말 해관은 대외통상기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외교와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주요기관이었다. 또한 근대적인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관의 ‘業餘外交’ 활동을 통해서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880년대 조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天津海關에서는 조선과 관련된 많은 일을 담당하면서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조선은 천진해관을 통해 외교 통상을 위한 적임자의 고빙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양국 내지를 유력하기 위한 路引과 護照의 발급을 요청하고 청의 차관을 도입해 여러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었다.

1882년 청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비록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청이 조선에 대해서 무조건 간섭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청도 양국 간에 통상을 확대하고, 조선과의 유대를 한층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개항을 먼저 겪고 근대적 조약과 행정체계의 기반을 먼저 수립한 입장에서 정책적인 자문을 통해 조선에게 근대적인 통상문제나 조약체제의 운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조선에는 해관 사무를 담당할 사람을 고빙하는 문제에 대해 천진해관도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조선측은 처음부터 청국인을 고빙하려는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오히려 서양인을 고빙하여 업무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청측에서 먼저 청국인보다는 서양인을 고빙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 이유는 서양인들은 자신을 고빙한 나라의 일을 자신의 나라처럼 마음을 써준다고 하면서, 청국인보다 서양인이 더 공정하게 통상·해관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청국인을 고빙하는 것이 나을 것이었지만, 서양인의 고빙이나 조선청년들을 학습시켜서 점차로 서양인에 대체시켜서 조선해관을 조선인관리들이 장악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선의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청의

적극적인 조언으로 고빙된 독일인 뮐렌도르프는 실제로 조선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조선을 위한 자세를 견지했으며, 전적으로 조선의 관리로서 자신의 식견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또 1880년대 천진해관에서는 전통적인 사대관계에서 기초해서 奏文이나 咨文을 가지고 청 내지에 가는 관인들에게 발급하는 路引과 무역장정의 체결로 양국의 내지를 游歷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한 執照와 護照라는 새로운 여행허가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행정체제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의 관인들이 호조의 발급 절차를 어기고 조선의 증빙 문서만을 가지고 청국 내지를 여행하였을 때 그 절차를 어긴 점을 지적하고 발급절차에 대해 알려주면서 조선이 점차 근대적인 행정체제를 이행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1880년대 전근대적인 사대관계와 근대적인 조약관계의 산물로 대표되는 路引과 護照 체제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사대관계체제가 근대적 조약관계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양절체제로 표현할 수 있는 이중적 국제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절체제는 청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능동적으로 개항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청의 보호 속에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천진해관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 천진공관의 설립을 전담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에서 미리 지불한 돈 이외에 발생한 공사비용은 우선적으로 해관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조선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조선은 차관으로 갚으려고 했던 인삼 값이 손해를 보았다거나 연말연시로 인하여 예산이 심히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관의 반납을 지체하고 있었다. 또한 차관을 갚는 과정에서 차관으로 갚기로 한 홍삼의 면세까지 요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근대적인 조공관계에서 근대적인 조약관계로 넘

어가는 과정에서 청과 조선의 외교채널이 청에 의해 일방적·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조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은 조약관계의 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항을 먼저 겪고 근대적 행정체계의 기반을 먼저 수립한 청에 정책적인 자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회답에 근거하여 근대적 조약체제의 운용을 이해, 수용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등 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측면과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던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청과 조선이 근대 행정체계를 수용하고 근대국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천진해관과 조선의 상호교섭이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시기를 1880년대에 한정해서 일부 시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청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청이 조선을 종주국으로서 조선을 통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주로 조선의 개항 초기가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청이 조선을 종속국으로 삼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청과 조선은 200여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관계가 있었고 한편으로 청으로서는 조선이 제일 신뢰할 만한 나라였고 강대국인 러시아나 일본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을 것이다. 청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조선이 근대적인 조약 체계에 하루 빨리 적응해서 청의 울타리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초기에는 청도 조선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고 긴밀하게 교류해왔다고 볼 수 있다. 뮐렌도르프의 고빙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서양인 뮐렌도르프의 고빙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청이 청국인만을 고집했던 조선을 설득해서 외교와 해관 업무가 유능했던 뮐렌도르프를 고빙시키고 조선의 청년들을 학습시켜 해관원으로 대체시키라고 조언해주었던 점에 주목해보면 처음부터 청이 조선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으며, 개항 초기 적응 못했던 조선이 청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청이 점차 강력하게 조선 국정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므로, 앞으로는 전체적인 조청관계의 변화 과정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특히 뮐렌도르프가 고빙될 때 함께 파견된 미국유학생 당소의도 그 이후의 시기에 다루어볼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당소의가 처음 조선에서 맡은 직책은 해관의 번역원, 방관 정도였지만 이후 급속히 승진해서 청과 조선의 실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청에 귀국한 이후 조선 문제를 전담하다시피한 천진해관도를 맡게 된 것도 조선 해관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천진해관을 통해서 청과 조선의 상호교섭을 한중관계사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사의 근대적인 전개라는 전체적인 전망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사료]

『各司騰錄』

『高宗時代史』

『舊韓國外交文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陰晴史』

『朝鮮王朝實錄』

『清季中日韓關係史料』(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臺北, 1972.)

『清史稿』

『秋浦周尙書(玉山)全集』(周馥, 文海出版社, 1967.)

[연구서]

전해중, 『한국근세 대외관계문헌비요』,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66

김종원,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 혜안, 1999

윤광운·김재승, 『근대조선해관연구』, 부경대학교출판부, 2007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2007

김광옥, 『변혁기의 일본과 조선』, 인문사, 2011

陳詩啓, 『中國近代海關史』, 人民出版社, 2002

汪志國, 『周馥與晚清社會』, 合肥工業大學出版社, 2004

孫修福, 『中國近代海關史大事記』, 中國海關出版社, 2005

天津市檔案館·天津海關,, 『津海關密檔解譯』, 中國海關出版社, 2006

[연구논문]

- 뮐렌도르프 부인 편, 고병익 역, 「穆麟德의 수기」, 『진단학보』 24, 1963
- 고병익, 「穆麟德의 고빙과 그 배경」, 『진단학보』 25·26·27, 1964
- 부정애, 「조선해관의 창설경위」, 『한국사론』 1, 1973
- 김정기, 「조선정부의 청차관도입(1882-1894)」, 『한국사론』 3, 1976
- 김정기, 「1880년대 기기국·기기청의 설치」, 『한국학보』 4-1, 1978
- 김영호, 「개항기의 부국강병정책과 차관문제」, 『慶商大學論集』 8, 1980
- 이구용, 「조선에서의 唐紹儀의 활동과 그 역할 -청일전쟁 전·후기를 중심으로-」, 『藍史鄭在覺박사고회기념 동양학논총』, 1984
- 박일근, 「李鴻章과 穆麟德의 재한외교활동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4-1, 1985
- 이완재, 「개화기의 청·조 종속문제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12, 1987
- 이은송, 「고종의 개화 교육정책 연구」, 『한국교육사학』 21, 1999
-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외교관서와 상주사절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박사학위논문, 2000
- 이영석, 「Paul Georg von Möllendorff와 한국」, 『독어교육』 24, 2002
- 조홍찬, 「유길준의 실용주의적 정치사상 -『서유견문』을 중심으로-」, 『동양 정치사상사』 3-2, 2003
- 김경록, 「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6, 2005
- 김민규, 「개화기 兪吉濬의 국제질서관 연구 -‘兩截體制’와 ‘條規體制’의 관련성에 대하여-」, 『한국인물사연구』 3, 2005
- 김현숙, 「뮐렌도르프의 외교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의 성격」, 『역사와 담론』 34, 2005
- 한철호, 「한국 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동학연구』 23, 2007
- 이은자, 「청말 주한 상무서 조직과 그 위상」, 『명청사연구』 30, 2008

朱東安,「關於清代的道和道員」,『近代史研究』1982年第4期

汪壽松,「開埠后天津海關的建立」,『天津經濟』總第109期,2003年 第6期

龐志偉,「清末津海關道之探究」,『蘭臺世界』2010年 第17期

